
COVID-19 관련 국제 인권 규범 모음집

2020. 5.



목 차

1.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4.23.)	1
2. COVID-19 인권보호지침(4.27.)	31
3. 전 세계적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감염과 사회권에 관한 성명서(4.17.)	46
4. 비상대책과 COVID-19(4.15)	54
5. 시민공간과 COVID-19(5.4)	61
6. COVID-19 혐오발언 관련 지침서(5.11.)	66
7. 장애인 권리와 COVID-19(4.29.)	73
8. COVID-19 상황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 지침(4.7.)	93
9. COVID-19와 여성 인권(4.15.)	98
10. COVID-19와 자유박탈 상황 아동 인권 지침(4.8.)	114
11. COVID-19와 노인인권 유엔 사무총장정책 보고서(5.1)	127
12. 유엔노인인권독립전문가 COVID-19 관련 보도자료(3.27.)	143
13. COVID-19 상황에서의 수용자에 대한 인권 지침(3.27.)	145
14. COVID-19와 성소수자 인권 지침(5.8.)	154
15. COVID-19 대응 인권기구 업무 수행 관련 APF 성명(4.14.)	158

Table of Contents

1. UN Policy Brief on COVID-19 and Human Rights (23 April)
2. OHCHR COVID-19 Guidance (27 April)
3. CESCR statement on COVID-19 pandemic (17 April)
4. Emergency Measures and COVID-19 Guidance (15 April)
5. Civic Space and COVID-19 Guidance (4 May)
6. UN Guidance Note on Addressing and Countering COVID-19 related Hate Speech (11 May)
7. COVID-19 and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uidance (29 April)
8. COVID-19 and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Guidance (7 April)
9. COVID-19 and Women's Human Rights Guidance (15 April)
10. Technical Note : COVID-19 Children Deprived of their Liberty (8 April)
11. UN Policy Brief on COVID-19 and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1 May)
12. OHCHR News - UN expert urges better protection of older persons facing the highest risk of the COVID-19 pandemic (27 March)
13. COVID-19 : Focus on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27 March)
14. COVID-19 and Human Rights of LGBTI People (8 May)
15. COVID-19 and NHRIs in the Asia Pacific (14 April)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

<유엔 사무총장실, 2020. 4. 23.>

인권은 코비드-19 대응과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인권은 사람을 우선으로 하며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준다.

인권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응함에 있어서 핵심이 된다. 인권은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인권을 기반으로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대응은 전염병 퇴치, 보편적 의료서비스, 인간 존엄성의 보장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인권은 동시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이들과 그 원인, 적절한 대응을 고민하게 한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개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코비드-19 대응에 있어서 인권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

세계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위기의 핵심은 지난 세기 동안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세계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과제이다.

예외적인 상황과 생명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각 국은 이례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바이러스의 전파속도를 늦추기 위해 광범위한 봉쇄조치를 취하고 이동의 자유를 강제로 제한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여러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했다. 이러한 조치는 의도치 않게 사람들의 생계와 안전, 이들의 의료서비스(코비드-19와 다른 질병), 식량, 물, 위생, 직업, 교육과 여가의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의도치 않은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엔은 국가와 사회 전체가 사람중심으로 위기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인권적 관점에서 현재의 위기와 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위기가 현장의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권고를 제시하지만, 인권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이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각 국에 서로 다른 수준의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이번 공중보건 위기는 빠른 속도로 경제적, 사회적 위기와 보장의 위기, 인권위기가 하나로 결합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진행 중인 위기, 특히 무장 분쟁은 인권이나 다른 국제법의 보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코비드-19 위기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의 취약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이는 공중보건 대응의 일부로서 시급한 관심을 요구하는 뿌리깊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과 부족한 보건 및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여성과 남성, 아동, 청년, 노인, 난민, 이주민, 빈곤층, 장애인, 구금자, 소수집단, 성소수자는 특히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는 위기 대응시 모든 이들을 보호하고 포함시킬 의무가 있다.

정부당국은 질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좋은 의도로 내린 결정이라도 일부는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위기상황에서는 특히 사람들과 정부간의 신뢰가 중요한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염병에 맞는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은 국가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인권은 국가들이 질병퇴치의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부정적인 결과는 최소화하기 위해 자국의 대응을 재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한다. 인도주의적 대응의 근간을 이루는 보호의 중심화를 통해 우리는 공동의 인간성과 존엄성을 보존할 수 있다.

인권법은 국가의 비상상황에서 특정 인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코비드-19는 공중보건 목적으로 인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의 규모와 심각성에 이르렀다. 이 보고서는 코비드-19 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있어서 국가의 자유를 제한할 의도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이 보고서는 국가들의 위기 대응에 허점이 있을 가능성을 알려주고 인권에 주목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함을 설명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당면한 세계적 보건 위기 대응의 효과를 강화하고, 지금의 위기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완화하고, 새로운 문제의 발생이나 기존 문제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에 도움이 되는 더 나은 상태로의 회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 종족민족주의, 포퓰리즘, 권위주의가 힘을 얻고 인권에 대한 반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위기는 전염병과 무관한 목적을 가지고 억압적인 조치를 취하는 구실로 이용될 수 있다. 전염병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혐오표현, 외국인 혐오, 난민과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격 및 강제 송환, 이주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 성폭력 및 젠더기반 폭력, 성·생식 건강과 권리의 제한과 같은 기존 인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금은 인권을 도외시킬 때가 아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가능한 빨리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의 유지에 다시금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때 보다 인권을 중시해야 한다.

위기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인권중심의 유엔활동을 촉구하기 위해 최근 발간한 유엔 사무총장의 “인권을 위한 행동방안 (Call to Action for Human Rights)” 보고서¹⁾는 다음을 강조하고 있다.

1) 최고의 열망: 인권을 위한 행동방안 (The Highest Aspiration: A Call to Action for Human Rights)

인류 공동의 환경과 가치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인권시스템은 21세기의 도전 과제, 기회, 요구에 대응하고, 사람과 지도자 간 관계를 재구축하며, 우리 모두가 신뢰하는 세계 안정, 연대, 다원주의, 포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 제도는 희망을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행위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결코 권력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은 권력이나 정치적 행위를 넘어서는 가치이다.

주목할 점: 코비드-19의 대응에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인권

이번 전염병과 관련하여 세 가지 권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있다,

생명권 및 생명보호의 의무

우리는 모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비드-19를 퇴치하고 있다. 생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사회 전반의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국가는 생명 보호를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명 보호는 계속해서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건강권 및 의료서비스 이용의 권리

건강권은 생명권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코비드-19는 국가들의 건강권 보호 능력을 최대치로 시험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상태를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보건시스템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인해 이번 전염병에 대응하고 다른 필수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약화되었다. 코비드-19는 보편적 의료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임을 보여준다. 강력하고 유연한 의료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은 위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세계의 의료시스템은 과도한 부담을 받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시스템은 붕괴 위험에 놓여 있다. 보

편적 의료보장은 강력하고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전염병 대비 및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보편적 의료보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 3에 포함되어 있다.

보편적이고 저렴한 의료시스템은 모든 이들이 차별 없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염병 퇴치에 도움이 된다. 기본적 서비스는 비용지불능력과 관계없이 검사, 최취약 계층을 위한 전문치료, 중환자를 위한 집중치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코비드-19에 대응하여 일부 국가들은 의료보장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했고, 민간부분 의료보건종사자들과 합의하여 이들 기관을 전염병 대응에 활용하는 국가들도 있다.

이동의 자유에 대한 핵심 제약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연쇄 감염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이동하거나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각 국에서 가장 많이 시행중인 코비드-19 억제책은 봉쇄나 자택대기지시와 같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바이러스 전파를 중단하고 의료보건 서비스의 부담을 덜고 이를 통해 생명을 구하는 현실적이면서 필요한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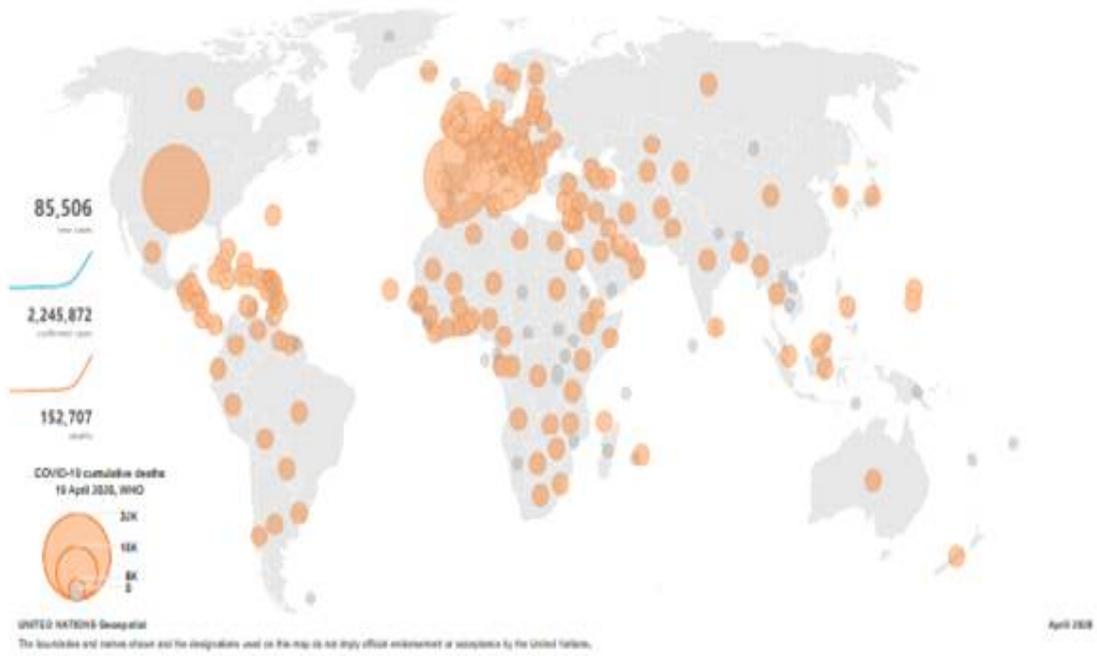
하지만 봉쇄가 일자리, 생계, 의료서비스, 식량, 물, 교육, 사회서비스 이용, 자택에서의 안전, 충분한 생활수준, 가정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 세계가 깨닫고 있는 바와 같이 이동의 자유는 다른 많은 자유의 향유를 촉진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국제법은 안보나 보건 비상상황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이동의 자유에 특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제한은 철저하게 이러한 목적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한 수준으로 (비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효과적이고 보편적인 검사 및 추적, 선별적 격리조치는 무차별적인 제한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코로나-19는 전 대륙에서 인권과 보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명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전세계 사망자수 (2020년 4월 19일 기준)



Source: WHO dashboard map as of 19 March 2020 7pm (CEST)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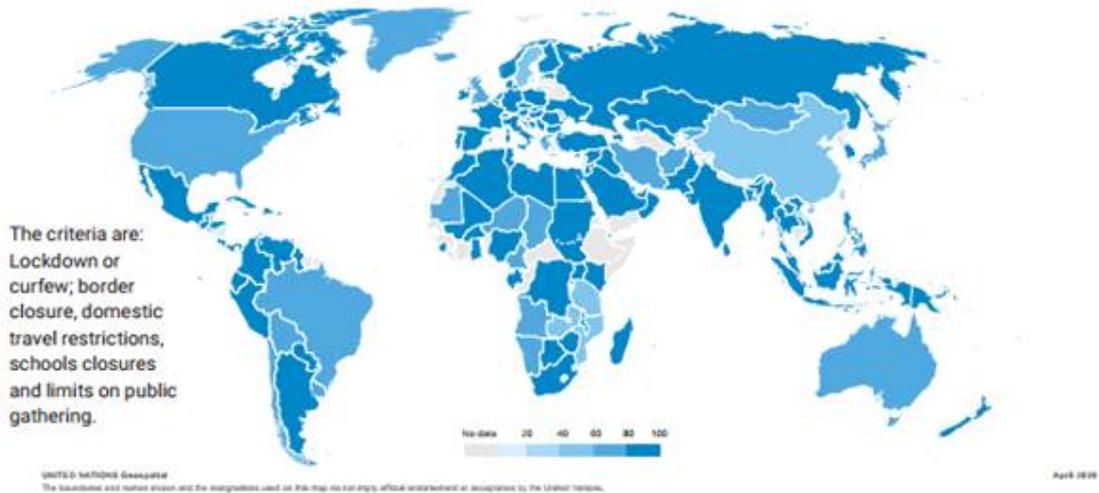
전세계 휴교상황 (2020년 4월 19일 기준)



Source: UNESCO

이동의 자유

정부 통제 정책의 강도 (2020년 4월 18일 기준)



Source: <https://covidtracker.hsp.ox.ac.uk/stringency-map>

이동의 자유

인도주의적 대응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코비드-19 피해 규모



Source: OCHA & WHO (as of 19 April 2020)

여섯 가지 핵심 인권 메시지

1.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과제이다. 생계 지원은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공중 보건 대응 조치를 취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보건 위기는 경제적·사회적 위기 또한 촉발하여 개인, 가정, 공동체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전염병 그 자체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염병 대응 방안이 불평등이나 허술한 복지제도와 같은 기저요인과 맞물려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가장 부족한 일부 사람들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친다. 일자리, 생계, 기본 서비스의 이용, 가정생활에 미치는 최악의 영향을 경감시키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대응은 사람들이 공중보건 조치방안을 준수하고 이러한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 회복이 용이하도록 할 것이다.

코로나-19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왜 피해를 주는가?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들의 상당수는 이미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 전 세계 22억명 이상의 인구는 충분한 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규칙적으로 손 씻는 것이 불가능하다. 노숙상태이거나 과밀한 주거환경에 놓인 18억 인구에게 물리적 거리두기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목표일뿐이다. 빈곤은 그 자체로 엄청난 위험 요인이다.

사회의 빈곤층과 취약계층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 대응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 여성으로 이루어진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은 사회보호나 실업자지원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못한다.

정부는 당연히 바이러스의 전파 통제와 생명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 전염률, 입원률, 사망률이 충격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충고에 따른 생명 보호를 위한 조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동시에 사람들의 일자리, 생계, 생활수준, 공동체,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봉쇄는 식량, 학교, 직업,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노인, 아동,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제한된다. 여성은 봉쇄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의 의무를 훨씬 더 많이 부담하게 되고, 이는 여성의 건강권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봉쇄조치는 모든 종류의 인권의 향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위기가 삶과 생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두되는 인권문제

본 보고서는 기본적인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많은 국가들이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위기가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 실업과 식량 불안은 짧은 시간에 많은 국가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 광범위한 휴교로 10억 명 이상의 학생들의 교육이 중단되었다.
- 아동 돌봄 시설 및 보건 서비스의 갑작스러운 중단과 같은 아동 돌봄 및 보호 서비스의 축소로 인해 아동은 폭력, 착취, 학대에 더욱 취약해졌다.
- 코로나-19는 거리두기 조치의 시행이 거의 불가능한 감금시설에서 이미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수감자들은 전염병에 더욱 취약하다.
- 학대의 가해자와 자택에 격리된 여성들은 피해방지서비스나 보호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더 큰 가정폭력 위협에 노출되고 있으며, 가정폭력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온전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2) 자세한 내용은 “공동의 책임, 세계 연대에 대한 정책 제안: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응 (Policy Briefs on Shared Responsibility, Global Solidarity: Responding to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COVID-19),” “코로나-19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COVID-19 on Women),” “코로나-19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 참고

확산 억제 전략을 시행하기가 어렵다. 물리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손씻기는 근본적으로 깨끗한 물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이나 빈민촌 거주민들에게는 이행 불가능한 정책이다.

- 코비드-19는 인구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비공식 정착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물리적 거리두기를 이행하기가 어려운 난민, 국내실향민, 이주민 캠프에서 보건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특히 질병에 취약하다.

세계적으로 수백만 인구가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이번 위기가 발생하기 전부터 불평등과 생활수준 악화에 대한 거리시위가 자주 일어났다. 사람들은 절망했고 분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비드-19 전염병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갈등이 심화되고 시민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보안대응이 실시될 수 있는데, 차후 논의하겠지만 이러한 대응은 전염병 대책의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들의 인권 보장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경제적 대응의 문제점 등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등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사고를 바탕으로 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코비드-19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어야 하는 시기에 지속가능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인권을 기초로 하는 2030 어젠다는 코비드-19 전염병으로부터 지속가능한 회복을 이루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제시한다.

주목할 점: 위기회복능력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갖는 중요성

코비드-19 위기로 인해 긴급위기대응의 구성요소로서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보호 및 증진이 갖는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사람들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들을 보호하는 정부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지금처럼 명백히 드러난 적이 없었다.

이번 사태가 끝나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보호에 투자한 국가들은 더욱 강력한 위기대응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는 한 국가가 공중보건위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효과적인 식량배분제도; 사회보장 및 보호 제도; 성평등; 노동권, 최저임금, 유급병가, 작업장 보건·안전 기준을 통한 개인과 일자리의 보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개인 보호장비 착용 포함); 저렴한 양질의 주택 제공; 신속한 원격교육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충분한 자원을 갖춘 교육제도; 인터넷 이용과 같은 요소들도 국가의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예방 및 대비 전략의 핵심구성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

인권중심 위기대응의 모범사례

많은 국가들이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재정적, 금융적, 경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비상시 빈민촌에 물 공급
- 위기상황에서 임차료 미납자에 대한 강제퇴거 중단
- 선별적 경제 정책을 통한 일자리와 급여의 보장, 경우에 따라 기본소득 지급에 준하는 정책의 시행, 고용주와 기업에 대한 지원제공
- 근로자의 유급병가 제공 혹은 연장, 실업급여 제공
- 노숙인에 대한 비상보호소 확보
-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대응 강화
- 필수서비스 제공 근로자들을 위한 아동양육지원 제공

하지만 모든 국가가 모든 주민들에게 충분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는 차별하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차별적으로 발생한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계적 위협에 대한 포용적 대응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포용적이고 공평하면서 보편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한 지역사회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지속된다면 모든 지역사회가 계속해서 위협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 관행은 우리 모두를 위협에 빠뜨리게 된다. 특정 지역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타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번 위기와 그 여파에 대응할 때 근본적인 구조적 불평등과 만연한 차별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왜 코비드-19 대응에서 평등과 비차별이 중요한가?

청년, 노인, 부유층, 빈곤층, 기저질환자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사망할 수 있다.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성적 지향, 성정체성, 정치 혹은 기타 의견, 국가, 민족,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정보 혹은 다른 어떤 상태와도 관련이 없다. 바이러스는 차별하지 않으며, 바이러스의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서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차별적 관행으로 인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바이러스 대비책에 일부가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어느 한 사람이 배제된다면 사회 내 바이러스 감염은 지속될 것이고 모든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포용은 우리 모두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코비드-19가 발생하면서 높은 수준의 불평등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그로 인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오랜 기간 지속된 불평등과 서로 다른 건강의 결정요인으로 인해 특정 개인과 집단이 생명을 잃거나 생계에 타격을 입는 등 바이러스의 영향을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미 존재한다.

국가는 모든 이들을 코로나바이러스와 그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는 가장 큰 위험을 겪거나 과도한 영향을 받는 특정 집단을 위한 특별 조치나 보호를 필요로 한다. 만연한 성차별과 같은 여러 교차적 형태의 차별과 불평등을 고려한 위기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위기가 종료되었을 때 차별과 불평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불평등, 차별, 배제와 관련하여 대두된 인권문제³⁾

안타깝게도 이번 위기가 발생하면서 차별의 추악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전 지역에 걸쳐 바이러스 확산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차별,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공격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도자들이 코비드-19를 “외국인 질병”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기도 한다. 바이러스 감염자들에 대한 낙인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들은 차별과 혐오발언을 근절할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소셜미디어기업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 전염병 퇴치를 위해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보건업종 사자들이 배척당하거나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저임금의 파트타임업무에 종사하고 때로는 불안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학대와 젠더기반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보건시스템 내의 성평등을 향상시키는 것은 보다 지속가능한 의료보호 모델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여성의 경우 고착화된 성차별, 높은 사회경제적 취약성, 봉쇄상황에서의 가정 폭력증가, 돌봄 서비스 제공자이자 의료인으로서의 최전선에서의 역할로 인해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되고 불안정성이 증가했다. 또한 전 세계의 아동들은 교육권이 제한되고 부모와 보호자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어 폭력이나 위기관련 트라우마를 겪을 위험에 직면해 있다.

3) 자세한 내용은 “공동의 책임, 세계 연대에 대한 유엔 정책 제안: 코비드-19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응 (Policy Briefs on Shared Responsibility, Global Solidarity: Responding to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COVID-19),” “코비드-19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COVID-19 on Women),” “코비드-19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 참고

이번 위기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장 취약한 집단에 대해 특히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외는 취약성을 발생시킨다. 이번 위기로 특정 집단이 감염자, 사망자 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지나치게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고 최저생활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는 극빈층은 전염병 억제정책 그 자체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번 전염병은 노인, 기저질환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생명, 건강, 복지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 국가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소수집단에 속한 경우가 많다.

노인들은 감염률과 사망률이 더욱 높고 공개적 담화에서 노인차별을 겪거나 의료보건서비스와 환자의 치료순위결정에서 연령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가정에서 방치, 학대로 고통 받거나 필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채 고립될 수 있고, 보호시설에서 감염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소수인종, 소수민족, 소수종교인은 종종 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부여받고 뿌리 깊은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더 높은 감염률이나 사망률을 나타내거나 긴급조치 시행 시 범집행기관으로부터 비인간적 대우를 받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주민, 난민, 국내실향민은 특히 낙인, 외국인혐오, 혐오표현, 관련된 불관용에 취약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이주민들은 국경폐쇄로 인해 실직, 차별, 고국으로의 귀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약 167개 국가는 국경을 폐쇄했다. 적어도 57개국은 망명신청자들에게도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다. 코비드-19 발생 이후 수천 명의 망명신청자들은 위험한 환경으로 강제 추방되었다. 난민, 국내실향민, 이주민은 과밀한 환경에서 거주하면서 위생과 보건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감염에 취약하다. 이주민, 무국적자, 난민, 국내실향민은 코비드-19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호정책에서 배제될 수 있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구금이나 강제추방을 우려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으려 할 수 있다. 고국으로 귀환하는 이주민들은 코비드-19 감염 의심자로 인식되어 낙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주민들은 의료보건 서비스 및 그 외 필수 서비스의 이용 제한과 같이 뿌리 깊은 불평등, 낙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미 심각한 이들의 상황은 전염병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전염병은 선주민들에게 특정한 존재론적, 문화적 위협이 되고 있으며, 자발적 고립상태에 있는 선주민 원로들과 선주민들은 특히 취약한 상태이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장애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전염병 발생으로 자택에 거주하지만 외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생필품, 식량 의약품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위기 상황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수감자, 구금자,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은 성인과 아동 모두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에 매우 취약하다. 이번 전염병으로 과밀한 교도소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집단 탈옥과 폭동이 보도되고 있다. 비구금제재 (non-custodial sanctions)를 적용하거나 선별된 특정 유형의 수감자들을 석방할 필요가 있다. 재판전 수감자, 경범죄 수감자, 정치범,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자, 불법적으로 수감된 자의 수를 축소하는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석방될 수 없는 자들은 반드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위기는 성소수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많은 성소수자들은 의료서비스 이용 시 차별과 낙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폭력과 다른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하다. 경찰이 코비드-19 지침을 악용해서 성소수자 개인과 단체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HIV 감염자는 생명을 구하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약물사용자들은 주삿바늘과 주사기를 포함한 폐해감축프로그램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주목할 점: 평등, 비차별, 포용이 이번 위기의 핵심이다.

평등과 비차별은 언제나 적용되는 핵심적 인권이지만 코비드-19 전염병은 불평등과 차별적 관행은 용납될 수 없고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전염병 퇴치 노력에서 어느 누구도 배제할 수 없다.

불평등은 이미 소외된 특정 집단의 인권 향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전염병은 특정 집단이 지나친 타격을 입도록 하는 근본적인 구조적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전염병이 특히 소외된 집단과 같은 특정 집단에 타격을 입히는 방식은 이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인권중심 위기대응의 모범사례

많은 국가들은 자원이 허용하는 한 이번 위기가 가장 취약한 계층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해 특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비정규 이주민과 망명신청자 전원에 임시 거주권을 부여하여 코비드-19 전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온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보건 전반의 위험을 감소시켰다. 다른 국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를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장애인, 노숙인, 시설거주 청년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비정규 이주민의 체포를 중단했다.

일부 국가의 정부는 교도소 수감자들에 대한 코비드-19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수감자 일부가 석방되거나 일시 출소하였다.

3. 국가별 대응에 모두 동참시키기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대응에 동참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세계적인 대유행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대응에 참여(동참)해야 한다. 국민들을 이러한 대응에 효과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취해진 조치들이 바이러스 퇴치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이고 균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 각자 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 국민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증거와 설득 그리고 공동 소유권을 통한 방법이다. 국민들은 위기 시 정부와 일관성 있는 목소리를 필요로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각 정부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대응을 해야 하며 보호해야 할 대상인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시기이다. 민간 부문 및 기업 뿐 아니라 여러 시민 사회 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도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 국민 참여가 중요한 이유?

현재 사람들은 그들의 인권에 심각한 제한을 받으며 이례적인 조치들을 준수하도록 요구 받는다.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그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타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지를 보여왔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조치 기간과 범위가 연장 및 확장된다면 사람들의 지속적인 협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대응 조치의 지속적인 국민적 지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정부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책 결정에 국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중요한 사항은 해당 바이러스에 의한 위협의 정도를 솔직하게 알리고, 조치들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며 필요이상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러한 신뢰는 투명성과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참여는 공공의 지지를 얻는 것과 관련 있을 뿐 아니라 실행된 모든 조치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의도치 않은 결과를 예방 또는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과도 연관 있다. 경제 계획 및 비상 대책을 포함한 전 부문에 걸친 증거자료에 따르면 여성이 정책 결정 과정의 의견 수렴에서 배제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때 정책의 효과는 줄어들 수 있으며 심지어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당국은 정책 결정에 대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고 비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대처해야 한다. 시의 적절하고 정확하며 사실에 근거한 정보와 성별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 철저히 분석된 데이터를 원활히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취한 조치의 효과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역할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보호해야 할 자국민들에 대하여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자유로운 언론 및 공개적인 시민 환경 내에서 운영되는 시민 사회 단체는 전염병 대응에 핵심 구성요소이며 적극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여러 시민 사회 단체들이 가장 타격을 입은 이들을 지원하는 필수 서비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개입하면서 전염병 대응에 최전선에서 힘쓰고 있다. 미디어와 시민 사회 단체는 또한 각 정부의 대응과 전염병에 대한 정보 및 생명구조 관련 권고사항을 배포하며 도움이 손길을 주고 있다. 기업 및 민간 부문은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계적인 대유행병을 퇴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전염병 퇴치에 최전선에서 있는 이들을 위해 제조업 역량을 개인 보호 장비(PPE)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비상 지휘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대유행병 대응은 계속해서 민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공중 보건 권고와는 반대로 선거로 인해 사람들은 투표 장소 모이기 때문에 민주적 제도 유지가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선거 일정 연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많은 국가들은 이미 선거를 연기했다.

이번 위기로 인해 인터넷 접근성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부각되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 접근성이 부족함에 따라, 인터넷 운영정지 (shutdown)을 예방하면서 빈곤층과 최대 취약 계층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 확장 조치가 시급하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비용 지불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인터넷 제공 중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참여와 시민 공간과 관련하여 대두되는 인권 문제

본 분석에 따르면 각국은 기타 권리들 중 표현과 언론의 자유, 정보의 자유, 집회 및 집결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관행들에 따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 > 정보의 유입과 시민 장소 축소를 반대하는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탄압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
- > 정치적 정적, 언론인들 및 의사,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 시민 활동가 및 기타 인물들을 이른바 “가짜 뉴스” 를 배포한다는 이유로 구속, 감금, 기소 또는 탄압
- > 공격적인 사이버 경찰력 강화 및 인터넷 검열 강화
- > 선거 연기로 인해 일부 심각한 합헌 여부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긴장 고조 유발 가능성

이번 위기로 어떻게 하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유해한 연설을 최대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잘못된 정보 또는 허위 정보를 삭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의도적 또는 고의가 아닌 검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신뢰를 무너뜨린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정확하고, 투명하며 공신력 있는 출처로부터 증거에 기반한 정보이다. 잘못된 정보를 경계하고 단속하면서 믿을 만한 정보가 부각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 되어야 한다.

인권 기반 대응책 실행의 모범 사례

각국은 일일 언론 브리핑을 제도화하여 현황 대응과 관련하여 자국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해왔다. 이러한 토론의 장은 국가 차원의 대응책의 중요한 일환으로 대책을 위해 국가적인 지원을 형성 및 유지하고 정확한 공중보건 정보와 권고사항을 배포하며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을 알려 준다.

일부 국가에서는 독립된 또는 야당이 주도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힘을 실어주어 온라인상으로 공개적으로 규합하여 이번 위기 기간 동안의 행정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 사회 및 기업은 보호를 강화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다. 예를 들어, 상점들은 노년층 전용 개점 시간을 정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사회 지지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수입이 없는 이들을 위해 임대료 수입을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4. 위협은 사람이 아니라 바이러스

필요시 긴급 및 보안 조치는 일시적이고, 균등하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이번 세계적인 대유행병은 평화와 보안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법 집행은 전염병 퇴치를 지원하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비상 지휘권(Emergency powers)이 소요될 수도 수 있지만 축소된 검토과정으로 신속히 허가된 포괄적 집행권은 리스크가 있다.

필요이상으로 엄격한 보안 조치는 보건 대응에 저해될 뿐 아니라 평화와 안보에 대한 기존 위협을 가중시키면서 새로운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법치하에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당면한 위협을 균등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지금은 최대한 평화를 유지하며 바이러스 퇴치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정의, 규제 및 법규를 위한 존중이 코비드-19 대응책에 있어 필수인 이유?

코비드-19로 인해 각 국가들은 긴급 및 보안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실행될 수도 있고 쉽게 남용될 수도 있다. 위기 이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광범위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대유행병은 민주주의 제도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합법적인 반대 의견이나 반대하는 단체나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한 구실이 될 수도 있다.

강압적인 대책은 특수한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무력을 사용하거나 불평등한 방법으로 적용되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전염병 대응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이번 공중 보건 위급상황으로 발생한 불안정의 유형은 평화와 안정 유지를 필요로 한다. 공정, 정의 및 법규 존중은 공중보건의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을 지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법원 및 법의 집행부의 기능은 이번 위기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야 한다. 각 국은 법 집행이 반드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누구보다도 어린이, 여성, 노년층, 장애인을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성차별로 인한 폭력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의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이번 위기를 이용하여 입지를 강화하거나 부정부패를 통해 대유행병 대응책을 위한 자원을 가로채려는 기회주의자들과 맞서야 한다. 코비드-19 퇴치에 있어 신기술은 치료제 또는 백신 개발과 해당 전염병 확산의 분석과 같은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긴급 및 안보 규제 또는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감시하기 위한 긴급 대응 및 규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기에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긴급 대응 기간동안 지금은 정당화되는 사항들이 위기 이후에도 표준화가 될 수도 있다.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으면 이러한 강력한 기술은 차별 및 개인 사생활 침해를 유발시키며 전염병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람들 또는 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악용될 수도 있다.

모든 대책은 유의미한 데이터 보호 장치를 반영해야 하고 합법적이고 불가피하며, 균등해야 하고, 기간 제한이 있어야 타당한 공중 보건을 목표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코비드-19는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몇몇 국가는 기존 평화와 안보에 문제에 직면하여 전염병 대응에 더욱 고전하고 있다.

기존의 불안정과 더불어, 이번 전염병은 평화와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평화 구축을 저해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갈등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부 국가는 특히 국제 사회의 관심이 분산되면, 이번 전염병 위기로 무력화될 수 있을 정도로 기반이 약한 평화 협상 과정을 겪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번 위기를 악용할 수 있다.

유엔 사무총장이 촉구한 대로, 전세계적인 즉각적 휴전령으로 우리는 생명을 위한 진정한 싸움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몇몇 국가들은 코비드-19 대응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반테러 법과 보안 대책을 악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남용은 테러 확산을 조장하는 조건에 불을 지필 수가 있다.

이번 위기를 기점으로 인권 보호를 역행하고자 하는 이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그러한 행위는 전 세계와 국가 차원의 전염병 대응 효과를 저해할 뿐이다.

인권 보호 주안점: 인도적인 위기상황에서 최대 취약 계층 보호. 전염병의 발병은 인권 보호의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취약 계층을 기존 인도주의적 위

기에서 새로운 위협에 노출시킨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들은 불안을 조장하고 가중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번 세계적 대유행병을 이용하여 의료 시스템과 기타 생명 구조 지원에 제동을 걸 위협이 있다.

무력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국제 인도주의 법은 의료 종사자들과 의료시설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촉구해야 한다.

이러한 법 체계에 대한 존중은 전염병에 대응하고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노력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국내 실향민, 난민과 기타 취약 계층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분쟁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 실행 인력의 국경지역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규제를 받고 있는 국가는 의약품, 의료 지원 및 개인 보호 장비 접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예외적인 환경을 인지하고 해당 국가의 전염병 대응 역량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 및 안보 관련 새로운 인권 문제 및 법규

이번 분석에 따르면 각국은 위기 대응책에서 무력, 구금 및 감금, 공정한 재판과 관련된 권리와 정의에 대한 접근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법률의 기본 원칙과 법규는 준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국가에서 관행에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관리 감독의 최소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권리가 미반영 된 장기 집행권을 허용하며 선포된 “국가 비상 사태”가 이에 해당된다.

> 긴급 입법의 취지는 특별히 코비드-19에 대응하도록 되어있지만 쉽게 남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령에 의한 입법권, 잠재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가짜 정보 유포” 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다.

- > 구금이나 감금 등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과도하게 무력을 사용한 경우
- > 남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동선 추적을 위한 감시 기술의 사용

많은 국가들이 특별 비상 지휘권의 유효성에 기간 제한을 두거나 인권법 방침에 의거하여 해당 권한의 연장 여부를 일정 기간동안 검토한다.

주목할 점: 긴급 대책

국제 인권법은 국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시에 일부 권리는 경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상 사태는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야 하고 관련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상황의 긴급함에 의해 엄격하게 소요되는 수준일 경우에만 적용됨.
- 국제법 하에 다른 책무와 일관성이 있어야 함.
- 기간 제한이 있어야 함
- 차별이 없어야 함.

생명권과 같은 특정 권리의 경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지만 코비드-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긴급 대책을 채택했다. 이러한 긴급 대책이 인권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에서는 차별 대우가 없어야 하고 법에 근거해야 하며 필요성에 의거하고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 비례해야 한다.

5.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싸움

전 세계적인 위협에는 전 세계적인 대응이 소요된다.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전세계적인 대응에 국제적인 연대는 필수이다. 어떠한 국가도 현 상황을 홀로 이겨낼 수 없으며 어떤 국가는 다른 국가들보다 대응을 위한 장비가 더 잘 갖춰져 있다. 국가가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를 퇴치하려면 세계는 어떤 하나의 국가도 소외되도록 할 수 없다.

전 세계적인 연대가 코비드-19 대응에 핵심인 이유

코비드-19는 인류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전 인류는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위기에 대응할 자원조차도 갖춰져 있지 않다. 공중 보건 대응의 차이로 인해 가난한 국가들을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

코비드-19 퇴치를 위해 정부가 국민 전체, 특히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모든 국가들이 동등하게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경에 상관없이 확산 현상을 보여왔다. 어떤 국가가 바이러스 확산 통제 노력에 실패한다면 다른 국가가 위협에 빠진다. 전 세계는 가장 부실한 보건 시스템의 강도만큼만 버틸 수 있을 뿐이다.

이번 문서로 인권이슈가 코비드-19 퇴치 전략에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전략은 국제적인 공조와 지원으로 강화 되어야만 한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뛰어넘는 협조와 집합적 조치를 통해서만 퇴치될 것이다. 경제 사회 문화 권리 위원회(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몇몇 질병들은 한국가의 국경을 초월하여 쉽게 전파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국제 사회는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백신이 가용 하다면 또는 가용할 때,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부유한 국가들은 인권 문제를 인지하고 저소득 국가를 지원해야 한다. 전염병은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날 다원주의와 국제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준다. 바로 이것이 유엔의 존재 이유다.

향후 백신 개발과 같은 잠재적 치료제를 연구하고 최신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 지적 재산과 관련된 융통성 있는 정책과 국제 공조는 전세계적인 위협을 타파하는데 필요하다. 치료제와 백신은 전세계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코비드-19 관련 국제적인 대응은 전염병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 전세계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통계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불균형적인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데이터 분석과 같이 데이터 및 통계적인 증거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다원주의와 국제적 인권 기준과 같은 국제적 접근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반발하던 시기에 발생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행동 방안(Call to Action)에서 다음과 같이 재차 강조했다.

집단적인 행동 조치는 인류가 직면한 여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다.

VI. 위기를 극복 이후 이전 보다 개선된 상황

인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의 한계점이 드러난다.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야 한다. 이번 위기가 끝나면 어떠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현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개선 또는 악화되든지 미래가 형성될 수 있다. 즉각적인 위기에 집중하는 동안 어떠한 손해도 없도록 해야 한다. 단기 대응을 기획하면서 장기 대응을 고안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번 위기동안 공공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러한 서비스의 접근을 방해하는 불평등으로 인해 그 한계점이 드러났다. 인권은 직면한 우선순위에 대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과 같이 미래 예방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위기에 장기 계획을 고안해야 하는 이유?

본 문서는 인권에 의해 알려진 긍정적인 행동요령을 제시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응책에서 드러난 부정적인 실례 또한 집중 조명했다. 이번 위기는 모든 국가에 상당한 도전과제를 안겨주었고 일부 국가는 어려운 인권 딜레마에 빠지기도 했다. 지금 현재, 즉각적인 공중 보건의 긴급 상황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위기로 인해 여러 발전 상황과 인권 관련 성과가 퇴보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되었다. 결국, 보호 시스템과 회복력(resilience)을 구축하면서 직면하는 문제의 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법을 이번 위기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다.

이번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부터 교훈을 발판으로 우리는 미래의 전염병 뿐 아니라 다른 전세계적 도전과제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연히 기후변화이다.

행동방안 (Call to Action : CTA)에서 유엔 사무 총장은 세계적 대유행병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제시했다.

인권의 명분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느 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인권 경시 현상은 만연하다.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다.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너무 자주 서로에게 등을 돌린다. 사람들과 지도자들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전례 없는 기회의 세상에 살고 있다. 비약한 기술의 발전과 전세계적 경제 발전으로 수백만명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리고 우리는 2030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안(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향후계획을 위한 행동조치 기본 체계에 합의했다. 이번 위기로 인해 근본적으로 전 세계적 차원 및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약화시키는 인권에 대한 결함이 재조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기 대응을 전개해 나가면서 미래를 계속 지켜보아야 한다. 인권의 위기상황에서의 교훈으로 인해 더욱 평화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이며 회복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고 2030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안의 약속들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어떻게 대처 하는가에 따라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사람들과 그들의 인권에 악영향을 미쳤던 오랜 공공 정책과 관행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위기가 종식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압되면, 국제 사회는 건강권과 보편적 건강보험 목표 및 국가들의 조기 경고 역량 강화, 리스크 감소 및 국가 및 전 세계적 차원의 보건 리스크 관리와 같은 지속 가능 개발 목표 3(SDG3)의 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해당 질병 대응으로 일부 사람들을 경제적 사회적 여파에 더 취약하게 만든 만연한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보건, 교육, 정의 및 기타 다른 관련 영역을 포괄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함을 해결해야 한다. 정상으로의 회복은 또한 미래 세대의 권리를 존중하고,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기후 조치를 강화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이전 보다 더 굳건한 회복”을 해야 하고 인권을 중심으로 국제적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

유엔 총장의 행동방안(Call to Action)제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인간의 공동의 조건과 가치는 분열이 아닌 단합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권고사항

모든 실행자들 특히 각 정부가 국제 인권 및 인도주의 및 난민 법과 기준이 모든 코비드 -19 대응에 핵심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와 많은 특별 조사위원들을 포함한 유엔 시스템은 이를 위한 권고 및 지침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코비드-19 감염 이외의 조건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 대한 차별 없는 인권의 일환으로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가용한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의 가용성, 접근성 및 질을 보장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생명권이 반드시 보호되도록 한다.
- > 세계적 대유행병의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과 기타 대응책의 중심은 사람이어야 하며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및 독립적인 노동자와 같이 생계를 잃어 가장 타격이 큰 그룹과 사회보장 제도의 접근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도록 한다.
- > 사회 소외 계층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 보장 및 사회적 지원을 보장한다. 또한 음식, 물, 위생 및 충분한 주거를 가용하게 한다.
- >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과 회복 계획은 이민자, 실향민, 난민, 빈곤층, 물과 위생 또는 충분한 주거에 접근성이 없는 사람들, 장애인, 여성, 노약자, 성소수자, 어린이, 감금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특정 단체 및 개인들에 대해 바이러스의 불균등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식별하고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 > 정치적 지도자들과 종교지도자와 같은 실행자들은 이번 대유행병으로 인해 유발된 차별, 혐오연설, 노인 차별,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 또는 폭력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포용과 통합을 촉진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 > 사회 모든 부문과 다양한 시민 사회 실행자들이 코비드-19 대응 정책 결정 과정에 유의미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 토착 언어 및 소수민들의 언어를 포함하고 특별한 수요가 있는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를 각색하여 이해가 가능한 형식 및 언어로 정보를 가용하게 하고 식자력이 부족하거나 제한된 사람들 또는 인터넷과 일반적인 미디어에 접근이 부재한 사람들에게도 제공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하고 정확한 정보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정보가 억압되지 않은 채

배포될 수 있도록 한다. 미디어, IT기업들 뿐 아니라 각 정부는 정확하고, 명확하며, 증거에 기반한 정보로 잘못된 정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보호된 의견을 검열시킬 수 있는 지나친 광범위한 대응책을 지양한다.

- > 국가 비상 사태를 포함한 모든 긴급 조치는 합법적이고 균등하며 필요하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핵심사항 및 기간이 있으며 공공의 보건을 위해 생활에 대한 침범을 최소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 비상 지휘권은 반대세력을 진압하고, 인권 수호자 또는 저널리스트를 침묵시키기 위한 기반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또는 공중 보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기타 다른 조치들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 > 코비드-19 대응책의 일환으로 감시용 신기술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한된 용도 및 충분한 사생활 및 데이터 보호가 이에 해당된다.
- > 여성들과 여아들이 이번 위기로 받은 타격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생식 기능 건강/권리에 대한 접근과 가정폭력 및 기타 다른 형태의 성차별 기반 폭력으로부터 보호, 단기적 완화 정책과 장기 회복 정책과 관련된 모든 정책 결정에 공평한 의사 반영 등이 이에 해당된다.
- > 국제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대유행병을 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협동, 의료 종사자 및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개인 보호 장비와 같은 필수 의료 물품과 장비의 무역 거래 및 이전의 가속화를 강화하고 지적 재산 이슈를 해결하여 코비드-19 치료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용하고 적절한 가격에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 > 이민자, 난민, 본토에 있지 않은 외국인들과 같은 취약 계층의 상황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그 방법으로 이민자들에게 일시적인 영주권을 허용하고 추방과 기타 강제 출국 조치를 유예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개인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자발적으로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 > 이번 대유행병에서 배운 교훈을 발판으로 빈곤 및 불평등 종식에 대한 행동 조치를 재조명하고 전염병에 취약하게 하는 근본적인 인권 문제와 미래 세대를 위해 더욱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인권의 효과를 저해하는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COVID-19 지침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 2020. 4. 27.>

코로나-19는 사회, 정부, 공동체 그리고 개인에 대한 시험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가끔 의도하지 않는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바이러스에 대처하고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범위를 넘어선 인권 존중은 이 전염병에 대한 공중보건 대응 및 회복을 위한 성공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접근성

- 보건 전략은 전염병의 의학적 차원뿐 아니라 보건 대응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가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인권과 젠더에 미치는 결과까지 포함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 치료는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치료비 부족, 연령, 장애, 젠더,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에 근거하여, 또는 낙인을 이유로 적시에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기존의 장벽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 보건 대응을 알리고 소외될 위험이 가장 큰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최소한 성별, 연령, 장애별로 감염병 관련 익명화된 분산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개한다.

긴급 조치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한다. 국제법은 중대한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긴급 조치를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 조치들은 검

토된 위험에 비례해야 하고,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특정 대상 및 기간이 있어야 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침해 최소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비상사태 선포 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공식 통지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지역 인권 조약도 유사한 의무를 포함한다.
- 코비드-19 관련, 비상사태 권한은 정당한 공중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인권옹호자나 기자의 활동을 침묵하게 하거나 이견을 억누르기 위해, 다른 인권을 부정하기 위해 또는, 보건 상황 해결을 위해 엄격히 필요하지 않는 그 밖의 다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도 일부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훼손 불가능). 그러한 권리는 강제송환금지원칙, 집단 추방 금지, 고문 및 가혹 행위 금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그리고 다른 권리들을 포함한다.
- 정부는 비상사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기간 비상사태에 놓이게 되는지,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현행화해야 하며, 널리 공표해야 한다.
-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상 생활을 무기한으로 규제하기 위해 비상권한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 위기의 단계별 요구와 일치하도록 대응해야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 모든 사회는 소외받거나 다양한 이유로 공공 정보와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포함해야 하며, 그 중 일부는 고착된 차별, 배제, 불평등 또는 정치적으로 분열된 사람들도 포함한다. 코비드-19 정보 제공 및 대응 노력은 국적, 인종 또는 종교 소수자, 원주민, 이주민, 실향민, 난민, 고령자, 장애인,

여성, LGBTI, 아동 또는 극심한 빈곤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처럼 누락되거나 배제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지역 사회는 누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러한 집단에 정보 제공과 대응 조치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당국에 의견 제공을 지원할 수 있다.

주거

- 사람들이 집에 머무를 것을 요청받으면서, 정부는 적절한 주거가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에 머물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코비드-19 조치는 일부 사람들 – 예를 들어 과밀화 상황에 사는 사람들, 홈리스들 그리고 식수와 위생에 접근할 수 없는 일부 사람들 –에게는 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부적절한 주거에 사는 사람들과 홈리스들에 대한 좋은 실천 사례는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아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기본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주거(비어있고 방치된 집, 단기 임대 가능한)를 긴급히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당국은 사람들이 추가로 홈리스가 되는 것을 -- 예를 들어, 수입의 손실이 담보 대출금이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을 때 퇴거에 직면한 사람들 --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퇴거에 대한 일시정지나 담보 대출금 유예와 같은 좋은 사례들은 광범위하게 모방되어야 한다.
-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봉쇄조치가 시행되든지, 그 어느 누구도 홈리스이거나 적절하지 않는 주거에 산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

- 장애인은 코비드-19에 훨씬 더 취약하고 국가의 대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기 대응 조치, 보건 및 사회 보장을 위한 개입은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해야 하며,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 물리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및 다른 긴급 조치는 생존에 필요한 네트워크 지원에 의존하는 장애인과 격리조치로 현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장애인의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 위기 동안 국가는 장애인의 지속적인 지원 연계 보장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이동의 제한이 현존하는 가족 및 사회 지원 연계를 방해한다면, 그러한 제한은 다른 서비스로 대체되어야 한다.
- 부족한 자원(예, 산소호흡기)의 할당 결정은 기존 장애, 높은 지원 요구, 삶의 질 평가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편견에 근거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국가는 가능한 한 시설, 요양시설, 정신 및 다른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석방해야 하며, 그러한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금은 중단된 서비스와 필수품을 충당할 자원이 부족한 서비스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추가 재정 지원 및 사회 보장에 대한 접근은 중요하다.

노인

- 노인은 다른 연령 집단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감염병 기간에 동등하게 보호 받아야 한다. 의료 치료 및 지원을 받는데 물리적 거리두기나 나이로 인한 차별로 고립되고 방치되는 것을 포함하여 노인이 직면한 특정 위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의학적 결정은 연령이나 장애가 아닌 개별화된 임상 평가, 의료적 필요, 윤리 기준 및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감금되어 있거나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

- 교도소, 유치장, 외국인 보호소, 시설, 강제 마약 재활 센터, 그 밖의 구금 장소 등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은 감염병 발생 시 감염의 최고 위험에 놓이게

된다. 감염 위험이 높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달성하기 어렵다. 위기관리 및 대응에 있어 그들의 상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국가는 자유가 박탈된 모든 사람에게 예방적 및 보건 진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국가는 구금 장소 내 감염병 발생 위험 완화를 위해 석방이나 대안적 구금 방안 모색 등 긴급히 취할 선택을 강구해야 한다. 그 대상은 경미하고 비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석방이 임박한 사람,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사람과 체류자격으로 인해 구금된 사람, 기저의 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 재판 전 또는 행정 구금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없이 구금된 사람 및 강제 마약 재활 센터나 치료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은 석방되어야 한다.
- 아동구금유예 조치가 있어야 하고, 국가는 구금 중에 있는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가족들과의 연락 제한은 긴급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나 추가적인 방치와 학대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역사회 기반 지원과 접근 가능한 폭력 예방 수단이 필요하다.

정보와 참여

- 코비드-19 확산과 대응 관련 정보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한다. 이것은 원주민 언어와 국가, 민족 및 종교적 소수자 언어를 포함한 가독성 있고 이해 가능한 형식과 언어로 이용 가능한 정보여야 하며, 시각이나 청력에 손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 특별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 그리고 글을 읽는데 제약이 있거나 읽을 수 없는 사람들 또는 인터넷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인터넷 접속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다. 정부는 인터넷 폐쇄 상태를 끝내야 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인터넷 서

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젠더 격차를 포함한 정보 격차를 연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의사결정은 개방되고 투명해야 하며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들에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조치는 특정 상황 및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 의료 인력과 과학자들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은 상호 간 그리고 대중들과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인과 언론은 정부의 대응에 비판적인 보도를 포함하여 공포나 검열 없이 감염병에 대해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 공포와 편견을 조장하는 허위정보나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감염병 발생 대비 및 대응에 여성의 관점, 견해,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세계적, 지역적 및 국내적 코비드-19 공간에서 그들의 대표성과 리더십 역할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낙인 씌우기,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

- 코비드-19 대유행은 특정 국적 및 인종 그룹에 대한 낙인, 차별,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역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코비드-19 질병 명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정치 지도자들과 사회 유력 인사들은 이 위기가 초래한 낙인 씌우기와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강력한 발언을 해야 하며 그러한 차별의 불씨가 점화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는 공포를 유발하는 수사적인 발언

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고, 코비드-19 대응이 특정 사람들을 폭력과 차별에 더 취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 정확하고, 명백한 증거에 기반한 정보와 인식제고 캠페인 전파는 오보와 공포를 먹고 사는 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차별, 외국인 혐오 관련 사건들을 감시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건들에 대응하는 것은 신속하고 널리 알려져야 한다.

이주민, 국내실향민, 난민

- 이주민, 국내실향민과 난민은 캠프나 정착지, 또는 과밀화되고 취약한 위생, 과장되거나 보건 서비스가 접근 불가능한 교외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특별한 위험에 직면한다. 외국인 보호센터나 이민자와 난민의 자유가 박탈된 장소에 구금된 사람은 특히 위험에 처한다.
- 이주민은 언어와 문화 장벽, 비용, 정보 접근성 결여, 차별 그리고 외국인 혐오를 포함하여 보건 진료에 접근하는 데 있어 종종 장애에 직면한다. 미등록 상황에 있는 이주민은 자신들의 출입국 신분 때문에 감금, 강제송환 또는 처벌의 위험이나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자신들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나 보건 진료에 접근할 수 없거나 기피할 수 있다.
- 국가는 국내 코비드-19 예방과 대응에 이주민, 국내 실향민과 난민을 포함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이주민, 국내 실향민과 난민들이 자신의 신분에 관계없이 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 감염 테스트 그리고 보건 진료 보장을 포함할 뿐 아니라 이주민과 난민의 건강 및 기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출입국 관련 당국 업무와 구분하는 것을 포함한다.
- 수용국의 이주민, 국내 실향민 및 난민, 지역 사회 모두를 위한 서비스 강화에 도움을 주고 국가 예방 및 대응 관리에서 그들을 포함하기 위한 국제 지원이 시급하다. 실패할 경우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고 적대와 낙인찍기를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 이주민, 국내 실향민 또는 난민에 대한 반감 및 외국인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 또한 취해져야 한다.

- 국가 간 경계 지역 통제 강화, 여행 제한 및 이동의 자유 제한을 강화하는 어떠한 조치도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탈출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인권법 상 보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안전과 보호를 위해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중요하다. 국가는 외국인 보호시설의 이민자 석방을 고려해야 하며, 이민자, 이민 관계자 그리고 전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 귀국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사회 • 경제적 영향

- 학교가 폐쇄된 경우, 예를 들어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 적합한 학습, 특성화된 TV 그리고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미 많은 소녀들이 등교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고, 집안 돌봄 노동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듯 소녀들은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제한된 교육 기회와 다른 원거리 교육 수단은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소녀들과 소년들은 학교가 제공하는 영양가 있는 음식, 정신 건강, 성 그리고 재생산 건강 교육과 같은 다른 서비스에 접근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 신체적, 지적 그리고 감정 발달의 초기 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이 직면한 높은 취약성 때문에 아동을 위한 사회보장계획은 특별히 검토되어야 한다. 가장 좋은 예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직접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다.
- 이 위기의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공공 및 사회적 영역, 국제 그리고 국내 기구가 취한 좋은 사례들은 공유되어야 한다.
- 이 위기 동안에 일하는 사람들 특히 의료 인력들의 직업 건강과 안전은 평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직장이나 봉급을 잃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건강을 불필요하게 위험에 빠트리는 조건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 이 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재정 자극과 사회 보장 패키지는 이 감염병의 충격적인 결과를 완화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유급 병가 보장 및 실업 수당 연장 그리고 보편적 기본 소득과 같은 긴급 경제 구호 조치들은 이 위기의 심각한 영향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다.

식량

- 이동의 자유 제한과 보호 장비 부족은 농업 노동자들 – 일부에서는 대부분이 이주민인 상황에서 –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코비드-19 위기는 식량 불안을 가속화 한다. 식량 생산 확보를 위하여 농업노동자의 이동 및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고, 소규모 농민 특히 여성 농민을 위한 신용, 시장 그리고 종자와 같은 농업 투입물에 대한 접근 및 재정 지원을 목표로 한 접근 또한 취해져야 한다.
- 극빈자와 가장 소외된 자들이 겪는 식량 불안정을 개선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들의 식생활 욕구 충족을 위한 즉각적인 공급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이는 식량 제공 및 영양 지원을 포함한다.

프라이버시

- 보건 모니터링은 개인의 행동과 이동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그러한 감시와 모니터링은 공중보건이라는 특정 목적과 특별히 연관되어야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상황에서 요구되듯이 그 기간과 범위 또한 제한적이어야 한다. 정부나 기업들이 공중 보건 위기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적인 정보들을 수집하는데 이러한 조치들을 남용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강경한 보호 장치를 시행해야 한다.

아동

- 아동이 코비드-19 징후를 덜 보이고 낮은 사망률을 보이지만, 바이러스 예방 및 봉쇄를 위해 취한 조치 결과로 실질적인 아동 보호는 매일 위기를 보인다.

국가는 감염병 대응 및 회복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 아동 보호에 필요하고 아동 권리 보장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기본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고 대응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 188개국이 학교 폐쇄 조치를 취함으로써 세계적으로 15억 이상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가 방해받고 있다. 여학생들은 대부분의 경우 교육과 함께 양육 책임에 균형을 맞추고 원격 학습 기회에 불평등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교육, 건강, 경제적 기회에 장기적인 영향을 끼친 학교를 완전히 떠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 가정 체류 명령 및 봉쇄는 아동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친다. 가정에 갇히는 것은 아동이 가정폭력, 학대 및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 위험에 처한 아동 지원 및 보호소 제공 서비스는 최우선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
- 수백만의 아동은 가족이 아프거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빈곤에 처하게 된다. 거리에 사는 아동, 이주 아동 및 난민 아동, 인신매매 피해 아동, 분쟁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이 특히 위험하다.

청년

- 코비드-19 이전에는 세계 청소년 5명 중 1명은 고용,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았으며, 청년 실업률은 나머지 노동 인구보다 약 3배 높았다. 2007년의 세계 금융 위기는 청년들, 특히 비공식 경제에 고용될 가능성이 더 높고 종종 저임금, 불안정하고 보호에 취약한 직업은 젊은 여성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가는 감염병의 영향을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젊은이들의 특정한 상황에 대응하고 적절한 직업과 사회 보호를 통해 그들의 권리를 유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젠더

- 코비드-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여성, 소녀 그리고 LGBTI 사람들의 특정 상황, 관점 및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해결해야 하며 취한 조치가 젠더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여성과 소녀들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이 증대될 것이고 가중된 스트레스와 잠재적으로 자신들도 감염 위험이 증가할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세계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조산사, 간호사, 약사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 노동자 중 70%가 여성이며, 감염과 노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과 소녀에게 미치는 위기의 불균형적인 영향 개선을 목적으로 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 많은 국가에서, 여성들은 일자리 분야에서 불균형적인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많은 여성들이 비공식분야(예를 들어, 가정 노동자, 유모, 농업분야 또는 가족 사업 지원)에서 일한다. 또한 사회보장, 건강보험 또는 유급 휴가 등이 없는 상황에서 이 위기의 결과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거나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육아에 대한 돌봄을 이용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감소 추세에 있으며, 향후 여성들이 일을 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
- 고령 여성은 빈곤 속에서 또는 낮은 연금이나 연금 없이 생활할 가능성이 많고 이는 바이러스의 영향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재화, 음식, 식수, 정보 그리고 보건 서비스에 접근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 격리를 포함한 제한적인 공중보건 조치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 특히 친분이 있는 파트너의 폭력과 가정 폭력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젠더에 기반한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한 쉼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피해자 안전을 위해 피해자가 이용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효과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 핫라인과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코비드-19 알림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 성과 재생산에 관한 보건 서비스는 생명을 살리는 최우선의 과제로 간주되어야 하며 피임에 대한 접근; 모자보건; 성관계로 인한 감염 치료; 안전한 낙태 돌봄; 젠더에 기반한 폭력 피해자를 포함하여 참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대응 방식이어야 한다. 특히 여성과 소녀의 권리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성 및 재생산에 관한 필수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은 전용되지 않아야 한다.
- LGBTI 또한 이 전염병 확산 기간에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되며, 특별 조치에 이러한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사용가능한 데이터에 따르면 LGBTI는 대개 비공식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높은 비율의 실업 및 빈곤에 처해 있다. 특히 LGBTI와 관련된 보건 서비스는 이 위기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이는 HIV 치료와 검사를 포함한다.
- 정치 지도자 및 영향력 있는 인사는 감염병의 맥락에서 LGBTI 사람들에 대한 낙인찍기와 혐오 발언에 반대해야 한다.
- 자가 체류 제한을 고려할 때, 일부 LGBTI 청소년은 부양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나 공동 거주자가 있는 적대적인 환경에 간혀 폭력에 대한 노출, 불안과 우울증이 증가한다.

음용수, 위생 그리고 청결

- 비누와 깨끗한 물로 손을 씻는 것은 코비드-19 대응에 있어 제일 먼저 취해야 하는 방법이나, 22억 인구는 안전한 물 서비스와 위생에 접근하지 못한다. 특히, 여성과 소녀를 포함하여 물에 대한 평등하고 적절한 접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하여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물, 위생 그리고 청결을 해결하는 것은 코비드-19 퇴치를 위한 세계적 투쟁에 있어 성공을 담보하는 것이다.
- 수도 요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식수 공급 중단 금지, 물과 비누 그리고 살균제의 무료 제공(적절한 위생에 접근할 수 없는 공동체에 이동 분배자를 통한 제공)을 포함한 긴급조치는 이 위기 기간 빈곤과 다가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원주민

- 국가는 원주민의 전통 의학을 포함하여 건강에 대한 원주민 고유의 개념을 고려하여야 하며, 코비드-19 예방 조치를 취함에 있어 원주민의 자유롭고, 사전에 통지하고, 동의를 구할 것을 협의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 국가는 특히 원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통하여 해당 원주민과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원주민 영토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자발적인 고립이나 초기 접촉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 국가 및 다른 관계자는 그들을 특히 취약한 그룹으로 간주해야 한다. 외부인과 원주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외부인이 원주민의 영토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경계선은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소수자

- 국가는 먼 거리나 지역에 살면서 종종 기본적인 재화와 용역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자들이 고통 받을 수 있는 코비드-19 보건 위기의 불균형적인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수자들은 종종 과밀화된 주거 환경에 살고 있으며, 물리적 거리두기나 자가 격리를 하는데 더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디지털 접근 제한과 부모의 교육 차이 또한 홈스쿨링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든다.
-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은 자원이나 공식 증명 문서의 부족 또는 낙인 찍우기나 차별 때문에 보건 진료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는 소수자들이 의료보험이나 신분증명서 없이도 보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

- 모든 기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공중 보건 위기 시기에도 그리고 정부의 의무 이행과 관계없이,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권을 존중할 독자적인 책임이 있다.

- 코비드-19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 원조, 경기 부양책 또는 기업을 목표로 하는 그 밖의 개입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은 수혜를 받는 기업이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해야 한다. 위기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조치의 핵심은 노동자, 특히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제 제재 및 일방적 제재

- 국제 사회는 코비드-19의 세계적인 확산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저해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의학 치료 제공을 박탈하는 모든 제재의 해제 또는 최소한의 중단을 주장해야 한다.
- 제재를 가한 정부는 다른 국가의 코비드-19 확산 대응 노력을 방해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약품, 의료장비 또는 다른 필수품의 수입 및 수출을 막거나, 약품, 의료장비 또는 다른 필수품 구매를 방해하는 것 또는 인도주의 지원 전달을 방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신매매

- 코비드-19 관련 제한에 따른 높은 수준의 실업은 온라인 성 착취와 같은 착취적인 서비스의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국내 실항민, 난민 그리고 이주민은 정기적인 취업의 기회가 부족하여 인신매매와 착취를 당할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
- 국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국가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제 협력과 연대

- 코비드-19는 국내·외 불평등을 노출시켰고 악화시켰다. 세계적인 연대와 공동 책임의 정신으로 국가 및 모든 행위자들의 강화된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은 생명과 생계를 구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집단적 대응은 개발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국제 연대와 협력으로 강조된 개발권은 무역, 투자 및 금융 분야의 국가 및 세계 정책,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에서 더 나은 발전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COVID-19 감염과 사회권에 관한 성명서

<사회권규약위원회, 2020. 4. 17.>

전 세계적 코로나바이러스 질병(COVID-19) 감염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성명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성명서 *

I. 서문

1. 전 세계적 코비드-19 감염은 공공 보건 시스템을 압도할 정도로 위협적이며 경제, 사회 보장, 교육 및 식량 생산 등 세계 모든 삶의 영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최전선에서 의료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수만 명이 이미 목숨을 잃었다.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격리 조치 같은 결과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위태로워졌다. 감염병 영향으로 많은 국가에서 학교가 폐쇄되었고 사람들은 종교 활동, 결혼식 또는 장례식과 같은 중요한 문화·공동체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우선, 위원회는 감염병의 모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2. 감염병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특히 사회 취약집단에 속한 사람의 건강권 향유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당사국은 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예방 조치나 최소한 완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인권에 기반하지 않는 국가의 조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침해하고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감염병 퇴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결과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1)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는 감염병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가

* 이 성명서는 2020년 4월 6일 위원회에서 채택됨.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약 성명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E/C.12/2019/1) 참조.

장 중요한 영향에 대해 강조하고 당사국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의 의무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코비드-19 감염병을 퇴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II. 감염병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

3. 코비드-19 감염병은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의 중요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 감염병은 본질적으로 건강에 대한 세계적 위협이다. 그럼에도 감염병 퇴치를 위한 당사국의 일부 조치가 이동의 자유나 다른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향유에 있어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감염병 퇴치를 위한 당사국 조치는 모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비례해야 한다.

4. 수십 년 동안 공공 보건 서비스 및 다른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과소투자로 인해 보건 시스템과 사회 프로그램이 약화되었으며, 2007-2008년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악화되었다.²⁾ 결과적으로, 보건 시스템과 사회 프로그램은 현재 감염병의 강도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가 불충분하다.

5. 취약·소외집단은 현재의 위기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또는 면역체계가 손상된 사람이 취약하며 만약 코비드-19에 감염된다면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다른 집단 예를 들어 주거형태의 돌봄 시설 또는 공동생활시설에 있는 사람, 구금시설에 있는 미결수용자와 수형자, 임시 거처에 있는 거주민 또는 식수, 비누나 살균제가 부족한 지역 거주민 등은 감염될 위험이 크다. 배달노동자, 환경미화노동자, 일일노동자 및 농업분야 노동자와 같이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노동의 본질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재택근무 제도의 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하다. 최전선에서 감염병 대응에 영웅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보건 의료 노동자는 개인 보호 장비와 방호복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해서 감염된다. 일부 집단은 많은 국가가 코비드-19 확산 억제 조치 결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다. 가사 노동자를 포함한 임금 또는 사회보장 혜택의 손실에 직면한 집단 노동자가 이 집단에 해당하며 “단기 계약 노동자 중심 고용 경제” 나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의장이 당사국에 보낸 서한, 2020년 3월 16일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공공부채, 건축정책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E/C.12/2016/1) 참조.

비공식 분야³⁾에서 일하는 불안정 노동자도 포함된다. 비공식 무역업자와 많은 소규모 기업은 무역을 위해 왕복하거나 사업할 수 없어, 자신뿐 아니라 부양가족에 심각한 경제적 불안을 초래한다.

6. 또한, 불충분한 공공재와 사회서비스는 세계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빈곤한 사람은 민간 시장에서 필수 재화와 사회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으며 격리, 폐쇄, 국내·외의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불균형적인 경제 결과에 부담을 진다.

7. 학교, 기술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이 폐쇄된 국가에서 온라인 교육과 학습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학교 폐쇄가 교육권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와 컴퓨터, 스마트폰 및 태블릿과 같은 장비에 대한 접근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부유하고 가난한 학생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8. 아직 많은 사회에서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과 역할이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고려할 때, 가정에서 아이 돌봄과 가족 중 고령자나 환자를 돌볼 부담을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지우고 있어 코비드-19 감염병은 젠더 불평등 또한 악화시킨다. 게다가 가족이 봉쇄되거나 격리된 상황에서 여성은 가정폭력에 취약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가정폭력피해여성이 가지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

9. 이 감염병 확산 기간 동안 원주민, 난민, 망명 신청자, 분쟁국가 및 분쟁 지역에 사는 사람은 특히 취약하다. 이 중 많은 이들은 식수, 비누나 살균제, 코비드-19 검사 시설, 보건의료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만성질환과 기저질환 비율이 높으며, 코비드-19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위험이 훨씬 더 크다.

III. 권고

10. 당사국은 이 위기 동안에 규약 상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노동권에 관한 일반논평 제18호(2005), 사회보장권에 관한 일반논평 제19호(2007),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관한 일반논평 제23호(2016) 참조.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감염병 대응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최고의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⁴⁾

11. 당사국 조치가 규약 상 권리를 제한한다면, 그 조치는 규약 제4조에 명시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 본질적으로, 그러한 조치는 코비드-19로 발생한 공공 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이며, 비례적이어야 한다. 감염병 해결을 위해 당사국이 채택한 비상조치와 권한은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 보건 보호를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시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

12. 감염병 대응에 있어, 모든 사람의 고유한 존엄성은⁵⁾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규약에 따른 최소핵심 의무는 우선시 되어야 한다.⁶⁾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의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에 대한 접근은 사치가 아니라 특히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법 집행 공무원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응해야 하고, 가정폭력 핫라인은 운영되어야 하며, 가정 폭력 대상이 되는 여성과 어린이는 정의와 법적 구제에 대한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13. 당사국은 이 위기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된 보건 대응 보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 보건의료 자원이 전체 인구에게 유통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⁷⁾ 최전선에서 이 위기를 대응하는 모든 보건의료 인력에게 감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호복과 장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 결정자의 자문을 받고, 그 조언을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 의료 인력은 코비드-19와 같은 질병 확산을 조기에 경고하고 효과적인 예방 조치와 치료를 권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14. 당사국은 최대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건강권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완전히 실현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 감염병 및 감염병 퇴치 조치가 가장 소외된 집단에게 불균형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양산했다면, 당사국은 이 소외된 집단에게 더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가하지 않도록 가장 공평

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과학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5호(2020)(준비 중) 참조.

5)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전문 참조.

6)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당사국 의무의 본질에 관한 일반논평 제3호(1990) 10-11 문단 참조.

7)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14호(2000) 참조.

한 방법으로 코비드-19 퇴치에 필요한 자원 동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원 배분 시 이 집단의 특별한 요구를 우선하여야 한다.

15. 모든 당사국은, 긴급 사안으로, 고령자, 장애인, 난민, 분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취약한 공동체 및 집단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감염병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 협력을 포함한 특별하고 목표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다른 조치와 함께 식수, 비누 및 살균제가 부족한 공동체에 이를 제공;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직업, 임금 그리고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행; 이 감염병 기간 동안에 퇴거명령이나 주택에 대한 담보권 실행 유예;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식량과 소득안정 보장을 위한 사회적 구제 및 소득 지원 프로그램 제공; 집시와 같이 취약한 소수자 집단뿐 아니라 원주민 건강과 생계 보호를 위한 특별한 맞춤형 조치; 모든 사람들이 교육 목적의 이용 가능하고 공평한 인터넷 서비스 접근 보장을 포함한다.

16. 당사국은 모든 노동자를 직장 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고용주가 공공 보건 기준에 따라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전까지 노동자는 일할 의무가 없으며, 적절한 보호 없는 노동 거부로 징계나 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감염병 기간 동안 노동자의 직업, 연금 및 다른 사회 이익을 보호하고 임금지원, 세제 지원, 추가적인 사회보장 및 소득보호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경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⁸⁾

17. 식품, 위생 제품, 필수 의약품 및 공급에 대한 수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조치 또한 취해져야 한다. 권장 조치로는 감염병 기간 동안 그러한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폐지하고, 빈곤한 사람이 필수 식품과 위생 제품을 이용 가능하도록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다.

18. 감염병에 관한 정확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는 바이러스 전염 위험을 줄이고 위협하고 왜곡된 정보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한 정보는 또한 코비드-19 감염자를 포함한 취약 집단을 낙인찍고 위해한 행동을 할

8) 규약 상 일반적인 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해서는 위원회 일반논평 제18호, 제19호 및 제23호 참조.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하다.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한 형식이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모든 지역 및 원주민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학생 특히 가난한 공동체·지역 학생이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와 필수적인 기술 장비 접근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서 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이 감염병으로 폐쇄되는 동안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 코비드-19 감염병은 국제적 위기이며 이는 규약의 핵심 원칙인 국제적 원조 및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⁹⁾ 국제적 원조 및 협력은 연구, 의학 장비와 공급, 바이러스 퇴치 관련 업무 처리 모범 기준 공유;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협력; 효과적이고 동등한 경제 회복을 위한 모든 국가의 공동 노력을 포함한다. 저개발 국가, 분쟁 중인 국가, 분쟁 후 상황에 있는 국가와 같은 취약 국가와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의 요구는 국제적 노력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20. 당사국은 코비드-19 퇴치에 있어 국제적 노력에 관한 역외 의무가 있다. 특히, 선진국은 최빈국 감염병 피해자에게 필수 장비의 접근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의료 장비 수출 제한 부과 등과 같은 결정을 회피해야 한다. 나아가, 당사국의 일방적인 국경 조치는 필수 재화 특히 주요 식품과 건강 장비 유통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국내 공급 확보를 위한 모든 제한은 비례적이어야 하며 다른 나라의 긴급한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21. 당사국은 채무 면제의 다른 메커니즘 허용 조치와 같이 감염병 퇴치 중인 개발도상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금융 기관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진단, 의약품 및 백신과 같은 코비드-19 관련 과학적 진보 이익에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적용 가능한 지적 재산권 제도를 조정하거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22. 일방적 경제·재정 제재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특히 의료 장비 및 공급 조달의 맥락에서 코비드-19 퇴치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국가가 코비드-19 감염병의 효과적인 퇴치를 위해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재는 해제되어야 한다.¹⁰⁾

9)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 제11조 및 제15조 참조.

23. 감염병은 초국가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과학 분야의 국제 협력 필요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예이다. 바이러스와 병원균은 경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역 유행병은 매우 빠르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세계적인 감염병이 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은 중요하며 지지받아야 한다. 국가 해결책이 불충분할 때 효과적인 감염병 퇴치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국제 협력에 대한 국가의 더 강한 책무이다. 국제협력 강화는 예를 들어 잠재적 병원균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가 및 국제기구,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감염병 위협이 있는 신종 유행병에 대해 국가가 적시에 그리고 투명하게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 유행병 통제와 세계적인 감염병 창궐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은 이러한 최고의 과학 증거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감염병 발생 시, 특히 의학 분야 최고의 과학 지식과 그 응용을 공유하는 것은 질병의 영향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치료와 백신 개발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감염병 여파로 교훈을 배우고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 대비를 위해 과학 연구가 촉진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24. 코비드-19는 공공 보건 시스템, 포괄적인 사회 보장 프로그램, 적절한 일자리 (decent work), 주거, 식량, 식수와 위생 시스템 및 젠더 평등 증진 기관에 적절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투자는 세계적인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및 국가 간 소득과 부의 깊은 불평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차 형태의 불평등을 방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¹¹⁾

25.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에 코비드-19 감염병 해결을 위한 자원의 임시 동원이 규약에 따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향한 장기적인 활성화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계인권선언문의 이상에 도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¹²⁾ 국가, 국제 협력 및 연대를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 그리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10)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경제 제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존중의 관계에 관한 일반논평 제8호(1997) 참조.

11)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0 참조.

12) 이 약속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전문에서 볼 수 있다.

실질적인 투자는 세계가 미래 감염병과 재난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위원회는 규약에 따른 다양한 수입사항을 통해 코비드-19 감염병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비상대책과 COVID-19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2020. 4. 15.>



코로나-19
대응

대응의 핵심에서의 인권

중점 주제
비상대책과 코로나-19
2020년 4월 15일

비상 대책과 코로나-19: 정책지침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세계 여러 나라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수호하기 위해 법치주의에 입각한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비상지휘권은 국제인권법,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명시된 근거에 부합해야 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추가 권한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법에 근거해 정상 상태 회복을 목표로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식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더라도, 국가는 공공 보건 보호를 위해 특정 인권을 제한하는 예외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반드시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정한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의 정지 및 훼손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한할 수 없는 일부 기본권 존중을 포함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는 이들 권리 훼손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식량, 보건, 주거, 사회 보호, 식수, 위생시설, 교육 및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국가 의무는 비상상황에서도 유효하다.

비상 대책의 결과로 인한 인권 제한

비상사태 선포 전이라도 이동, 표현,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와 같은 일부 권리가 공중 보건 수호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사항은 다음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적법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이 제한이 적용되는 시점에 시행 중인 국내법 안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법은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어서는 안 되고, 분명하고, 대중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 **필요성:** 공중 보건을 포함한 ICCPR에서 명시된 인권 제한 허용 근거를 따르며, 긴급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 **비례성:** 인권은 해당 이해관계에 비례해서 제한되어야 한다. 즉,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방안 중 가장 권리를 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 **비차별 주의:** 어떠한 제한도 국제인권법 조항에 반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
- 모든 제한 사항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쟁점이 되는 권리에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 어떠한 제한도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 당국은 비상사태에서 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비상사태

- 비상사태는 특히 인권법으로 규제된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특정 권리의 훼손이나 인권법 조약상 내용 이행의 정지가 허용된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 권리에 대한 비례적 제약이나 제한 사항을 설정하여 상황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면, 이러한 권리 정지 조치는 피해야 한다.

- 코비드-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의 인권 수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모든 조치는 상황의 긴급성에 따라 엄격히 요구되는 조치에 비례하고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비상사태의 기간, 지리적 적용 범위, 실질적 근거와 관련이 있다.
- 이에 따라, 긴급사태 법안과 조치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 ▶ 엄격하게 범위를 한정하고,
 - ▶ 명시된 공중 보건 목표 달성을 위하더라도 인권침해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 ▶ 긴급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일반법으로의 복귀를 보장하는 규제 일몰제 및 검토조항 등을 안전장치로 설정한다.
- 생명권, 고문 금지, 형법상의 적법성 원칙과 같은 일부 권리¹³⁾는 비상사태 중에도 훼손 불가하며 모든 상황에서 계속 적용된다. 일반법원은 훼손할 수 없는 권리 침해에 대한 신고 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국가는 비상사태 시에 국가 및 민간에 의해 권리 침해가 자행될 경우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위반과 남용 사례에 대한 혐의 발견 시 빠르게 종식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해야 하며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며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보장해야 한다.
- 비상사태 중에도 준법성의 원칙과 법치주의에 따라 공정한 재판의 기본 요건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오직 법정에서만 범죄 행위로 기소된 사람을 재판하고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코비드-19에 따른 비상사태 선언이 소수자를 포함한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시행된 조치들은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장애,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떤 근거를 들어서라도 차별을 금한다.

13) 훼손 불가능한 권리의 전체 목록은 ICCPR의 4조와 인권위원회 일반 논평 29 참조. 지역 인권 기구는 다른 형태의 훼손 불가능한 권리 목록을 제시할 것이다.

- 국가는 긴급 제한 조치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비상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고용 및 생계, 주거, 식량, 교육, 사회 보호 및 의료를 포함한 핵심적인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비상사태가 합법적으로 선언되려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적법성의 원칙 및 법치주의의 유지를 위해 공식적 선포는 필수적이다. 비상사태 선언 및 비상시 권력 행사는 관련 헌법 및 국내법의 기타 조항과 일치해야 한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들은 규약 제 4조 3항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국가는 비상사태 및 관련 조치가 적용될 정확한 실질적인 국경, 시간 범위 등에 대해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비상사태 입법 및 대책에 관한 정보는 일반 대중이 새로운 법규를 인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충분하고 신속하게 해당 국가 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언어와 모든 공식 언어를 통해 잘 전달되어야 한다.
 - 비상사태는 인권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안내되어야 한다. 비상사태는 코비드-19 대유행 대응과 같은 공공의 필요성을 갖춘 선언 목표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언론매체는 비상사태 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투명한 정보 공유와 전달을 위해서 언론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
 - 비상 권력 행사의 감독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체화하는 데 중요하다. 특정 권리의 훼손이나 중단과 같은 긴급 조치는 입법부의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비상사태 하에서 제안된 모든 비상 입법안은 적절한 입법 정밀조사를 받아야 한다. 위에 언급한 제한 사항을 따르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나 비상사태에 대해 유의미한 사법적 감독이 있어야 한다.
- 비상사태에 관한 추가 지침은 [인권위원회의 일반논평 29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규정의 제한과 위반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을 참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조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대한 위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위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위반이 종료되는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다.

특별 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 국가는 위반에 대해 처벌을 할 때 비례의 원칙을 존중하며 예외적인 조치를 인도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자의적 또는 차별적인 방법으로 처벌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가정 폭력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COVID-19 비상조치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 국가는 법률로 확립된 근거와 적절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갖췄을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 자유의 박탈은 비상사태에서도 합리적이고, 필수불가결해야 하며, 비례적이어야 한다.
- 국가는 개인 구금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는 구금 장소의 인구밀도가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과 코비드-19 비상상황 시 재소자에게 가하는 위험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해 벌금을 정해야 한다. 벌금의 적절한 금액을 평가할 때, 성별에 따른 영향을 포함해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긴급 조치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
- 코비드-19 관련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조치를 고안할 때는 대중적이지 않은 소수 의견의 검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피해야 한다. 국가는 가짜 뉴스 유포를 막을 때, 개별적 사실 체크 과정 · 교육 · 미디어 문해력 증진과 같은 개인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와 인터넷 회사가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에 대한 추가 지침은 인권위원회의 일반논평 35 참조.

법 집행 및 특별 조치

- 법 집행관은 의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덜 유해한 조치가 명백히 효과가 없다고 판명되었을 때만 무력을 행사해야 한다.
- 특별 조치 또는 비상사태 동안 시행하는 것을 포함한 법 집행 행위는 법 집행관 행동 강령, 법 집행관의 무력과 총기 사용에 대한 기본 원칙, 법 집행관의 살상 무기 사용에 관한 유엔 인권 지침 등 관련 규범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일반적으로, 군대는 치안 유지의 기능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에서 군대는 한정된 기간과 한정된 상황에서 법 집행 과정에 배치될 수 있다.
- 군인이 법 집행 기능을 수행할 때 군대는 민간 권한에 종속되고, 민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며, 국제 인권법에 따라 법 집행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따른다.

- 법집행관 및 군인이 권력 남용, 자의적 구금,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같은 인권침해 혐의를 받으면 효과적으로 신속히 수사받아야 하며 가해자는 재판에 회부 되어야 한다. 이는 코비드-19 대유행 중 많은 지역에서 법집행관 및 군인에게 주어지는 광범위한 권력에 비추어 특히 중요하다.

- 무력 사용 및 법집행관의 행동에 대한 추가 지침은 법 집행관 행동 강령, 법 집행관의 무력과 총기 사용에 대한 기본 원칙, 법 집행관 관한 유엔 인권 지침 참조.

대응의 핵심에서의 인권

중점 주제
시민공간과 코비드-19
2020년 5월 4일

시민공간과 COVID-19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 2020. 5. 4.>

대응의 핵심에서의 인권



코비드-19
대응

중점 주제
시민공간과 코비드-19
2020년 5월 4일

시민공간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지침(Guidance)

팬데믹 동안 시민공간은 왜 문제가 되는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 시민사회는 보건의료체계의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시민사회는 가장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현명한 해결방법을 도출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개방적이고 활발한 시민공간은 COVID-19 조치에 대해 정확하고 솔직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돕는다.

팬데믹 동안 시민공간의 폐쇄로 인한 우려는 어떤 것이 있는가?

팬데믹 동안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반면, 너무 광범위하거나 차별적일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또한 적절하게 구상된 조치가 취해졌을지라도 악용 될 우려가 있다.

공중보건의 요청에 근거한 예외 조치와 비상사태는 다음과 같아야만 한다.

- 공중보건 요청에 필수적이고 비례해야 한다.
- 공중 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 수단이어야 한다.

-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 기간제한이 있어야 한다.
- 생존권,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행위 금지 및 임의로 구금 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특정한 권리(“훼손 불가능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COVID-19 대응에서의 참여 독려

위기대응계획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이며, 현명한 일을 하는 것이다.

- 정부는 참여와 피드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만 하며 여성, 노인, 장애인을 포함한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 가장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고, 그들이 동등하게 정책 결정에 포함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부 및 다른 이해관계자는 COVID-19 맥락에서 원격 회의 및 화상회의로 전환 할 때 기존의 지역적,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의 시민사회 참여 채널을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확장해야 한다. 사생활 존중, 비용 효과성 및 풀뿌리 조직과 시민사회단체를 더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원격참여자를 위한 더 유연한 채널을 총체적으로 모색해야한다.

정보 접근성 극대화

시의적절한 정보 공유, 정보 접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의 자유로운 의견 교류는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게 한다.

- 특정 성별 및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여 위기와 관련성 있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제공한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과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며, 장애인을 포함한 특수한 요청(specific needs)이 고려되는 사람들을 위해 정보를 요청에 맞게 조정하고, 문맹이거나 읽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 접근성 증진. 다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제한적일 때, 온라인 정보는 특히 중요하다. 섯다운(shutdown)을 비롯한 인터넷 이용 제한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 가능하다면, 정부

및 그 외 관련 기관은 노인, 빈곤층과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 여성 및 소녀, 그리고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뢰성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화된 노력을 통해 유해한 허위정보에 대응해야 한다. 대량의 정보를 삭제하는 식의 잦은 임의검열을 초래하기보다는 정부, 회사가 권위 있는 출처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부각하는데 집중하고 소셜미디어 문해력(Social media literacy)을 증진해야 한다.
- COVID-19관련 허위정보 철회 결정은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기준을 근거로 해야하고 호소 대상이어야 한다. 회사가 내용을 관리하고 한정된 인력자원으로 인한 인공지능사용이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조치들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제법하의 비례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구제와 개선의 기회를 마련해야한다. “허위정보” 철회 결정이 당국에 의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 조치 및 이러한 맥락에서 취해진 그 밖의 조치를 토론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 존중

이해관계자 참여 및 전문가, 전문 의료진, 언론인 및 그 밖의 인플루언서(influencers)의 비판적 피드백 제한은 COVID-19의 효과적인 대응을 저해한다.

- 관련 데이터 접근 제한, 검열, 언론활동 규제 또는 불법화는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당국의 보건의료 조치의 신뢰를 악화시키고 인간의 건강과 삶의 잠재적 위협을 가중시킨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보의 공급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정부와 미디어는 전문 의료진과 과학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야하며 징계 조치 및 처벌의 위협 없이 상호 및 대중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건 분야에서 내부고발 보호 절차는 그들이 보복성의 고소 및 협박에 대한 우려 없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 COVID-19 팬데믹과 관련한 “가짜 뉴스” 또는 허위정보와 같은 모호한 개념에 근거한 표현을 처벌하는 법률은 합법성 및 비례원칙과 맞지 않다. 비판 또는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없게 하거나 부정확한 COVID-19관련 발언에 형사처벌 하는 것은 신뢰와 효과적인 보건의료 대응을 저해한다.

시민사회 보호

인권 활동가는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삶과 생활에 미치는 팬데믹의 영향을 해결하는 노력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정부 및 다른 이해 관계자는 모범사례 공유, 격차 대응에 대한 조명 및 공중 보건 교육에서의 인권활동가, 미디어 종사자, 국가인권기구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기여를 공인해야한다. 이와 같은 중요한 활동에서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은 필수적이다.
- 정부는 이동 및 집회의 자유 제한이 비차별적임을 보장하고 언론인을 포함하여 인권활동가를 표적으로 삼거나 불필요하게 저지해서는 안된다. 시민사회가 피해지역에 계속해서 옹호, 모니터링 및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권활동가, 언론인 및 그 외 종사자들을 불법화하는 구실로써 표현, 결사, 이동 또는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 정부는 인권 활동과 연관되어 구금된 활동가들과 불법적으로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해야한다. 교도소 또는 기타 수용시설에서 있는 사람들은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실현과 의료서비스 선택에 한계가 있어 COVID-19 위험에 특히 노출되어있다.

집회의 자유 수호

모임(physical gathering)의 예외적 제한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필요하나, 법에 근거해야하고 불가피하며 목적에 비례해야 한다.

주거지로부터의 이동 제한은 합법적인 보건 사유를 근거로 필요할 수 있고, 모임을 운영하는 재량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하며, 오직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리적 거리두기와 같은 예를 비롯해 공중보건의 필요와 부합하여 어떻게 시위가 열리는지를 고려해야한다. 공공집회의 제한은 지속적으로 필요한가와 적절한가를 판단하고자 계속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 관리

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민감한 데이터(sensitive data)의 수집과 관리가 요청된다. 그러한 활동은 공중 보건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고 면밀히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 **보건의료관련 데이터의 적절한 관리:** 보건의료 관련 데이터 시스템은 COVID-19 팬데믹 관리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로 국한하고,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대상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림으로써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국제 데이터 보호 원칙에서 정한 바를 준수해야한다.
- **적절한 보호장치와 책무성 보장:** 부정확한 데이터 교정을 위한 투명한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책무성 보장 및 데이터 유출 또는 그 밖의 오용에 대한 구제 마련,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팬데믹에서 가공된 데이터의 타 정부기관의 사용을 금지해야한다.
- **모든 감시는 비례적이고, 합법적이며, 불가피한 것 이야 한다:** 감시 조치는 공중 보건의 필요에 따른 최소한의 개입 수단이어야 하고, 분명한 일몰 조항을 포함해야한다. 개인의 감시, 접촉자 추적조사 및 개인의 이동 경로 추적은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데이터는 오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한다. COVID-19와 관련하여 확대된 모니터링은 국가안보기관 및 정보 기관 하에 있어서는 안되며, 고유하게 독립된 기관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관리감독 되어야 한다.

COVID-19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유엔 지침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 2020. 5. 11.>

I. 서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하면서 여러 국가와 공동체는 감염증의 영향과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유대를 보여주었다. 안타깝게도 이번 감염증으로 혐오표현과 차별이 새롭게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혐오표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후 새롭게 나타났거나 더욱 심화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광범위한 종류의 폄하 발언을 포함하며, 책임전가, 고정관념 형성, 낙인찍기 발언부터 경멸적, 여성혐오적, 인종주의적, 외국인혐오, 이슬람혐오, 유대인혐오 발언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허위정보의 유포도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¹⁴⁾

감염증이 발생한 이후, 중국이나 아시아 출신으로 보이는 개인, 소수민족, 소수종교인, 이주민, 외국인들을 바이러스 전파자로 분류하거나 비방의 대상이 되었다. 때로는 허위정보나 소문을 근거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혐오표현을 이용해서 이미 소외된 집단을 공격하는 더욱 악의적인 사례들도 보고된 바 있다. 유대교인, 이슬람교인, 기독교인, 바하이교인 (Bahai’ s) 혹은 다른 소수집단이 바이러스 전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음모론이 이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의 증가로 이어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혐오범죄나 차별이 발생하기도 했다. 때로는 언론인¹⁵⁾, 내부고발자, 의료보건인, 인권활동가, 평화활동가들이 감염증 대응이나 보고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14) http://en.unesco.org/sites/default/files/disinfodemic_dissecting_responses_covid19_disinformation.pdf

15) A/HRC/44/49, 34-40 단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혐오표현 현상은 주류언론이나 온라인 소셜미디어, 테크플랫폼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주로 개인들에 의해 확산되지만 정치지도자, 공직자, 종교지도자, 그 밖의 저명인사들이 전파하거나 개인이나 집단이 혐오확산이나 폭력선동의 목적으로 힘을 합칠 때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혐오표현은 단기적,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혐오표현의 대상은 폭력에 더욱 취약해지고, 정치적·사회적 배제, 고립, 낙인의 위험에 노출되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공개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되며, 의료서비스나 기타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감염증으로 이미 큰 타격을 입은 특정집단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기저에 깔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폭력적 극단주의의 발생요인이 더욱 증가하며,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통합, 연대, 신뢰가 저해된다. 또한 사회 불안과 집단 간 폭력을 촉발하여 분쟁이나 잔혹범죄¹⁶⁾가 발생하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혐오표현은 인권의 향유, 지속가능발전, 세계 평화 및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감염증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더욱 신중하고 명확한 태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혐오표현을 규탄하고 포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특히 의견 및 표현의 자유, 평등권, 차별금지과 같은 국제인권법에 근거하여 연대할 필요가 있다.

회원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혐오표현을 근절의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IT기업, 소셜미디어 기업, 주류 언론, 시민사회와 같은 다른 행위자들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엔시스템은 각 국 정부와 다른 행위자들이 인권을 존중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혐오표현 근절 방안을 수립,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유엔 사무총장이 2020년 4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인권: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라는 제목의 정책 브리프에서 강조한 것처럼 “수세대에 만에 발생한 세계 최대 위기”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응 및 회복’ 노력에 있어서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16) 대량학살,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본 지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혐오표현 근절을 위해 여러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본 지침은 혐오표현에 관한 유엔 전략 및 이행계획 (UN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Hate Speech)을 근거로 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II. 권고사항

유엔 국, 기관, 기금, 프로그램 대상 권고

- 의견제시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기초로 하는 사회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혐오표현을 규탄하고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표시하고 혐오표현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하는 이들을 지지
- 국내, 국제적 차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혐오표현 데이터를 파악, 모니터링, 수집하고 그 동향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혐오표현에 관한 유엔 전략 및 이행계획에 따라 국내, 국제적 차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혐오표현을 파악, 대응, 근절할 수 있도록 회원국 정부, 지역기구, 언론, 소셜미디어 플랫폼,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관련 행위자들이 협력하는 기회 마련

회원국 대상 권고

- 감염증 억제 조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 검색, 수령, 제공의 자유를 보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인권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 (Secretary General’s policy brief on COVID-19)와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지침서¹⁷⁾(Human Rights and the guidance note by OHCHR)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상대응방안, 법안, 정책이 국제인권법에 따라 수립, 적용되도록 함

17) 유엔 사무총장 정책브리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인권: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https://www.un.org/sites/un2.un.org/files/un_policy_brief_on_human_rights_and_covid_23_april_2020.pdf;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비상조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침” 2020년 4월 27일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828&LangID=E>
www.ohchr.org

-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혐오표현에 공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
 - 〉 감염증 대응 단계에서 일관된 메시지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이번 위기가 사회 통합 및 사회의 위기회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킴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혐오표현, 허위정보, 오보, 음모론에 대해 강력한 공개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등 감염증에 관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가 주기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혐오표현 모니터링을 위한 투명하고, 접근가능하면서 독립적인 시스템을 지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공직자, 특히 고위급 정부 관료의 대국민 메시지가 다음 사항을 충족하도록 함
 - 〉 이용가능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고 신뢰할 만하면서 증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투명하고 자국 내 거주민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로 배포되고 시의적절하게 제공됨
 - 〉 바이러스의 발생 및 전파의 책임을 특정 지역사회나 공동체에 전가하지 않음
 - 〉 바이러스로 영향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포용을 촉구하고 이들을 소개함

-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의사표시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과학적 정보 및 의견의 자유로운 흐름 등 정보 접근권과 균형을 이루도록 함
 - 〉 타인의 권리나 평판을 존중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견표시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목적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 국제인권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검열조치는 다른 주요 공중보건 정보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음¹⁸⁾

18)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729&LangID=E>
www.ohchr.org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정확하고 편견 없는 보도, 사실 검증 활용, 고정관념 형성 방지, 인종, 민족, 국적, 종교와 같은 요소의 불필요한 언급 자제와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보도시 가장 엄격한 윤리적, 직업적 기준을 준수

시민사회 및 그 밖의 행위자 대상 권고

- 종교지도자, 종교인, 노조위원장, 비정부기구 대표, 청년대표, 공인 등 사회의 저명인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혐오표현, 오보, 허위정보, 음모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표시하고 차별과 낙인을 완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림
-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정부, 유엔, 지역기구, 소셜미디어 및 기술 기업, 언론인, 교육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해야 함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혐오표현의 성격, 범위, 영향과 이러한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정책 방안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해 보고함
 - 〉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공동체를 포함하는 대응방안을 수립 (예: 소셜미디어 캠페인)

III. 결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전 세계적인 혐오표현 확산 및 사용에 대한 기존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또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취약집단이 발생했다. 국내, 국제적으로 혐오표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감염증 대응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혐오표현 대응은 포용, 연대, 공동의 인류애를 포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의 근본원인에 대응하여 “더 나은 상태로 회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장애인 권리와 COVID-19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 2020. 4. 29.>

코로나-19와 장애인의 권리: 지침

1. 장애인의 권리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3. 지역사회에서 사는 장애인의 권리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4. 장애인들의 일자리, 수입, 생계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5. 애인 교육권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6.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7. 장애인 인구가 많은 특정 인구 계층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a. 장애인 수용자
 - b. 적절한 주거 형태가 없는 장애인

개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병은 사회 모든 계층을 위협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형성된 사고 방식적, 환경적, 제도적 장벽 때문에 불균형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많은 장애인들은 기저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에 더욱 취약하고, 감염되면 더욱 심각한 증상을 겪게 되며 높은 사망률로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일상생활을 도움에 의존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행동 제재 조치 기간 동안 고립되고 생존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한편, 요양원이나 정신병원에서 사망자 수가 급증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시설 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은 특히 취약하다.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와 정

보의 접근성의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들은 생계와 소득 지원에 대한 접근 측면에서 차별과 기타 다른 장벽에 끊임없이 부딪힌다. 온라인 교육 참여와 폭력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특히, 수용자나 노숙인 또는 주거 형태가 충분치 않은 장애인 계층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면 장애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불균등한 영향을 완화하는 개선된 대응책을 실행할 수 있다. 본 지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세계적 대유행병이 장애인과 그들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시킨다.
- 전세계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모범 관행에 주의를 기울인다.
- 각 국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핵심 행동 방안을 확인한다.
- 장애인을 포용하고 인권에 기반한 코비드-19 대응책의 추가적인 연구를 위해 자료를 제공한다.

1. 코비드-19가 장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코비드 -19에 특히 취약한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직면할 수 있는 차별을 더욱 가중시키는 선택적 의료 지침과 프로토콜 뿐 아니라 건강 관련 정보와 환경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계적인 대유행병 기간동안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때 더 심화된 불평등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프로토콜은 때때로 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의학적 편견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장애 유형 기반 배제 기준으로 부족한 자원을 할당하는 부상자 분류 지침이 있다. 이 지침서는 일상 생활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장애, "쇠약", "치료적 성공" 가능성으로 분류하고, 또한 생존할 경우 앞으로의 "장애 보정 인생 손실 연수" 를 추정한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구성원들은 또한 소생 처치를 포기하도록 의료 시스템 내에서 압박을 받는다.

모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산마리노 공화국의 생명윤리 위원회는 부상자 분류에 관한 코비드-19 지침을 제시했다. 해당 지침은 장애를 근거로 차별을 금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유일한 범위는 모든 생명을 중시하며 치료의 임상적 타당성과 비례성 기준을 기반으로 생명을 존중하며 부상자 분류의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나이, 성별, 사회 또는 인종, 장애와 같은 기타 선별적 기준은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기준은 살아야 할 가치의 경중을 판단하여 생명에 등급을 적용할 수 있으며 용인될 수 없는 인권 유린이 발생할 수 있다¹.”
- 미국 보건 및 인간 서비스부 시민권 사무소는 당국 관계자들은 장애를 근거로 차별을 금지하는 공고를 발행했다. 해당 공고는 “장애인들은 편견과 삶의 질을 평가, 또는 한 사람의 장애 유무 또는 나이를 근거로 상대적인 “가치” 판단이 기준이 되어 의료 서비스 제공이 거부되어서는 안된다²” 고 서술한다. 또한, 당국 관계자들이 긴급 대책 노력으로 장애인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보와 소통의 접근성을 확장하고 보장하도록 한다. 이러한 지침에는 “긴급 대응책이 성공적이고 낙인 찍히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숙소 제공” 도 해당된다.
- 아랍 에미리트는 자택에 있는 장애인들을 검사하는 국가 프로그램을 착수하였으며 4월 중순 현재 650000명 장애인에 대한 코비드 -19 검사를 실시했다³.
- 필리핀의 인권 위원회는 보건소가 아동과 장애인들과 같은 지역 사회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공 메시지를 지원한다는 정보를 발표했다⁴.
- 캐나다에서는 장애인과 장애인 대변 단체들의 참여하에 코비드-19 장애인 자문 그룹이 설립되었다. 이 그룹의 목적은 정부가 장애인 관련 이슈, 문제, 제도적 공백과 전략, 대책 및 방안을 채택함에 있어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⁵

각 국가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행동 방안은 무엇인가?

- 장애를 근거로 치료 거부를 금지하고 장애 유무, 지원 필요 수준, 삶의 질 평가 또는 장애인에 대한 기타 여러 의료적 편견을 기반으로 치료 접근을 방해하는 조항을 폐지한다. 이는 부족한 자원(호흡기와 중환자실 접근 등)의 할당을 위한 지침에도 해당된다.
- 증상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우선적인 검사를 보장한다.
- 코비드 -19이 장애인 건강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장려한다.
- 접근 가능한 모드, 수단 및 형식으로 건강 정보를 가용하게 하고 배포할 뿐 아니라 접근 가능한 환경(병원, 검사, 격리 시설)보장을 포함하여 치료에 장벽을 식별하고 제거한다.
- 세계적인 대유행병 기간동안 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을 지속적인 제공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 유무에 따른 선입견과 편견을 근거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인식을 제고 시킨다.
- 포용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권리에 기반한 전염병 대응책 마련 시, 다양한 측면에서 장애인들과 그들의 대변 단체를 면밀하게 자문하고 활발히 참여시킨다.

출처

- 코비드-19에 예외는 없다: UN 전문가에 따르면 “ 모든 사람은 생명 구조 조정의 권리가 있다.”
- 코비드 -19, 장애인 권리에 관한 UN 특별 조사위원회: 누가 장애인을 보호하는가?
- WHO, 코비드-19 발병 기간동안 장애인들을 위한 고려점

2. 코비드-19가 시설 생활을 하는 장애인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코비드-19는 정신병원, 사회 돌봄 시설(보육원, 주간 돌봄 시설, 재활센터)과 노년층을 위한 시설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높은 감염율과 치사율을 초래한다. 예비 연구 조사에 따르면, 코비드-19에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 요양 시설의 치사율은 42%에서 57%에 이르렀다⁶. 시설 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은 기저 질환이 있거나 입소자들과 직원들 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어렵고 직원들의 유기로 인해 코비드-19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더욱 높다. 시설 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은 또한 방치, 통제, 고립 및 폭력과 같은 인권 유린을 당할 수 있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모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스위스와 스페인에서는 시설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가능한 경우 퇴소시켜 가족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 캐나다는 시설 환경을 위해 특별 대책을 반영하여 우선 검사 지침을 발행했다.⁷

각 국가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핵심 행동 방안은 무엇인가?

- 장애인을 퇴소 조치하고 가족 및/또는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사회의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공공 또는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이 지원 서비스 자금을 모금한다.
- 그동안, 우선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내에서 예방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시설내 초과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입소자들 간 물리적 거리두기 대책을 실시하고, 방문 시간을 조정하고, 보호장비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생 상태를 개선하여 감염의 위험을 줄인다.
- 예방책을 실행하기 위해 인적 자원 및 재정 자원을 포함한 시설의 자원을 일시적으로 늘린다.
- 비상 대책 기간 동안,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 차별대우 받지 않음, 자유롭게 고지에 입각한 동의 및 재판권과 같은 장애인 권리를 지속적으로 존중해야 한다.⁸

- 시설을 폐쇄하여 탈시설화를 채택 및 강화하고, 사람들을 지역사회로 돌려보내고, 장애인과 노인층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를 강화하여 예전보다 더욱 개선된 상태로 회복한다.

출처

- [코비드-19 환경에서 장기 치료 시설을 위한 WHO의 감염병 예방 및 통제 지침서, 임시 지침서\(2020 3월 21\)](#)
- [WHO, 코비드-19 발병 기간 동안 장애인들을 위한 고려사항](#)
- [코비드-19 환경에서의 권고사항을 포함한 사회심리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역내 및 국제 단체의 성명](#)

3. 지역사회에서 사는 장애인의 권리에 코비드-19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코비드-19 대응책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특별한 장벽에 부딪힌다. 특히, 이들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은 자가 격리 제한은 삶의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들의 자율권, 건강 및 생명에 새로운 위험요소가 된다.⁹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많은 장애인들은 (공식적인 서비스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친척/친구로부터 비공식적인 지원을 받음) 이동제한과 물리적 거리두기 대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식량, 필수품,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위험에 빠지게 되고 목욕, 요리 또는 먹기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코비드-19 대책에 관한 공적 정보는 모든 장애인들이 알 수 있도록 접근가능한 형식(수화 통역, 자막, 읽기 쉬운 형식 등) 과 수단으로 체계적으로 소통 가능 하거나 배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회 심리적 장애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일부 장애인들은 엄격한 자가 격리 조치를 견딜 수 없을 수도 있다. 하루 중 아주 잠깐 조심하는 외출은 장애인들이 이 상황을 대처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 **파라과이**¹⁰와 **파나마**¹¹는 관련 정보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같은 맥락으로 **뉴질랜드** 보건부는 수화 및 읽기 쉬운 형식과 같은 접근 가능한 형식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 섹션을 부서 웹사이트에 할애했다.¹² **멕시코** 정부도 유사한 관행을 채택했다.¹³
- **아르헨티나**¹⁴는 장애인 지원 도우미를 이동 제한과 물리적 거리두기에서 제외하고 장애인들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가 **콜롬비아**에서 개발되어 장애인과 노인에게 식품과 기타 구매 행위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¹⁵ 또한, **파나마**에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장애인과 그들의 도우미들에게 특정 개점 시간을 할당하여 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¹⁶
- **영국과 북아일랜드**¹⁷는 초기에 엄격했던 격리 규칙을 완화하고 자폐증을 앓는 사람들과 다른 장애인들의 외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프랑스**도 유사한 대책을 도입했다.¹⁸

각 국가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핵심 행동 방안은 무엇인가?

- **코로나-19 관련 대책에 관한 정보가 수화 통역, 자막, 읽기 쉬운 양식 등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 **장애인 생활 지원 도우미들이 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가 격리 조치에서 제외한다.**
-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의 발전을 장려하고 조율하고 보호 자료, 장비와 물품이 가용하도록 한다.**

- 자가 격리/구금 대책 기간동안 슈퍼마켓, 식료품점 및 다른 필수 가게들은 장애인과 그들의 도우미들을 위한 우선적 개점 시간 제정을 고려한다.
- 외출을 완전히 금지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삼가고 장애인 외출에 예외 사항을 설정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합리적인 숙소를 반드시 제공한다.

출처

- [WHO, 코비드-19 발생 기간 동안 장애인들을 위한 고려사항](#)
- [장애인 권리 개선을 위한 UN 파트너십\(UNPRPD\), 국제노동기구\(ILO\) 와 기타 기구, 코비드-19 위기에 대한 장애인 포용적인 사회 보호 대응](#)

4. 장애인들의 일자리, 수입, 생계에 코비드 19가 미치는 영향은?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 고용될 가능성이 낮고 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¹⁹ 그 결과, 고용 기반 사회 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 코비드-19 환경에서 경제적 탄력성이 줄어든다. 고용이 되거나 자영업.²⁰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나 지원의 부재로 재택 근무가 불가능 할 수도 있고 수입이 줄어들거나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와 더불어, 코비드-19 대응책은 가족과 한 가정의 가장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전반적인 가정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장애인들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수입이 부족해짐에 따라 장애를 가진 이들과 장애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비용과 지출(접근가능한 주택 및 장비, 보조 기계, 특정 물품과 서비스 등등)을 하는 가정은 불균형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들은 더욱 빠르게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모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코비드-19 대응책으로 불가리아, 몰타 공화국과 리투아니아는 사회 지원 서비스를 확장하고 장애인을 포함하여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 보호 시스템 기금을 증가시켰다.²¹

- 아르헨티나와 페루는 장애 수당 수혜자들이 코비드 19 위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수당을 받는다²². 프랑스는 장애인 수당의 수혜자들에게 유리한 유사한 대책²³을 발표했다. 그리고 튀니지의 비상 대책으로 저소득층 가정과 장애인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현금지원을 했다.²⁴
- 미국²⁵은 장애인의 재정 상태를 완화에 기여할 조세 감면 프로그램을 설립했다.

각 국가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핵심 행동 방안은 무엇인가?

- 수입이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정적 지원(일시불 지급, 감면 대책, 생필품 보조금 등)을 제공한다.
- 추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자금을 선 지급함으로써 기존 장애인 수당 증액한다.
- 만료일이 임박한 장애인 재정 지원 혜택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 수입이 줄어든 장애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재정적 보상을 제공한다.
-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업을 중단하고 실업 수당이나 병가 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 원격근무에 소요되는 장비 제공을 위해 장애인 고용주들에게 세금 공제와 같은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 식량 제공 계획이 장애인들을 포함하고 식량이 집까지 배송될 수 있는 물류 방법과 같이 장애인들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을 보장한다.

출처

- [ILO, 코비드 19 대응책에서 지급 현재, 앞으로도 절대로, 장애를 가진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함](#)
- [장애인 권리 개선을 위한 UN 파트너십\(UNPRPD\), 국제노동기구\(ILO\) 와 기타 기구, 코비드-19 위기에 대한 장애인 포용적인 사회 보호 대응](#)
- [국제 통화 기금\(IMF\), 코비드-19 정책 대응](#)

5. 코비드-19가 장애인 교육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교육을 완수할 가능성이 낮으며 학교 교육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²⁶ 코비드-19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시적으로 교육기관을 폐쇄했으며²⁷ 이로 인해 장애우 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교육의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일부 국가들은 원격 학습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장애인은 소요 장비, 인터넷의 접근, 온라인 학교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접근 자료와 지원이 부재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벽에 부딪힌다. 그 결과, 많은 장애인들은 소외되고 있고 특히 지적 장애를 지닌 학생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더욱이, 장애인들은 학교 폐쇄로 인해 학교 급식과 친구들과 놀면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기회와 같이 또 다른 차원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모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미국은 연방 정부 응용 법률, 장애우 교육 조례²⁸ 지침서를 발행했다.
- 에콰도르는 교사들이 집에서 홀로 남겨져야만 하는 아동들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발행했다.²⁹
- 영국과 북 아일랜드는 정보를 배포하고 부모들과 양육자들이 집에 있으면서 상충되는 책임들에 대응하고 장애를 지닌 아동들에게 교육 과정을 지원³⁰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각 국가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핵심 행동 방안은 무엇인가?

- 교육 및 학교 당국에 학교 밖 교육 제공 시 가용한 자원의 다양성과 그들의 의무의 범위에 대해 분명한 지침을 제공한다.
- 원격 학습을 위한 인터넷의 접근을 보장하고 보조 장비와 적절한 숙소 제공을 통해 장애인들에게도 소프트웨어가 접근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 원격 학습을 통한 포괄적인 교육에 관련하여 교사들에게 지침, 교육, 지원을 제공한다.

- 장애를 가진 아동의 조기 교육을 부모와 양육자와 긴밀하게 조율한다.
- 장비 설치를 돕고 장애가 있는 아동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와 양육자를 위해 지침과 원격 지원을 제공한다.
- 장애인에게 원격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접근 가능하고 장애우 맞춤 자료를 개발한다.
- 다른 미디어(요구 시 인터넷 연결, 텔레비전으로 수송되는 교육 프로그램 등)를 통해 배포하기 위하여 접근 가능한 교육적 시청각 자료를 개발한다.

출처

- [유엔 아동 권리 협약\(CRC\)위원회의 코비드-19 가 아동의 신체적, 감정적, 심리적인 측면에 끼칠 영향과 아동의 권리 보호 촉구에 관한 성명](#)
- [UNICEF, 코비드-19 대응: 장애 아동 및 장애인을 위해 고려할 점](#)
- [UNESCO 코비드 -19 대응관련 웹사이트](#)

6. 폭력으로부터 장애인 보호에 권리 코비드-19의 영향은?

장애인은 특히 고립되었을 때 폭력의 위협에 더 노출된다. 장애를 가진 여성이나 여아는 성차별적 폭력, 성폭력,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과 가정 폭력에 직면할 확률이 더 높다.³¹뿐만 아니라 이들은 장애를 지닌 남성보다 더 높은 강도의 폭력을 경험한다.³² 코비드-19 환경에서 장애나 성별에 기만한 폭력에 대한 정보가 현재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사한 환경에서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장애인들은 특히 더 위험하다.³³

가정 폭력 신고 서비스 및 지원으로의 신고 및 접근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을 반영하지 않고 접근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핫라인 서비스는 청각 및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가 갖추져 있지 않다. 비상시 보호 쉼터나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다.

모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페루는 위기 기간 동안 지방 정부가 전화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사태가 철회된 후에는 직접 대면하여 당국에 폭력 상황을 보고하는 임무가 서술된 지침을 발행했다.³⁴ 그 외에, OHCHR은 이 분야와 관련하여 새로운 모범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우려점을 낳는다. 몇몇 국가들은 접근 가능한 핫라인, 지원 및 텍스트 메시지를 통한 보고를 계속 제공하고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비디오 폰 서비스³⁵를 제공하고 있다. 아래 출처 목록에서 여러 다른 모범 사례가 확인되었다.

각 국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행동 방안은 무엇인가?

- 보고 메커니즘, 핫라인 서비스, 비상시 보호 쉼터와 기타 형태의 보조 지원이 장애인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장애인들을 포용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한다.
- 지역 사회와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 활동을 함으로써 장애인들, 특히 혼자 사는 장애인들의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 장애인들, 특히 여성 및 여아들이 폭력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을 제공한다. 그리고 동료들끼리 서로 돕기를 장려하는 것과 같이 지원 네트워크를 장려한다.

출처

- [유엔 인구 활동 기금\(UNFPA\), 성차별에 기반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권리 기반 및 성차별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침과 장애를 지닌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성, 생식 건강 그리고 권리](#)
- [코비드-19 기간동안 장애인 생존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7. 장애인 인구가 많은 특정 인구 계층에 코비드 -19가 미치는 영향 : 장애인 수용자 및 적합한 주거가 없는 사람들

a. 장애인 수용자

수감 인구 중 장애인 인구³⁶, 특히 사회 심리 장애를 지닌 사람과 지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인구가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 장애인들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많은 장애인 수용자들은 동료 수용자를 통해 비공식적인 도움에 의존하여 음식에 접근하고 이동하거나 목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옥의 의료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 형사 재판에서 공판 전 구금과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 수용자 뿐 아니라, 이민자 구금 상태에 있는 장애인 이주자를 포함하여 현재 어떠한 행정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

모범 관행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영국과 북아일랜드에서는 형량이 두 달 남짓 남은 수용자들을 석방하고 있다.³⁷ 미국에서 일부 주는 수용자들을 석방했거나 석방하고 있는 중이다.³⁸ 이란과 터키, 인도네시아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수용자를 석방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자율적으로 보호 조치를 할 수 없는 기능적 제한이 있는 장애인 수용자들이 조기 석방의 수혜자로 포함되었다.³⁹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에서 대법원과 형사 고등 법원 수감자 석방 조치의 수혜자로 장애를 지닌 수감자를 식별했다.⁴⁰ 브라질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소년원에 있는 이들을 포함하여 장애인들을 검토, 재평가 및 석방하라는 권고안을 발행했다.⁴¹

각 국과 이해 관계자들이 취해야 할 주요 행동 방안은 무엇인가?

- 조기 석방, 보호 관찰, 형량을 감하거나 공판 전 구금 사용을 줄이면서 장애인을 포함한 위험군에 해당하는 수감자를 석방함으로써 수용자 인원수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가족, 또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지원 신속히 제공하고 공공 또는 민간 서비스 업체에 의한 지원 서비스 기금을 마련한다. 장애가 있는 수감자를 식별하고 그들이 지원, 식량, 물, 소독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도소 내 예방책을 실시한다. 그리고 독방 수감, 물리적 거리두기, 보호 기구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생 상태를 개선한다.

출처

- [WHO, 교도소 및 기타 구금 시설 내 코비드-19 예방 및 통제](#)
- [UN 정부간 상임위원회, 코비드 -19: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에 관한 집중 조명](#)

b. 적절한 주거 형태가 없는 장애인

장애인들 특히 사회 심리적 장애 및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또한 최대 빈곤층에서 그 수가 집중되어 있다. 장애인 노숙인들과 긴급 보호 쉼터와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혼잡한 생활 상태, 물과 소독제에 대한 접근 부족 그리고 기존 건강 상태 때문에 코비드-19 감염에 특히 취약하다.

코비드-19 비상 사태는 장애인들을 포함한 노숙인들이 어쩔 수 없이 보호 시설과 지원을 찾으려 하여 긴급 보호 쉼터가 포화상태가 되어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일을 초래하게 된다. 생활 거처로 인해 물리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또한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

모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미국에서는 의사소통에 장애인 관점을 반영하는 특정 지침을 통해 노숙인 대응책을 실행하였다.
- 칠레 정부는 노숙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거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개입을 강화할 것을 발표하였다.
- 아르헨티나는 높은 수준의 의료 소요사항 없이 물리적 거리두기가 소요되는 사람들에 대한 긴급 보호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 시설에 1000개 이상의 침대를 설치했다.

각 국과 이해 관계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 방침은 무엇인가?

- 장애가 있는 노숙인들은 존엄과 존중하는 태도로 대우해야 하고 응급 처치자들은 교육과 소통에 관한 지침을 받아 폭력적인 상황을 피해야 한다.
- 임시 거처에서 강제 퇴소를 피한다. 왜냐하면 이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가속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를 가진 노숙인은 생활하는 장소에서 치료하고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보호 쉼터가 가용하다면 제공한다.
- 임대 주택, 호텔, 회의실 또는 경기장과 같이 충분한 위생시설과 적합한 생활 조건이 보장되어 물리적 거리두기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보호 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거리에 위생 시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 비누, 싱크대 및 다른 자원을 제공하여 물과 위생용품이 가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 적합한 주택권에 대한 UN 특별 조사 위원회, 코비드-19 지침: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
- 적합한 주택권에 대한 UN 특별 조사 위원회, 코비드-19 지침: 임시 거처 거주자 보호

일반출처

- CRPD Committee and Special Envoy of the UN Secretary-General on Disability and Accessibility, Joint Statemen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OVID-19
-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COVID-19 and the disability movement
- International Disability and Development Consortium: Repository of resources of disability inclusion and COVID-19
- ILO, No one left behind, not now, not eve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OVID-19 response
-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people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Statement on COVID19 and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with recommendations
- UN working to ensure vulnerable groups not left behind in COVID-19 response
- UN ESCAP: Ensuring Disability Rights and Inclusion in the Response to Covid-19
- UN Inter Agency Standing Committee, COVID-19: focus on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 UNPRPD, ILO and others, Disability inclusive social protection response to COVID-19 crisis
- UN Special Rapporteurs and independent experts, No exceptions with COVID-19: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saving interventions”
-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VID-19: Who is protecting people with disabilities?
- UNFPA, Guidelines for Providing Rights-Based and Gender-Responsive Services to Address Gender-Based Violence and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for Women and Young Persons with Disabilities
- UNICEF, COVID-19: Considerations for Children and Adults with Disabilities

- WHO, Disability consideration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 WHO,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guidance for Long-Term Care Facilities in the context of COVID-19, Interim guidance, 21 March 2020
- WHO, Prevention and control of COVID-19 in prisons and other places of detention

-
- ¹ See <http://www.sanita.sm/on-line/home/bioetica/comitato-sammarinese-di-bioetica/documents-in-english/documento2116023.html>.
- ² See <https://www.hhs.gov/sites/default/files/ocr-bulletin-3-28-20.pdf>.
- ³ See <https://www.khaleejtimes.com/coronavirus-pandemic/combating-coronavirus-uae-launches-home-testing-programme-for-people-of-determination>
- ⁴ See https://www.facebook.com/pg/chrgovph/photos/?tab=album&album_id=2681151298668065&__tn__=-UC-R
- ⁵ See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news/2020/04/background-2020-04-covid-19-disability-advisory-group.html>
- ⁶ Adelina Comas-Herrera and Joseba Zalakain, “Mortality associated with COVID-19 outbreaks in care homes: early international evidence”, International Long term care policy network, 12 April 2020, p 5.
- ⁷ See http://www.health.gov.on.ca/en/pro/programs/publichealth/coronavirus/docs/2019_covid_testing_guidance.pdf
- ⁸ Statement by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people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with recommendations in the context of COVID-19 pandemic, at https://dkmedia.s3.amazonaws.com/AA/AG/chrup-biz/downloads/357738/COVID19-and-persons-with-psychosocial-disabilities-final_version.pdf
- ⁹ 중국에서 발병 초기에 16살짜리 소아마비 환자가 어떠한 도움 없이 가족들이 격리되고 혼자 뒤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 ¹⁰ Paraguay’s Disability Focal Point (SENADIS) launched [its use of social media](#) to provide information in sign language, promoting access by the deaf community.
파라과이의 장애인 집중 요소(SENADIS)는 사회 미디어 사용을 출시하여 수화로 정보를 제공하여 청각장애인들의 접근을 독려하고 있다.
- ¹¹ See SENADIS, Panamá toma medidas para la inclusión de las personas con discapacidad frente al covid-19, 3.1.
- ¹² See <https://www.health.govt.nz/our-work/diseases-and-conditions/covid-19-novel-coronavirus/covid-19-novel-coronavirus-resources/covid-19-novel-coronavirus-new-zealand-sign-language>
- ¹³ See <https://coronavirus.gob.mx>.
- ¹⁴ Argentina, [Decree 297/2020](#), Article 6.5.
- ¹⁵ Such practice is promoted by States, such as Colombia (see <https://www.minsalud.gov.co/sites/rid/Lists/BibliotecaDigital/RIDE/DE/PS/asif13-personas-con-discapacidad.covid-19.pdf>)
- ¹⁶ See SENADIS, *Panamá toma medidas para la inclusión de las personas con discapacidad frente al covid-19*, 3.3.
- ¹⁷ Se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oronavirus outbreak FAQs: what you can and can’t do](#), section 15.
- ¹⁸ See Secrétariat d’Etat auprès du Premier Ministre charg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at <https://handicap.gouv.fr/autisme-et-troubles-du-neuro-developpement/infos-speciales-coronavirus/article/information-covid-19-et-confinement>

¹⁹ See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page 23, indicating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present higher rates of inactivity compared to others: 49% to 20%, respectively.

²⁰ See, UNDESA, *Disability and Development Report*, page 157, Figure II.81, indicating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9% more represented among the self-employed (Data on 19 countries)

²¹ Bulgaria, *State Gazette*, 24 March 2020, Art.12; IMF, Policy responses to COVID-19,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Policy-Responses-to-COVID-19#T>

²² See <https://www.argentina.gob.ar/noticias/bono-extraordinario-para-las-personas-con-discapacidad-que-cobran-pensiones-no>

²³ See <https://informations.handicap.fr/a-prime-solidaire-aah-covid-12818.php>

²⁴ IMF, Policy responses to COVID-19,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Policy-Responses-to-COVID-19#T>

²⁵ See <https://www.benefits.gov/benefit/945>

²⁶ 초등교육의 경우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교육 완수율은 일반사람이 73%인 것에 비하여 56%에 이른다.

²⁷ 유네스코는 학교 폐쇄는 전세계 학생인구의 91%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추정한다.

See https://en.unesco.org/covid19/educationresponse_

²⁸ See USA, Department of Education, *Questions and answers on providing services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outbreak*, March 2020.

²⁹ See

<https://educacion.gob.ec/wp-content/uploads/downloads/2020/03/Anexo-2-RECOMENDACIONES-A-LOS-DOCENTES-PARA-BRINDAR-APOYO-PEDAGÓGICO-A-LOS-ESTUDIANTES-EN-AISLAMIENTO-EN-FUNCIÓN-DE-PREVENIR-POSIBLES-CONTAGIOS-POR-ENFERMEDADES-RESPIRATORIAS.pdf>

³⁰ See United Kingdom,

<https://www.gov.uk/guidance/supporting-your-childrens-education-during-coronavirus-covid-19>.

See also,

<https://www.gov.uk/guidance/help-children-with-send-continue-their-education-during-coronavirus-covid-19>

³¹ World Health Organization, *COVID-19 and violence against women: What the health sector/system can do*, at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331699/WHO-SRH-20.04-eng.pdf>

³² UNDESA, *Disability and Development Report*, pp. 7, 16, 113-115, 249-252, at

<https://social.un.org/publications/UN-Flagship-Report-Disability-Final.pdf>;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72/133, para 35.

³³ Emma Pearce, *Disability Considerations in GBV Programm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t [https://gbvaor.net/sites/default/files/2020-](https://gbvaor.net/sites/default/files/2020-03/Disability%20Considerations%20in%20GBV%20programming%20during%20COVID_Helpdesk.pdf)

[03/Disability%20Considerations%20in%20GBV%20programming%20during%20COVID_Helpdesk.pdf](https://gbvaor.net/sites/default/files/2020-03/Disability%20Considerations%20in%20GBV%20programming%20during%20COVID_Helpdesk.pdf)

³⁴ Peru, Ministerio de Desarrollo e Inclusión Social, *Resolución Viceministerial N° 001-2020-MIDIS/VMPEs*, 24 April 2020, at

<https://www.gob.pe/institucion/midis/normas-legales/484313-001-2020-midis-vmpe>

³⁵ Australia's National sexual assault,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counselling service <https://www.1800respect.org.au/accessibility/> ; UK's Coronavirus (COVID-19): support for victims of domestic abus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onavirus-covid-19-and-domestic-abuse/coronavirus-covid-19-support-for-victims-of-domestic-abuse#disability-specialist-services>

³⁶ Penal Reform International, *Global Prison Trends 2020*, at

<https://cdn.penalreform.org/wp-content/uploads/2020/04/Global-Prison-Trends-2020-Penal-Reform-International.pdf>

³⁷ Guidance: Coronavirus (COVID-19) and prisons, at

<https://www.gov.uk/guidance/coronavirus-covid-19-and-prisons>

³⁸ <https://www.prisonpolicy.org/virus/virusresponse.html>

³⁹ Colombia, Decreto legislativo 546, 14 April 2020, at

<https://dapre.presidencia.gov.co/normativa/normativa/DECRETO%20546%20DEL%2014%20DE%20ABRIL%20DE%202020.pdf>

⁴⁰ Argentina, National Supreme Court of Justice, *Acordada 10/2020*, and complementary regulation, Federal Court of Criminal Appeal, *Acordada 9/2020*, at

<https://cnpt.gob.ar/wp-content/uploads/2020/04/Acordada-9.20-CFCP.pdf>

⁴¹ Brazil, National Justice Council, recommendation 62, 17 March 2020, at

<https://www.cnj.jus.br/wp-content/uploads/2020/03/62-Recomenda%C3%A7%C3%A3o.pdf>.

COVID-19 상황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 지침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 2020. 4. 7.>

개요

현재의 공중보건 위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이미 취약하고 소외된 상황에 있는 사람 및 지역사회에 과도하게 큰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들은 낙인과 차별에 특히 취약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중보건 및 코로나19에 대한 회복 대응의 맥락을 포함하여 법, 정책 및 관행상으로도 권리에 대한 접근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 √ 효과적인 공중보건 및 코로나19 회복 대응을 위해서는 이주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필수 고려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현 위기에 대한 대응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은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외국인 혐오증을 부추기고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막는 유일한 효과적 방법이다.
- √ 국가는 이 위기로 인해 과도한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는 취약한 상황의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연령, 젠더, 장애 및 기타 요인에 세심하게 반응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시설,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이주민들은 종종 언어 및 문화적 장벽, 비용, 정보 부족, 외국인 혐오적 태도 및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등 보건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많은 이주민들이 불규칙한 이민자 신분을 포함한 법, 정책, 행정규제 및 관행으로 인해 보건 서비스 접근에 대한 장벽에 직면한다. 불규칙한 상황에 있는 이주민들은 이민자 신분으로 인한 구금, 추방 및 처벌이 두렵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 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정보 제공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 수 있다.

- √ 국적 또는 이주민 지위와 관계없이 영토 내 또는 국가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건강권을 갖는다. 국가는 국적과 이주민 지위

를 이유로 하는 등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자원 부족은 이주민의 보건 요구를 다르게 취급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 √ 모든 이주민이 이주민 지위와 관계없이 이주의 모든 단계에서 보건시설 및 물품과 서비스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대책을 포함한 입법적, 정책적, 행정적 및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출입국관리 활동과 보건 서비스 제공의 문제를 분리하기 위한 “방화벽” (분리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신 메시지 및 공익캠페인은 불규칙적인 상황의 이주민들이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출입국관리 활동의 처벌 대상이나 표적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 √ 코로나19의 예방,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정보와 감염 확산에 대한 대책은 이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 지원 노력은 이주민, 이주 중인 자의 경우를 포함해 이주민을 상대하는 행위자아 지역사회의 의미 있고 젠더 균형이 잡힌 참여를 통해 정보를 전파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수용시설 또는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거주하는 이주민의 권리

노숙을 하거나 과밀한 보호시설, 비공식 정착촌, 수용소, 빈민가 등에서 살거나 안전하지 않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부적합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이동하거나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위협에 처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노출되는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의 위험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불안이 더해지고 정착촌 및 보호시설 내 직원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중될 수 있다.

- √ 노숙을 하거나 보호시설, 비공식 정착촌, 수용소, 빈민가, 또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보호시설 및 수용소에서의 적절한 예방, 검진, 치료
 - 예방을 위해 과밀 수용소에서 안전한 주택으로 이전

- 보호시설, 수용소 및 공공장소에 물과 위생시설 제공
- 이동 중이거나 노숙하는 이주민이 이주민 지위로 인한 장벽 없이 긴급 보호시설을 계속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주택 및 보호시설 퇴거 연기 및 보호시설과 공공 수용시설에서의 체류 연장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증가하는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폭력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책
- 식량, 물, 위생관리 및 기타 권리를 포함한 모든 필수 서비스의 제공은 출입국관리 활동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및 사회 보호(social protection)에 대한 권리

많은 이주민과 그 가족은 저임금, 임시직, 비공식 부문 노동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직장폐쇄와 같은 봉쇄 조치의 결과로 실직이나 취업비자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도 있다.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및 고용주 가정의 고립으로 인해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도움을 구할 곳도 없이 차별과 심지어는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과 학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 √ 이주민들은 불안정한 근로 환경에 처해있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실직 또는 고용 감소에 의해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주민의 지위와 관계 없이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은 사회적 보호 조치를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받을 권리

이주민 자녀는 학교 또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강제 폐쇄로 인하여 교육을 받는 데 추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주민 자녀가 가정에서 교육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적 또는 기타 지원 체계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 √ 국가는 이주민 자녀에게 원격수업을 제공하고 오프라인 학교수업이 재개되면 이들을 모두 재통합할 수 있는 파트너십 및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등, 이주민 자녀들이 학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금된 이주자의 권리

외국인 보호소, 수용시설 및 이주민들의 자유가 박탈된 기타 장소는 종종 과밀하고 적절한 보건 서비스 및 식량과 물, 위생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될 위험이 크다.

- √ 국가는 외국인 수용시설에 수용된 이주자 및 직원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자 구금의 해제를 시급한 우선과제로 다루고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에 기반을 둔 비구금형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 이주민 구금은 아동에게 결코 최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동과 그 가족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 √ 국가는 외국인보호시설에서 석방된 사람들이 적절한 주택, 식량 및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경 관리에서의 이주민 권리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거나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 √ 입국 시 시행되는 심사 및 격리를 포함한 강화된 국경 통제 및 조치들은 차별 금지, 기밀 유지 및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며 의무적 또는 무기한 구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수색 및 구조 작전은 공중보건상의 우선사항과 양립할 수 있는 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 √ 개별 평가, 최선의 이익 평가 및 결정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보장하고, 국제인권법 및 난민법에 따른 국제적 보호를 보장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주 및 망명 절차는 적법한 절차적 보장을 준수해야 하며, 이주민 신분을 잃게 하는 것과 같이 이주민을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국가는 이주민들의 권리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체류허가 및 취업허가의 정규화와 시의적절한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
- √ 국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강제귀환의 잠정적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강제귀환은 강제송환금지 및 집단추방금지의 원칙과, 적법한 절차, 변호사 및 통번역사에 대한 접근권, 귀환 결정에 항소할 권리를 포함한 절차적 보장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귀환 절차의 모든 단계가 공중보건 전략과 양립 가능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 √ 출신국으로 귀환하는 이주민, 특히 감염률이 높은 나라에서 귀환하는 이주민은 차별 없이 국가 대응, 사회적 보호 및 회복 전략에 포함되어야 하며, 민간 및 공공 영역에서의 낙인 및 배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외국인 혐오 대응

현재의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이 공포와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주민 및 이주와 관련된 소수민족은 그들에게 낙인을 찍고 희생양을 만드는 태도 및 행동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

- √ 정부 당국은 낙인 찍기 및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차별 선동, 증오 및 폭력의 발생을 방지하고, 감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코로나19에 대한 공개 담론 및 대응이 외국인 혐오와 인종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국가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이웃과 가족 간에, 국내 및 국경을 넘어, 그리고 이주 경로와 통로를 따라 연대하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이다.

COVID-19와 여성 인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 2020. 4. 15.>

대응의 핵심에서의 인권



코비드-19
대응

중점 주제
COVID-19와 여성 인권
2020년 4월 15일

코비드-19와 여성 인권: 정책 지침

코비드-19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근 여러 매체¹를 비롯한 OHCHR(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공식 성명,² 인권 운동가들의 보고에 따르면 코비드-19 팬데믹 속에서 외출 금지령 및 기타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가정 폭력의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도움을 요청할 의지를 상실한 상태에 있기 쉬우므로 가해자의 통제력이 한층 더 커졌을 것으로 본다. 집에서 쫓겨나거나,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재정 및 의료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태라는 여성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³

가해자와 함께 격리된 상태여서 이 여성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기는 더욱 어렵다. 일부 상담 센터⁴의 보고에 따르면, 개인적인 전화를 걸기가 어려워 상담 전화 건수는 감소하였지만, 문자와 이메일 상담 건수는 증가했다.

보호소, 의료 서비스, 경찰 및 사법 분야 서비스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다.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보호소가 폐쇄되거나⁵

노숙자 보호소로 전환된다거나,⁶ 긴급 상담 전화 서비스가 축소 운영되고,⁷ 이동 진료소와 상담 서비스가 취소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바이러스 전파 위험도 서비스를 받기 힘든 이유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보호소들은 입소 희망자에게 입소 전 코비드-19 음성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⁸

어떤 희망적인 성공 사례가 있을까?

각국, 언론, OHCHR 현장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성공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젠더 기반 폭력 관련 서비스를 필수 서비스로 선언한다. 스페인⁹과 포르투갈¹⁰은 봉쇄 기간동안에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필수적으로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뉴욕시 역시 보호소를 필수 서비스로 분류하였다.¹¹

가해자와 함께 격리되지 않도록 대체 숙박시설을 확대 가용한다. 이탈리아에서는 기존 시설을 이들 폭력 피해자 보호소로 신규 전환하고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통해 추가 숙소를 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¹²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폭력적인 파트너를 피해 도망친 여성을 위한 호텔방 2만여 개를 지원 해주기로 했다.¹³ 포르투갈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긴급 보호소를 개소했다.¹⁴

당국에 알리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하고 능동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스페인 정부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격리 기간 중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위치파악 기술이 포함된 채팅 서비스를 발표했다.¹⁵ 스페인의 카나리제도¹⁶와 프랑스¹⁷의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약국에 가서 구조를 뜻하는 암호인 “마스크 19”를 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아르헨티나 정부는 폭력 피해 여성이 약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빨간색 수술용 마스크를 달라고 하여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볼리비아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포르투갈 당국은 긴급 직통 상담 전화 서비스를 확대해, SMS 및 이메일 주소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서비스에 원격 상담, 감독과 긴

급대응팀 확대 등을 추가한 비상 계획을 시행했다.¹⁸ **블리비아**에서는 왓츠앱(Whatsapp)을 통한 신고가 가능해 피해자 위치 파악이 용이하다. **인도**의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 주 경찰은 가정 폭력 상담 신고 전화를 신설하고 여성 경찰관이 각 사건을 담당할 것을 보장하기로 했다.¹⁹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에서는 경찰이 선제적 개입 정책인,²⁰ 구조 작전(Operation Faoisimh)을 펼쳐 가정 폭력 관련 신고 전력이 있는 모든 피해자에게 사전 연락을 해서 시민 단체의 성원을 받았다.²¹ **우루과이** 대법원은 젠더기반폭력 특별법정에서 예방조치를 60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합의했다.

피해자에게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린다. 중국의 비영리단체는 자신을 보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발간했다. 한 기구는 가정 폭력 목격자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했다.²² OHCHR 현장 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여성부(INAMU)**는 #NoEstásSola (“넌 혼자가 아니야”)라 명명한 돌봄 및 보호 서비스에 관해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우루과이**에서는 젠더 기반 폭력 사례 신고 전화번호를 헬리콥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레바논** 국제 보안군은 폭력 피해자나 목격자가 24시간 상담 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²³ **모로코** 정부 및 시민단체는 “8350”에 전화하거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든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포르투갈**에서는 소셜 미디어, 라디오, TV를 통해 #SegurançaEmIsolamento²⁴ (“격리 중 안전한”)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해당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있다. **스페인**은 “Estamos Contigo: La Violencia de Género la Paramos Unidad” (“우리가 함께 있어요, 뭉쳐야 젠더 기반 폭력이 사라질 수 있어요”) 캠페인을 시작했다.²⁵ 온라인 팸플릿을 통해, 피해자들은 24시간 상담 전화 및 이메일 주소와 같은 일반 서비스 정보와, 왓츠앱 이용 등으로 가능한 심리지원, 52개 언어 지원 및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법률 서비스와 같은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팸플릿은 가해자와 동거하는 여성, 가해자의 아이를 키우는 여성, 심지어 애완동물을 두고 떠나야 하는 여성에게 맞춤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²⁶

국가와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는 무엇일까?

- 1)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 대상 보호 구조 및 서비스를 필수 서비스로 선언한다.
- 2) 수용 가능한 보호 시설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도록 상담 의뢰 경로를 업데이트하고, 주요 커뮤니티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업데이트된 경로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한다.²⁷
- 3)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전문가들은 각별히 주의해서 의뢰 경로에 대해 보고 받아야 한다. 가정 폭력 신고용 암호 메시지를 설정해야 한다.
- 4) 가정 폭력 피해자와 자녀를 위한 충분하고 안전한 보호소를 보장한다. 감염 가능성 때문에 보호소에 입소할 수 없는 여성과 여아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안전하게 격리하도록 해야 한다.
- 5) 원격으로도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직통 상담 전화, 온라인 채팅, 기타 다양한 지원 및 신고 도구를 적절히 활용한다.
- 6) 접근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가정폭력이 예견되는 경우 잠재적 피해자가 미리 도움을 받는 법,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목격자의 대응법에 관한 인식을 높인다. 가정 내 학대자를 퇴거시키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보장해야 한다. 가해자 출소를 고려할 때,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를 위협하게 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한다.
- 7) 폭력을 신고하거나 피하려고 봉쇄 조치를 어길 때는 처벌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 8) 생존자에 대한 의료, 심리사회적, 경제적 지원의 지속과 성폭력, 특히 부부 강간 등 강간 피해자의 안전한 치료 관리를 보장한다.
- 9) 여성단체, LGBTI+단체, 보호 쉼터 및 상담 전화 관리자와 협의하여 폭력의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는 여성과 소녀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성과 소녀들은 남성에 비해 감염 위험에 더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개인 보호 장비를 더욱 필요로 하므로 불균형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다. 여성과 소녀들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된다.²⁸ 의료 종사자의 70%가 여성이며,²⁹ 조산사, 간호사, 약사, 지역사회 의료 종사자로 방역의 최전선에 있다.³⁰ 최전선에 있는 여성 의료 종사자들은 생리 위생, 학대 및 낙인찍기로부터 보호, 심리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³¹ 임신 했거나 갓 출산한 여성,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감염병에 매우 취약할 수 있고,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는 의료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확률이 높다.

기존에도 존재하던 의료서비스 진입 장벽이 공중보건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더욱 악화됨에 따라 안전하고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때의 장벽이란 사회적 규범, 성차별, 범죄화(낙태, 동성간 성 행위, 성노동, HIV 전염 등), 이동 제한, 소득 부족, 제 3자 승인의 필요, 보육 옵션의 부족 등을 뜻한다.³² 또한 문화적, 종교적 금지 사항 및 가족의 명예 훼손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여성이나 소녀들의 치료를 막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의료 체계의 과부하, 자원 재배치, 의료 장비 부족,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여성 및 소녀들의 성 건강, 생식 건강과 권리를 저해할 수 있다. 임신 및 출산 관리, 낙태 관리, 생식 건강과 관리에 관한 정보 및 교육, 효과적인 의뢰 경로,³³ 생리 보건 제품, 피임, HIV/AIDS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성병 치료용 항생제 이용 가능성이 이에 해당한다. 서아프리카 에볼라 위기 상황 동안, 대응으로 노선을 선회하면서 성과 생식 건강 관련 자원이 축소되어 출산 중 사망률과 질병률이 상승했다.³⁴ 코로나-19에 대처하면서 낙태를 연기 가능한 “비필수적인 수술 및 의학적 절차”에 포함한 국가도 있다고 한다.³⁵

대다수가 여성인 이주 가사 노동자는 특히 이동 제한 및 자가 격리가 시행되면서 위협해질 수 있다.³⁶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더 심각한 상황이다.³⁷ 고용

인들은 이들 가사 노동자들에게 쇼핑, 심부름 등과 같은 자택 외부에서의 일을 시켜 이들의 감염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만성 질환이나 면역 체계 약화(HIV, 말라리아, 결핵 등으로)를 겪거나 영양실조에 걸린 여성이나 소녀들은 코비드-19에 감염될 위험이 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여성 노인은 연금 수령액이 없거나 낮고 빈곤한 생활을 할 확률이 더 높아, 평생에 걸친 불평등과 차별의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결국 바이러스의 영향을 악화하며 보호 도구, 음식, 깨끗한 물, 정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한다.

어떤 희망적인 성공 사례가 있을까?

국가, 언론, OHCHR 현장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성공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위험에 빠진 여성을 예방과 보호의 최우선순위로 한다. 아랍에미리트는 코비드-19 검사를 5분만에 끝낼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검사 센터를 개소했으며, 임산부 및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검사 우선권을 주고 있다. **바레인**에서는 여성 최고 위원회에서 “바레인의 안전을 위해 함께해요” 라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5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건강 및 경제적 상태에 집중하여 바레인의 여성 및 가정을 지원하였다.³⁸

성, 생식 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영국 정부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가정에서 낙태약 복용으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³⁹ 프랑스 정부는 처방전 갱신을 못했더라도 피임약을 계속 배달해주도록 했다.⁴⁰ 네덜란드에서는 조산사 팀을 조직해서 전염병 대유행 중에 영업을 중단한 호텔에 장비를 설치하고 산부인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⁴¹ 이 시책에 고무되어, 영국의 조산사 연합 네트워크에서는⁴² 병원 근처에 임시 출산 센터를 마련할 것을⁴³ 권고했다. 미국의 “더 위대한 뉴욕의 계획된 부모되기” (Planned Parenthood of Greater New York)에서는 원격 의료 서비스(Telehealth Services)를 개시해 화상이나 전화로 환자들이 산아 제한, 긴급 피임, 성전환(trans)/제3의 성(non-binary) 호르몬 요법, 성병 치료 등과 같은 다양한 성, 생식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⁴

국가와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는 무엇일까?

- 1) 여성 의료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생리 위생 제품,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한다.
- 2) 모든 여성, 남성, 여아, 남아, LGBTI가 차별 없이 의료적 치료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아야 한다. 취약한 상태의 여성, 여성 이민자, 가사 노동자, 여성 노인, 장애 여성, 임신부와 수유부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3) 성, 생식 보건 서비스를 지속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출산 및 신생아 관리, 안전한 낙태와 낙태 후 관리, 피임기구, HIV/AIDS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성병 치료를 위한 항생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⁴⁵
- 4) 공중 보건 서비스를 갖춰야 한다. 특히 격리 지역, 자가 격리 중, 이동이 어려운 곳에 있는 여성과 여아가 시의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모성 보건 위협을 최소화해야 한다.
- 5) 여성이 대다수인 모든 의료 종사자들의 중요성, 연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홍보한다.
- 6) 생리 위생, 산과, 생식, 기타 주요 건강관리 물품이 잘 비축되고 사용 가능한지 확인한다.
- 7) 식량 불안으로 인해 여성과 소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코비드-19 대응 과정에서 악화할 수 있어 여성과 소녀들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 8) 코비드-19 관련 연구(영향, 증상, 치료, 백신)에서 최소 성별, 연령별, 인종별, 임신 여부로 발병 관련 데이터를 세분화하고, 임상 실험에서 종종 간과되는 여성의 건강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는 노동, 소득, 생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많은 국가에서 여성은 업무가 중단되기 쉬운 저임금, 비공식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⁴⁶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접객업(호텔, 식당), 소매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 또한 높다.^{47 48} 비공식 일자리 부문에 여성이 집중되면서 유급 병가 또는 가족 돌봄 휴가를 받지 못하고, 의료 보험이나 사회 보장 제도 혜택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⁴⁹ 그리고 이 여성들의 생계 수단이 위협받고 있다.⁵⁰

학교 및 보육 시설의 폐쇄로 여성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남성과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영향을 준다. 여성들은 차별적인 성 관념 때문에 종종 육아 책임을 더 많이 지도록 기대되고, 나아가 직업이나 경제적 기회의 제한을 받는다.⁵¹ 지카(zika) 바이러스 사태처럼 과거의 보건 긴급상황에서는 여성의 무급 노동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⁵²

당국과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있다. 성별 정보 격차는 여성의 원격 근무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스마트폰 소지자 중 여성의 수는 남성보다 3억 2천 7백만 명이 적고,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의 인터넷 이용률이 남성보다 31%나 낮았다.⁵³

바이러스 확산 우려와 외국인 혐오증 때문에 이주 여성의 노동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생계 지원 및 그들과 가족을 위한 사회적 보호가 차단될 수 있다.⁵⁴

여성의 소득 상실은 가족의 안녕에 영향을 주는데,⁵⁵ 특히 그들이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일 때 여파가 더 크다.⁵⁶

어떤 희망적인 성공 사례가 있을까?

각국, 언론, OHCHR 현장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성공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경제적 유인책과 구제책을 적용한다. **코스타리카** 당국은 실업률을 제한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대출금과 청년, 여성, 노인, 토착민, 아프리카 후손, 농민, 이민자, 장애인 등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의 사업 프로젝트의 금리를 모두 인하했다. 추가로, 임산부 또는 수유부들은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해고를 피할 수 있도록 채택된 근로 시간 단축법(제 9832호)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인도**에서는 국가 봉쇄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빈곤층에게 경제적 구제책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미망인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⁵⁷ 그러나 봉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없애기에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한다,⁵⁸ **마다가스카르**는 노점상, 세탁부, 성 노동자 등이 수혜자인 사회 비상 계획(Social Emergency Plan)을 시행하고 있다. **니카라과**에서는 4개의 시민 노조, 기업, 정부가 합동으로 **코비드-19**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3자 노동협정을 채택했다. 협정의 한 조항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임산부, 만성 질환자들은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약 57달러 상당의 식료품 바구니(Canasta Familiar)를 (여러 집단 중에) 저소득층 가정의 어머니들에게 나눠주고 있으며, 초등학교 자녀를 둔 저소득층에는 80달러 상당의 재정 지원(Bono Familia)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특별 휴가 허가를 승인하여 임산부나 5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등 특정 부류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속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육아 해결책 홍보. **코스타리카**에서는 수업은 중단되었으나, 여성 가장 등 취약 계층이 계속 출근하고, 자녀들은 급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탁아소와 구내식당은 운영 중이다.

국가와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는 무엇일까?

- 1) 모든 부모와 보호자가 동등한 돌봄 책임을 지고, 유연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촉진한다.
- 2) 경제적 유인책과 사회 안전망의 성 민감성을 높이고 모든 여성과 여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며 그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한다. 이는 현금 지급 프로그램, 가족 돌봄 휴가 정책, 실업 급여, 부분 실업/단기 근로 수당, 연금 또는 아동 수당 및 남성과 여성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인도주의적 현금 배부와 같은 제도의 신설 또는 확대를 포함한다.

코로나-19는 여성이 깨끗한 물을 얻고 위생서비스를 받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방 조치 및 감염 위험에 대한 접근. 모든 사람이 물, 비누, 소독제와 같은 예방 조치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소외 계층 및 취약 계층의 여성과 소녀들은 위생 시설을 이용하거나 위생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 위험이 커진다. 많은 가정에서 여성과 소녀들은 가족이 먹을 음식과 물을 가지러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젠더 기반 폭력뿐 아니라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에서 여성들은 급수장에 일찍 가서 늦게까지 줄을 서기 때문에 여성의 안전이 더욱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통해 여성과 소녀들이 부족한 위생 자원 때문에 일어나는 가정 내 경쟁 심화 또는 가계 소득 감소로 인해 위생 서비스를 받고 위생용품을 구할 때 높은 장벽에 직면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⁶⁰ 인도주의 개발기구들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더 위중한 분야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재원을 전환하게 되어 여성과 여아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생리용품, 비누, 정수 알약 등 위생용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⁶¹

어떤 희망적인 성공 사례가 있을까?

각국, 언론, OHCHR 현장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성공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여성에게 위생 수칙 인식 제고를 위한 대리인의 권한을 부여한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콕스 바자르 난민캠프의 여성들의 주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손 씻기와 개인 위생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가족들에게 전파하고 있다.⁶³

물 부족 지역에 안전한 물을 공급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전국에 배부할 수 있는 41,000개의 물탱크를 확보했으며, 외딴 지역이나 임시 거주지 등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코비드-19 확산 방지를 위한 위생 수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⁶⁴

요금미납으로 인한 단수조치를 일시 해제하고, 수도물 재공급 조치를 한다. 미국의 수많은 도시와 주에서는 수도 차단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차단된 가정에 다시 수도를 연결했다.⁶⁴

국가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는 무엇일까?

- 1) 코비드-19의 예방책으로 사용되는 물, 비누, 소독제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위생, 위생용품, 위생 시설 이용 시 여성과 소녀들이 맞닥뜨리는 특정한 장벽과 위험을 낮춘다.
- 2) 특히 개발 및 인도주의적 환경에서 여성과 소녀들에게 필요한 생리 위생용품, 비누, 정수 알약 등을 지속해서 공급한다.

코비드-19는 소녀들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 세계적인 학교 휴교령에 따라 여성과 소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유네스코의 예측에 따르면, 코비드-19의 여파로 세계 교육기관에 등록된 총 인구의 89%에 달하는 학생이 현재 미등교중이다. 학교나 대학에 등록된 학생 수는 15억 4천만 명이며, 이 중 여학생은 7억 4천 3백만 명이다. 이 여학생 중 1억 천백만 명이 최빈개발도상국에 거주한다.⁶⁵ 과거의 공중보건 비상사태(에볼라나 지카 바이러스)의 경험상 이러한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학교가 다시 열리더라도) 집안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먼저 학교를 떠난다. 휴교가 되면, 인도주의 개발 환경에 있거나 빈곤층 가정의 여학생들은 학교가 제공해주던 안전한 환경, 균형 잡힌 식사, 성별 맞춤형 서비스 등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공중 보건 긴급 상황의 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여학생들은 학교를 떠나 아동 노동, 아동 결혼, 조혼, 강제 결혼을 하게 되기도 한다.⁶⁶

사회적 보호 제도가 제한적인 곳에서는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닥쳤을

때 딸의 교육에 들어가는 재정 및 기회비용을 따지게 되어, 소녀들의 교육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다.

국가와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는 무엇일까?

- 1) 학교가 다시 개교하면 여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보장하는 조치를 포함해, 모든 여학생의 지속적인 교육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해야 한다.
- 2) 여학생이 학교를 그만둘 때, 영양가 있는 음식과 성별에 특화된 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젠더 기반 폭력 및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3) 휴교 및 경험, 교육 접근법, 필요사항 등 원격 수업에 관련된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여학생들도 남학생과 동등하고 의미 있게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 4) 여학생들이 집안일에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될 것이라 예상되는바, 교직원과 협력하여 유연한 학습 일정이나 구조를 제시하는 등 기술을 많이 요하지 않고, 성별 맞춤형인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여학생들의 원격 수업 참여율을 높이고, 여학생들의 참여를 관찰하며 촉진한다.
- 5) 수업 접속 및 교육 보장 등을 포함한 주요 기능이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여성과 여학생의 디지털 성 격차를 해소한다.

코로나-19와 여성의 식량 접근성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기존의 성 불평등 때문에, 여성과 여아는 식량 수급에 있어서 불안정을 겪을 수 있다. 특정 문화권에서는 여성이 가장 나중에, 가장 적게 먹는 사회적 관념이 있다. 따라서, 남성과 남아보다 영양 결핍의 가능성이 크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진다.⁶⁷

무료 급식은 성 평등을 진전시키는 데 강력한 효과를 가져왔다.⁶⁸ 그러므로 휴교와 그에 따른 무료 급식 프로그램 중단은 성 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와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는 무엇일까?

- 1) 현금 지원은 물론 현물 지급을 통해 기본 물품, 서비스, 식량 안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학교가 휴교 중인 곳에서 급식과 같은 배식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특히 여성 노인을 포함한 노령층, 자가 격리자, 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지역 거주자에게 개인별로 음식과 기본 물품을 배달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에 여성의 참여가 왜 중요한가?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여아, 여성 네트워크와 인권 기구는 동등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목소리, 전문성, 경험이 글로벌 보건 보안 감시, 탐지, 및 예방 체제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⁷⁰ 보고에 따르면,⁷¹ 코로나-19 발생 관련 언론 보도에서 남성 3명이 인용될 동안 단 1명의 여성만 인용되고 있다.

이전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돌이켜보면, 여성 참여도의 차이 때문에 특정한 경험, 상황, 도전 및 요구 사항에 대응할 때 그에 상응하는 격차가 발생했다. 전 세계의 사례를 살펴봐도 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성은 의료 종사자의 70%를 차지하며, 지역사회와 돌봄노동의 최전선에 있다. 따라서 여성은 지역 차원에서 발병 추이와 반응을 식별할 수 있고, 예방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의 설계와 구현에 효과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⁷²

이동 제한을 위해 국가가 적용한 긴급 및 기타 보안 조치로 여성 인권운동가 등이 활동할 수 있는 시민 공간이 영향을 받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긴급 조치가 시행될 때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페미니스트와 양성평등 운동의 공간에 관해서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 덧붙여 여성조직이나 양성 평등 플뿌리 단체 등이 해외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지원 우선순위 변동으로 필수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와 언론 보도를 통해 다양한 여성 및 여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와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는 무엇일까?

- 1) 재원 및 지원 배분뿐 아니라 준비성, 대응, 회복에 관련한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인 코비드-19 정책 공간과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이 완전하고 유의미하게 참여해야 하며, 대표성, 리더십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코비드-19 관련 언론 보도에 여성과 여성의 전문성이 더 많이 언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특히 풀뿌리 수준에서 여성 및 LGBTI 인권 증진을 위해 힘쓰는 이들이, 코비드-19 로 인한 우선 순위 변동으로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책의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 3) 양성평등을 논의의 중심에 계속 두고, 여성 인권운동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개적으로 지원하며, 긴급 보안 및 기타 조치가 여성 운동가를 공격하고 발언을 막거나 나아가 활동 공간을 축소하는 구실이 되지 않도록 한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가?

성별, 인종, 연령로 구분된 발병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요구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바이러스가 성별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증거에 기반한 젠더 분석을 문서화 하여, 그에 대응하도록 적용된 조치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⁷³ 이러한 자료와 연구는 전염병 대응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다른 상황 및 미래에 닥칠 수 있는 공중보건 긴급 사태에 대한 준비성을 갖추고 대응 계획을 알리는데 필수적이다. 좋은 예로, 유엔인구기금(UNFPA)은 몰도바에 의료 체계 온라인 계기판을 설치하여 지역, 성, 연령, 임신 여부에 따라 현 담당 건수를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다.⁷⁴

1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mar/28/lockdowns-world-rise-domestic-violence>

2 <https://france3-regions.francetvinfo.fr/normandie/confinement-violences-conjugales-appellez-faites-du-bruit-1807532.html>

3 <https://time.com/5803887/coronavirus-domestic-violence-victims/>

4 <https://www.swissinfo.ch/fre/crise-du-coronavirus-victimes-confins-C3%A9es-avec-leur-agresseur-le-cauchemar-/4564634>,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mar/28/lockdowns-world-rise-domestic-violence>

5 <https://www.nytimes.com/2020/03/24/us/coronavirus-lockdown-domestic-violence.html>

6 <http://www.sddirect.org.uk/media/1881/vawg-helpdesk-284-covid-19-and-vawg.pdf>

7 <https://france3-regions.francetvinfo.fr/normandie/confinement-violences-conjugales-appellez-faites-du-bruit-1807532.html>

8 <https://www.swissinfo.ch/eng/reuters/europe-braces-for-domestic-abuse-perfect-storm-amid-coronavirus-lockdown/45646312>

9 2020년 3월 29일 왕실법령 10/2020,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s://elpais.com/espana/2020-03-28/el-gobierno-amplia-el-confinamiento-los-trabajadores-de-actividades-noesenciales-deberan-quedarse-en-casa.html>

10 2020년 4월 6일, 포르투갈 영구 사절단으로부터의 편지

11 <https://www.nytimes.com/2020/03/24/us/coronavirus-lockdown-domestic-violence.html>

12 <https://www.swissinfo.ch/eng/reuters/europe-braces-for-domestic-abuse-perfect-storm--amid-coronavirus-lockdown/45646312>

13 <https://france3-regions.francetvinfo.fr/normandie/confinement-violences-conjugales-appellez-faites-du-bruit-1807532.html>

14 2020년 4월 6일, 포르투갈 영구 사절단으로부터의 편지

15 <https://www.swissinfo.ch/eng/reuters/europe-braces-for-domestic-abuse-perfect-storm-amid-coronavirus-lockdown/45646312>

16 <https://www.swissinfo.ch/eng/reuters/europe-braces-for-domestic-abuse-perfect-storm-amid-coronavirus-lockdown/45646312>

17 <https://france3-regions.francetvinfo.fr/normandie/confinement-violences-conjugales-appellez-faites-du-bruit-1807532.html>

18 2020년 4월 6일, 포르투갈 영구 사절단으로부터의 편지

19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mar/28/lockdowns-world-rise-domestic-violence>

20 <https://www.rte.ie/news/ireland/2020/04/01/1127724-gardai-domestic-violence-cases/>

21 <https://www.safereiland.ie/safe-ireland-welcomes-garda-prioritisation-of-domestic-abuse-and-coercive-control/>

22 <https://www.sixthtone.com/news/1005253/domestic-violence-cases-surge-during-covid-19-epidemic>

23 <http://www.ministryinfo.gov.lb/46902>

24 2020년 4월 6일, 포르투갈 영구 사절단으로부터의 편지

25 <http://www.violenciagenero.igualdad.gob.es/sensibilizacionConcienciacion/campañas/violenciaGobierno/todoSaldráBien/home.htm>

26 2020년 4월 6일, 포르투갈 영구 사절단으로부터의 편지

27 UNFPA에서 보기, https://www.unfpa.org/sites/default/files/resource-pdf/COVID-19_A_Gender_Lens_Guidance_Note.pdf, 2쪽

28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746&LangID=E>

29 그들은 또한 3조달러를 세계 보건 의료에 매년 기부하겠다고 했으며, 그 중 절반은 무급 돌봄 업무의 형태를 띤다. 다음 참조,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19\)30208-9/fulltext](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19)30208-9/fulltext)

30 보건 인적 자원(HRH) 글로벌 자원 센터, "자원 소프트웨어: 센터 및 의료 종사자 통계," 2020년 3월 14일 접속,
https://www.hrhresourcecenter.org/gender_stats.html;

다음도 참조,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or/why-gender-matters-impact-and-recovery-covid-19>.

31 <https://www2.unwomen.org/-/media/field%20office%20easia/docs/publications/2020/03/ap-giha-wg-advocacy.pdf?la=en&vs=2145>.

32 다음 참조, 예를 들면,
https://www.care.org/sites/default/files/gendered_implications_of_covid-19_-_full_paper.pdf?mc_cid=89788b752d&mc_eid=b6f3e4b34a, 3쪽.

33 다음 참조, 예를 들면, https://www.unfpa.org/sites/default/files/resource-pdf/COVID-19_A_Gender_Lens_Guidance_Note.pdf, 2쪽;
https://www.care.org/sites/default/files/gendered_implications_of_covid-19_-_full_paper.pdf?mc_cid=89788b752d&mc_eid=b6f3e4b34a;
<https://www.hrw.org/news/2020/03/19/human-rights-dimensions-covid-19-response>;
<https://blogs.bmj.com/bmj/2020/03/19/covid-19-and-reproductive-health-what-can-we-learn-from-previous-epidemics/>;
<https://www.guttmacher.org/article/2020/03/covid-19-outbreak-potential-fallout-sexual-and-reproductive-health-and-rights>

34 다음 참조, 예를 들면,
<https://www.ncbi.nlm.nih.gov/pubmed/29149310>

35 <https://www.haaretz.com/israel-news/premium-women-s-groups-in-israel-sound-alarm-after-abortions-not-deemed-urgent-procedure-1.8702732>;

<https://time.com/5816530/coronavirus-abortion-clinics-access/>

36 https://www.unfpa.org/sites/default/files/resource-pdf/COVID-19_A_Gender_Lens_Guidance_Note.pdf, 7쪽.

37 <https://www.aljazeera.com/news/2020/03/undocumented-struggle-access-coronavirus-tests-lebanon-200328114859620.html>;

38 <https://www.newsofbahrain.com/bahrain/62814.html>

39 <https://time.com/5812433/abortion-coronavirus-outbreak-uk/>;
<https://www.bbc.com/news/newsbeat-52092131>

40 www.egalite-femmes-hommes.gouv.fr/cp-confinement-et-delivrance-de-la-pilule-contraceptive/;
www.egalite-femmes-hommes.gouv.fr/cp-pilule-contraceptive-ivg-le-gouvernement-mobilise-pour-assurer-les-droits-sexuels-et-reproductifs-des-femmes-23-03-20/

41 다음 비디오는 베른호벤의 호텔 객실이 어떻게 분반실로 바뀌었는지 보여준다. <https://www.facebook.com/nos/videos/2592352494339076/>

42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apr/01/nhs-urged-to-turn-hotels-into-birth-centres-during-coronavirus-crisis>

43 <http://www.midwiferyunitnetwork.org/download/position-statement-midwifery-units-and-covid-19/>

44 <https://www.plannedparenthood.org/planned-parenthood-greater-new-york/about/news/planned-parenthood-of-greater-new-york-launches-telehealth-services-amid-the-covid-19-pandemic>

45 CESCER 일반 주석 22에서 평가할 수 없는 핵심 의무 참조.

46 예를 들어, 미국의 최저임금 및 저임금 노동자의 62%가 여성이며, 이것은 여성이 대부분인 무급 노동 비율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이다.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4/05/05/more-women-than-men-earn-the-federal-minimum-wage/>

47 <https://www.hrw.org/news/2020/03/19/human-rights-dimensions-covid-19-response>;
https://www.bbc.co.uk/news/world-asia-51705199?_twitter_impression=true.

48 다음 참조, 예를 들면, <https://www.fastcompany.com/90479204/why-women-will-be-hardest-hit-by-a-coronavirus-driven-recession>

49 보도에 따르면, 우간다 노동자의 80%가 비공식 경제 활동에 속해 있으며, 그 중 75%는 여성이다.

50 예를 들어, 우리는 동아프리카 많은 국가에서 봉쇄조치로 인해 노점상들이 생계를 잃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여성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51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20\)30526-2/fulltext](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20)30526-2/fulltext)

52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or/why-gender-matters-impact-and-recovery-covid-19>.

53 <https://www.hrw.org/news/2020/03/19/human-rights-dimensions-covid-19-response>

54 https://www.care-international.org/files/files/Gendered_Implications_of_COVID-19-Full_Paper.pdf

55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70% 이상이 경제적 행복을 위해 여성의 소득에 의존한다. 여성이 소득을 잃으면 음식, 주거, 의료, 육아에 지출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다음 참조, <https://www.fastcompany.com/90479204/why-women-will-be-hardest-hit-by-a-coronavirus-driven-recession>

56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성인권운동가에 따르면 여성의 35%가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다. 현재의 실업률 증가 상황에서, 식량 안보가 위협되고 검사 또는 치료를 위한 의료 시설 방문을 포함해서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저해될 것이다.

57 <https://www.indiatoday.in/business/story/finance-minister-nirmala-sitharaman-live-updates-economic-relief-package-india-coronavirus-1659912-2020-03-26>

58 <https://www.npr.org/sections/goatsandsoda/2020/03/31/822642382/coronavirus-lockdown-sends-migrant-workers-on-a-long-and-risky-trip-home>

59 https://www.social-protection.org/gimi/gess/RessourcePDF.action?id=56006_60

60 https://www.care.org/sites/default/files/gendered_implications_of_covid-19_-_full_paper.pdf?mc_cid=89788b752d&mc_eid=b6f3e4b34a, 1쪽

61 https://www.care.org/sites/default/files/gendered_implications_of_covid-19_-_full_paper.pdf?mc_cid=89788b752d&mc_eid=b6f3e4b34a.

62 <https://news.trust.org/item/2020031121342-ncyuh/>

63 <https://www.sabcnews.com/sabcnews/government-secures-41-000-water-tankers-in-bid-to-curb-spread-of-covid-19/>

64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r/16/90-us-cities-and-states-suspend-water-shutoffs-to-tackle-coronavirus-pandemic>

65 <https://en.unesco.org/news/covid-19-school-closures-around-world-will-hit-girls-hardest>

66 https://www.care.org/sites/default/files/gendered_implications_of_covid-19_-_full_paper.pdf?mc_cid=89788b752d&mc_eid=b6f3e4b34a, 4쪽

67 https://www.care.org/sites/default/files/gendered_implications_of_covid-19_-_full_paper.pdf?mc_cid=89788b752d&mc_eid=b6f3e4b34a, 7쪽

68 <https://docs.wfp.org/api/documents/WFP-0000102338/download/>

69 <https://www.social-protection.org/gimi/gess/RessourcePDF.action?id=56006>

70 https://www.unfpa.org/sites/default/files/resource-pdf/COVID-19_A_Gender_Lens_Guidance_Note.pdf, 6쪽;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20\)30526-2/fulltext](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20)30526-2/fulltext). 인도주의적 환경에서의 상황 참조,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2020-03/IASC%20Interim%20Guidance%20on%20COVID19%20for%20Outbreak%20Readiness%20and%20Response%20Operations%20-%20Camps%20and%20Camp-like%20Settings.pdf>; 4쪽
71 다음 참조 <https://www.womeningh.org/operation-50-50>;
<https://genderchampions.com/news/covid-19-what-does-this-mean-for-gender>
72 UNFPA도 참조, https://www.unfpa.org/sites/default/files/resource-pdf/COVID-19_A_Gender_Lens_Guidance_Note.pdf, 3쪽
73 여기에 제시된 요청도 참조: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20\)30526-2/fulltext](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20)30526-2/fulltext),
여기도 볼 것: https://www.care.org/sites/default/files/gendered_implications_of_covid-19_-_full_paper.pdf?mc_cid=89788b752d&mc_eid=b6f3e4b34a, 8쪽
74 <https://www.unfpa.org/press/women-girls-health-workers-must-not-be-overlooked-global-covid-19-response>

COVID-19와 자유박탈 상황 아동인권 지침

< 유니세프-인도적 지원에서 아동보호 연합 공동, 2020. 4. 8.>

기술 문서: 코비드-19 와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

개요

과거 전염병 발병의 경험은 코비드-19 확산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대책 뿐 아니라 코비드-19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새로운 아동 보호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 아동보호 리스크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본 문서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일부 계층은 이러한 환경에서 더욱 취약하다. 예를 들어, 자유를 박탈당한 어린이들은 사회심리, 신체, 정신 건강 문제를 포기하고 혼잡하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생활하고, 학대와 방치에 더욱 취약하다.

이전 전염병 발병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각국이 대응책을 고안하고 실행할 때 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소요사항을 해소하지 못하거나 이를 반영한 대책 실행을 미룬다면 고통은 배가되고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회복이 더디게 될 것이다.

코비드-19 세계적 대유행병에 대처함에 있어, 각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들의 인권이 완전히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충분한 보살핌과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해당 아동들이 감금되어 있는 모든 시설의 초과 수용 인원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비구금형의, 가족 또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과 행동 방안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어야 한다는 원리를 기반으로 실행되어야 하고 어린이의 생명, 생존, 성장의 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문서의 목적은 구금 집행 당국에게 코비드-19 대응에 핵심 정보와 절차를 제공한다.

1. 아동 구금시설의 신규 수감 유예를 제도화
2. 안전하게 석방될 수 있는 모든 아동 석방
3. 수감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모든 아동의 건강과 복지 수호

I.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의 권리를 수호하는 방법과 코비드-19 발병 기간동안 아동 수감자 수 증가를 예방하는 방법 이해

유엔 아동 권리 협약(CRC)은 위급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환경에서도 모든 아동들에게 적용된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명의 아동들이 구금되어 자유가 박탈되고 있다. 누구든지 코비드-19에 감염될 수 있지만,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구금되어 있거나 이민자 수용시설, 국가 보안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아이들을 포함하여 감금 시설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들은 해당 전염병에 감염되고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높다. 바이러스와 사회적 여파를 통제하기 위해 실행된 대책들은 구금 기간 동안 충분한 보살핌과 가족이나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아동들의 복지 및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CRC) 제 24조에 따르면, 아동의 건강권은 가장 기준이 높다.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들이 살고 있는 곳이 한정된 환경이기 때문에 코비드-19 감염에 더 취약하다. 자유의 박탈로 인해 특히 수감자들로 붐비고 깨끗하지 않은 시설일 경우, 그리고 보안 또는 기반 시설 구조때문에 물, 위생 용품 및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일 경우 자가 격리 또는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실현하기는 더욱 어렵다.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들은 다른 인구계층 보다 일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인구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아동들은 사회 심리, 신체적, 정신 건강 문제를 기본적으로 경험하고 있거나 수감 생활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위급상황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양질의 의료 서비스의 부재에 직면해 왔다. 수감된 아동들은 종종 영양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정신 건강과 사회 심리적 지원, 사회 및 교육 서비스를 포함한 양질의 서비스의 접근이 불충분하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구금 시설은 시설 내외적으로 코비드-19의 감염원과 확산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금 시설은 아동들을 바이러스 감염에 심각한 위협에 노출시킬 뿐 아니라 해당시설의 종사자들(경찰, 교도관, 아이 돌보미, 사회봉사자, 및 의료인 등), 그들의 가족 및 지역사회를 위협에 빠뜨린다. 시설 종사자들은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시설내 질병이 발병한 곳에서 두려움을 경험할 뿐 아니라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여러 나라에서, 코비드 -19는 아동들이 자유를 박탈하는 시설 뿐 아니라 감옥, 교도소, 및 이민자 감금 시설까지도 강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대응책으로 아동 수감자 수를 줄이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많은 경우, 구금시설은 아동의 가족, 가정, 지역 사회로부터 동떨어져 있고 정기적인 소통이 제한적인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이러한 아동들과 가족들까지 건강과 복지(정신적, 사회심리적 복지 포함)에 영향을 끼치며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구금 시설내에서 발병된다면 아동들도 낙인 찍히게 되고 잠재적으로 그들을 더욱 소외시킨 상태로 남겨 두게 될 것이다. 또한, 직원이 아프게 되면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들의 돌봄과 보호를 위해 허용되는 수준 이하로 직원 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감독과 돌봄의 부재하여 폭력, 학대 및 방치와 같이 아동들의 잠재적인 취약성이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으며 통제와 감독 이 더 쉬운 비좁은 공간에 아동들을 구금할 가능성이 더 크다.

코비드-19확산을 중지하려는 대책으로 일부 국가들은 실제로 아동 수감자 수를 늘리고 구금시설의 혼잡 완화를 위한 특별 사면 또는 일반 석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 석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즉, 아동 송환 중단이나 구금에 대체적인 방안인 비구금형으로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폐쇄, 형사 재판 또는 행정 청문회 중단, 이동의 자유 제한, 수감된 아동의 가족이나 변호와의 접근 제한, 국경 폐쇄, 또는 구류 전 구금 사용의 확대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II. 코비드-19 발병 기간 동안 자유 박탈의 활용 및 긴급 대책에 관한 권고 사항

2.1 긴급 대응책 시행의 핵심 고려 사항

구금형에 처한 아동을 위해 국가의 코비드-19 퇴치 대응책은 공중 보건 목표에 기반한 긴급 대응을 포함하고 이는 국제 인권법과 기준을 엄격히 고수해야 한다. 모든 대응은 균형적이고, 필수적이고, 기간 제한이 있으며 검토 가능하고, 리스크 평가에 차별성이 없어야 하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 각 국은 어떤 권리는 경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아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등, 아동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긴급 대응책을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 각 국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성적 취향 또는 성적 정체성에 기반하여 차별 대우를 받는 아동, 장애 아동, 이민자/망명 희망자/난민/국적이 없는 아동, 토착민, 소수 민족 아동, 노숙 환경의 아동, 무장 단체와 무장 군 또는 기타 다른 취약하거나 소외 계층과 관련한 아동들과 같이 이들의 특유의 취약함을 해결해야 한다.
- 각 국은 바이러스 예방, 억제 및 대응을 위해 채택된 비상 대책이 석방될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구금하거나 자유가 박탈된 아동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2 아동을 위한 정의에 관한 국제 인권법 및 기준 준수

각 국은 아동을 위한 정의에 대한 국제 인권법과 기준을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

- 일반적으로 구속, 감금 및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최대한 단기로 사용해야 한다.
- 아동과 부모의 이민자 지위 때문에 아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신속히 그리고 완전하게 근절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절대 아동의 최대 이익이 될 수 없고 법과, 정책 그리고 관습에 있어 아동 이민자 구금을 금지해야 한다.
-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들에 대해 인도주의적 대우를 하고 한 인간으로서 내재된 존엄성을 존중하며 정당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와 절차적

보장을 수호한다. 코비드-19의 현황에서 특히 구금의 극단성, 아동의 취약성,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검사 및 판사를 포함한 공권력은 구금력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지금 아동과 그들의 가족 보호와 더불어 대체방안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장려되어야 한다.

- 모든 어린이들이 연락망을 통해 가족과 정기적인 연락과 방문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실행한다.
-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이들이 특별 법률 및 다른 적합한 지원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자유 박탈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법정 또는 권한이 있고 독립되며 공정한 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고 해당 조치를 신속히 결정한다.
- 아동이 석방될 수 없거나 대체적인 방안이 불가능한 곳은 아이들의 구금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유지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최소한의 관련 국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아동 인력 비율을 고려하여 아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3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각 국은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실행해야 한다.

- 각 국은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와 지역 사회에서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각 국은 아동이 수감되어 있는 곳에 코비드-19를 해결함에 있어 성인지 접근법을 보장하는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히 모유 수유 중인 엄마와 함께 구금된 아기와 어린이의 특수 요구를 제공한다.
- 각 국은 구금중인 어린이에게 세계적 대유행병에 관하여 지역사회 아동에게 제공하는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 가능하고 아동 친화적인 정보를 보장하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각 국은 특유의 상황으로 인해 코비드-19 확산을 중단하는 조치를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거리 생활을 하는 아동들을 구급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우 아동들은 국가 아동 보호 당국 또는 민간 서비스와 연결되어야 한다.

2.3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각 국은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실행해야 한다.

- 각 국은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와 지역 사회에서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각 국은 아동이 수감되어 있는 곳에 코비드-19를 해결함에 있어 성인지 접근법을 보장하는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히 모유 수유 중인 엄마와 함께 구급된 아기와 어린이의 특수 요구를 제공한다.
- 각 국은 구급중인 어린이에게 세계적 대유행병에 관하여 지역사회 아동에게 제공하는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 가능하고 아동 친화적인 정보를 보장하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각 국은 특유의 상황으로 인해 코비드-19 확산을 중단하는 조치를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거리 생활을 하는 아동들을 구급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우 아동들은 국가 아동 보호 당국 또는 민간 서비스와 연결되어야 한다.

III. 코비드-19 기간 동안 석방 촉구, 대체적 방안 활용, 신규 아동 구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권고 사항

국제 인권 법의 아동 정의 및 자유를 박탈 당한 아동에 대한 의무에 따라, WHO 감옥과 구급시설 내 코비드-19 예방과 통제에 관한 임시 지침 (WHO 코비드-19 구급 지침), IASC 코비드-19 임시 지침: 자유를 박탈 당한 이들에 대한 집중 조명(IASC 임시 지침), 인도주의적 행위의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 에 의거하여 각 국은 아동들을 정식 사법 절차로부터 전환하고 형사 또는 행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구금에 대체 방안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3.1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아동을 우선시

각 국은 가족이나 지역사회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아동을 즉각적으로 석방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취하기에 안전한 곳이고 구금 중 질병 위험이 높고 해당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과 같이 아동의 이익을 최선으로 고려하여 각 국은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을 가족과, 대가족의 구성원, 다른 가족의 돌봄, 지역 사회 또는 적합한 의료 서비스 시설로의 석방을 우선시해야 한다.

- 비 폭력적, 경범죄로 인해 형사 절차를 밟고 있어 함께 자유를 박탈당한 양육자와 모든 아동들 그리고 석방이 임박 하거나 형기가 거의 끝나가는 아동들
-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사전 재판 구금되어 있는 아동들
- 비행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들(성인이 저질렀다면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행위)
- 신체적으로 기존 신체 및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이들을 포함하여 감염 때문에 합병증 위험이 높은 모든 아동들
- 비 폭력적, 경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석방이 임박하거나 형기가 거의 끝나가는 모든 아동들
- 이민자 구금 시설 에 있는 모든 아동들
- 무장 단체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보안법 하에 구금된 모든 아동들
- 석방이 실행 가능하고 안전한 것으로 결정된 모든 다른 아동들

상기 기준과 상황의 위급함을 기반으로 대거 석방 실현을 고려해야 한다.

각 국은 가족구성원과 양육자를 지지하고 연락을 취하여 그들의 최선의 이익에 의거하면서 사례관리절차를 사용하여 석방된 후에 아동들이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재통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필요한 여행 당국, 가족과 아동들을 의료 서비스 연결(코비드 -19를 위한 조치 등),정신 건강 및 사회 심리적 서비스(클리닉 서비스) , 폭력 방지 및 대응 서비스(성별 기반 폭력 대응 포함), 교육 서비스 및 다른 기회들이 해당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주요 사법 집행자들이 자유 박탈을 예방하고 구금 아동을 석방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경찰, 출입국 수감시설, 국경 경비, 다른 법 집행 관료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통금/이동 제한 위반과 같은 억제 대책을 포함한 벌금형 철폐, 아동을 대상으로 기소, 체포 및 구금 줄이기
- 어린이와 상호 작용할 때 아동 친화적이고 성인지가 높은 기술을 적용
- 최초 접촉 이후 아동을 최대한 조기에 정식 사법 제도로부터 전환하고 사법 절차 전반에 있어 여러 단계에서도 전환
- 아동의 보호관찰 및 감독 소요조건을 검토(특히 개인적인 방문)하여 적법한 곳에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실현한다. (예를 들어 미팅이나 감독을 위해 기술 사용)
- 이민법 집행 노력은 모든 이주자, 망명자 그리고 난민 어린이들을 식별하여 적법한 보호, 아동 보호 및 의료 서비스 관료에게 즉시 인계한다.

검사, 피고측 변호인, 소송 지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옹호한다.

- 모든 구금 시설에 아이들을 즉각 또는 조기 석방(권고 사항에 따라)
- 첫번째 접견 이후 그리고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여러 단계에서 아동들은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정식 사법 제도로부터 전환하기
- 구금 대체 방안 및 전환 프로그램(적합하다면) 비 구금 조치 사용을 우선시하기
- 사면, 특별사면 또는 일반적인 대거 석방 명령 발행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 아동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타협하지 않는 선택적 양식을 실행함으로써 공공/직접 청문회를 줄인다.
- 구금형의 건강 측면의 결과를 고려한다.
- 아동들의 모든 구금형 판결 사용을 제한하거나 최소화한다. (공판 전후)
- 아동의 사법제도로부터의 전환
- 구금형의 대안 및 전환 프로그램(적법할 경우)비구금형 조치의 사용을 확대하기
- 사면, 특별 사면, 또는 일반적인 대거 석방 명령 발행하기

석방 과정에서 정부는 WHO 코비드 19 구금 관련 지침 및 바이러스에 대한 적절한 예방, 통제, 관리, 치료를 위한 국제 회계 기준 위원회(IASC)의 임시 지침에 기술된 권고 사항을 따른다.

3.2 구금 시설에 신규 아동의 입소 방지

각 국은 모든 적법한 절차를 취하여 구금장소로의 아동의 신규 입소를 방지해야 한다.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 체포하기, 하룻밤 동안의 구금과 신규 아동들이 구금시설에 새롭게 입소하는 것에 즉각적인 유예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관할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유 박탈로 인한 입소가 개인의 상황 하에서 합법적이고, 필요하고 균등한지 결정한다. 각국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아이들(함께 구금되었을 시 양육자)을 검사하고 WHO가 발행한 공공 보건 프로토콜과 일치하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
- 아동의 물리적 거리두기, 고립 또는 격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장되는 곳에서 구금 시설이 아니라 집 또는 의료 시설에서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3.3 구금되어 있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보호하기

각 국은 구금시설에 남아 있는 아동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대유행병 기간동안 즉각적으로 석방되지 않고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들은 코비드-19 관련 필요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여 그들의 지속적인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당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해당 질병의 증상이 있는지 아동의 건강을 모니터 하고 WHO의 건강 모니터, 방어 및 치료 지침과 일치하는 증상을 보일 경우 적절한 치료와 방어책을 취한다.
- 임상 결론의 결과와 법 또는 규정의 허용 하에 오직 의료적 필요성에 기반하여 아동의 의료적 격리를 결정한다.
- 해당 아동과 다른 아동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거리두기와 격

리가 필요하다면 의료적인 이유로 격리 조치가 된 아동에게 격리 이유를 설명 해줘야 한다. 그리고 집 또는 의료 시설 격리는 WHO 지침과 일치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을 독방에 수감해서는 안된다. 이는 국제법 하에 금지되어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도 해당된다.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격리는 사실상 독방 수감 또는 체벌로써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 아이들에게 충분한 건강, 영양, 교육,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폭력(성별을 근거로 하는 폭력)을 해결할 서비스와 물리적 거리두기 또는 질병 통제 대책의 필요에 적용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물, 위생 시설, 위생 서비스와 물품, 특히 비누와 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청소 도구를 시설에 제공하여 감염 확산을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동과 양육자에게 맞춤형, 성인지도가 높고 나이에 적합한 정신 건강 및 사회심리적 지원 서비스(MHPSS)를 제공한다. 이는 기존의 정신건강과 사회심리적 문제와 코비드-19에 대해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포함한다.
- 자유를 박탈당한 아이들이 보호자나 가족들과 정기적인 접근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절차를 실행한다. 예는 다음과 같다.
 - 시설 직원은 (전화 또는 컴퓨터로) 가족에게 아동의 위치, 건강, 복지 관하여 그리고 아동에게는 가족에 관한 소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그 횟수를 늘리도록 지시한다.
 - WHO 코비드 19 구금 지침 에 의거하여 아동들이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방문 시간을 연장하고 물리적 거리 두기를 위해 자리를 엇갈리게 배치한 상태에서 방문하게 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직접 방문을 허용한다.
 - 아동과 가족의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모바일 및 디지털 자원 과 관련된 비용을 면제해준다.
 - 부모와 가족이 아동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특별 여행 면제권 발행 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 아동이 구금되어 있는 시설내 가용한 직원과 서비스 제공 업체의 수를 모니터 하고 조절해야 한다. 이는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과 보호를 제공할 충분한 직원수를 유지하고 직원과 서비스 업체가 질병에 노출 또는 감염되

있거나 병에 걸렸을 경우 시설 유지 보수 및 청소와 관련하여 아동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런 상황이 아닐 경우 아동들은 이런 임무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각 국은 구금 시설 직원의 보호 및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WHO 코비드-19 구금 지침을 참고한다. (예를 들어, 자기 관리 성향, 직원의 정신 건강과 사회 심리 복지를 위한 직원 관리 지원 및 서비스와 같은 정신 건강 및 사회심리적 지원 서비스가 있다.)

3.4 폭력, 학대, 착취로부터 아동 보호

각국은 아동의 권리를 수호하고 폭력, 학대,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당국은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질병 또는 억제책에 의해 더욱 악화되거나 부수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폭력, 학대, 방치 및 착취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코비드-19 세계적 대유행병과 구금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행하고 대응할 것을 보장하는 포괄적으로 조율된 계획을 개발한다. 이는 아동 정의와 사회 서비스를 필수로 지정하고 해당 서비스의 지속성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법부, 보안당국, 내무부, 이민당국, 금융당국, 보건 당국, 사회복지부, 교육부와 사회 및 보건 대책(정신건강 및 사회 심리적 치료), 자원, 법률적 및 기타 지원에 대한 권한이 있는 관련 부서들과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락에 대해서 공조하고 협조해야 한다.
- 아동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여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 개발 과정에 아동을 참여시킨다.
- 아동 보호 정책, 절차, 및 이의신청 메커니즘을 제정 및 실행한다. 이는 폭력, 학대, 착취 예방을 포함한다.
- 아동과 그들의 법적 대리인과의 정기적인 접근과 연락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방문 시간을 늘리고 물리적 거리두기 확대를 위해 방문 시 자리를 엇갈리게 배치하여 방문하고 기술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반면 상호작용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한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모바일/디지털 기계 사용은 무료여야 한다.

- 정당한 과정 및 절차적 보증을 지지한다. 예를 들어, 코비드-19 위급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관련 재판 또는 행정 청문회, 공판 전 구금 기간 과 석방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기술 솔루션 및 융통성 있는 업무 배치로 비상시 재판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
- 독립적인 국제 및 국내 인권, 보건 및 아동 보호 단체가 아동이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곳에 대해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감염이 있을 수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아동들이 고립되어 있을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IV. 출처

IASC 코비드 -19관련 임시 지침서: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에 대한 집중 조명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과 코비드-19에 대한 운영 지침
교도소와 구금 시설에 대한 코비드-19 예방과 통제 WHO 임시 지침	WHO 코비드 -19 구금 지침
유엔 인권 사무소(OHCHR) 코비드 -19 와 인권	유엔 인권사무소(OHCHR) 코비드-19 지침
고문 및 기타 잔인한, 비인간적 또는 모멸적인 대우 또는 처벌 예방에 관한 유엔 분과위원회	각 나라의 고문 예방 분과위원회와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병 관련 국가 예방 메커니즘의 조언 (편집 전 사전 버전)(2020년 3월 25일 채택됨)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형벌 개혁 국제 브리핑	다른 국가들의 리스크와 관행을 포함한 브리핑 노트
ILF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병: 수감자의 건강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원조 제공자에 대한 지침	법률 원조 제공자가 코비드 -19 세계적 대유행병을 해결하고 구금된 사람들의 영향의 심각성을 제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방침
TDH 구금된 아동 석방 가속화	19 코비드-19의 결과로 아동 석방과 관련된 지침을 포함한 성명
아동 보호 책임 분야 및 코비드-19에 대한 아동 보호 자원 메뉴	코비드-19 대응책 관련 아동 보호 자원 전집
코비드-19에 대한 인도주의적 행동 방침 자원을 위한 연맹	코비드-19 관련 자원 모음집

<p>학교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코비드-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주요 메시지 및 행동 방침</p>	<p>코비드-19로부터 아동 및 학교 보호 <u>운영 방침</u></p>
<p>응급 상황 시 교육기관과 네트워크(INEE)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코비드-19) 자원 페이지</p>	<p>긴급 자원의 코비드-19 및 교육 <u>전집</u></p>
<p>코비드-19의 MHPSS 관점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정신건강과 정신 사회 지원(MHPSS) 참조 그룹의 브리핑 노트</p>	<p>2019년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코비드-19) 발병의 MHPSS관점에 대한 <u>브리핑 노트</u></p>
<p>성차별에 기반한 폭력(GBV)의 위험의 통합적 완화책 및 대응 방안</p>	<p>GBV 리스크 완화/자원 전집 <u>포함 문서</u></p>

COVID-19와 노인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

<유엔 사무총장실, 2020. 5. 1.>

개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의 노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 4월 26일 현재, 코로나-19은 이미 약 193,710명의 생명을 앗아갔고,²³⁾ 80세 이상의 치사율은 전 세계 사망자 평균의 다섯 배에 달한다.²⁴⁾ 개발도상국에서는 더 급격히 확산하면서 보건 의료 및 사회 보호 체계에 압박을 가해, 노인 사망률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아직 가시적이지 않지만 우려되는 점은 코로나-19가 끼칠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영향들이다.

- : 코로나-19과 무관한 질환에도 치료 거부
- : 보호 및 요양 시설에서 방치와 학대
- : 빈곤과 실업의 증가
- : 행복과 정신 건강에 끼치는 극적인 영향
- : 낙인과 차별의 트라우마

따라서 우리는, 많은 사회적 변수를 고려하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노인들은 놀라운 회복탄력성과 적극성을 지니고 있고, 간병인, 자원 봉사자, 지역사회 리더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 노년층이라는 큰 틀 안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²⁵⁾ 예를

23)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situation-reports/20200426-sitrep-97-covid-19.pdf?sfvrsn=d1c3e800_6

24) COVID-19 전략 업데이트, 2020년 4월 14일. 세계보건기구(WHO)
<https://www.who.int/publications-detail/covid-19-strategy-update---14-april-2020>

25) 노인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 많은 유엔 기구에서는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칭한다. 이 문제는 현재 티치펠드 그룹에서 노화 관련 통계 및 연령 분리 데이터에 관해 논의되고 있다.
https://cmmid.github.io/topics/covid19/Global_risk_factors.html

들어, 노인과 그 노인을 돌보는 유급 및 무급 간병인 모두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위기 대응 시 의료진과 간병인을 포함해서 노인들은 중요한 공헌을 한다. 그러므로 국가, 기업, 국제기구, 지역사회, 가족과 친구 모두 노년층을 지원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들의 권리와 존엄성은 항상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 전반에 걸쳐 코비드-19는 노년층에 특정한 위험을 초래한다.

▶ **생과 사:** 전 연령층이 코비드-19에 감염될 위험이 있지만, 고령층은 감염에 따른 사망률 및 중증 질환 발병 소지가 높아서, 80세 이상의 사망률은 전 연령 평균의 다섯 배에 달한다. 70세 이상 인구의 약 66%는 기저질환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이므로 코비드-19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²⁶⁾ 또한 치료 대상자 선별 과정에서 노인은 나이로 인한 차별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코비드-19 이전에도 전 세계적인 불평등의 심화로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절반가량의 노인이 주요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²⁷⁾ 코비드-19는 이 전염병과는 무관한 주요 의료서비스의 규모도 축소시켜 노인층의 삶을 더욱 위협할 것이다.

▶ **취약점 및 방치:** 또 다른 취약성에 노출된 노인층도 있다. 요양 시설에서 코비드-19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입소자들이 방치 또는 학대를 받으며 생존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가족이나 간병인으로부터 격리 또는 봉쇄된 노인들은 폭력과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난민 수용소, 임시 거주지, 교도소와 같은 불안정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은 더욱 위험한 상태다. 인도적 지원이나 도움을 받는데 잠재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시설들은 인구밀도가 높은 반면, 적절한 의료 서비스 수혜가 어려우며 깨끗한 물과 위생 시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인은 동시에 전염병에 대응하고 있는 간병인이기도 하여,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더욱 높다. 특히 의료 체계와 장기 요양 시설이 취약한 현 상황에서 노인을 돌보는 동시에, 본인도 노인인 재가 간병인(대부분 여성)들이 처한 위험은 더 크다.

26) https://cmmid.github.io/topics/covid19/Global_risk_factors.html

27) 세계 보건 기구(2015) 노화와 건강에 관한 세계 보고서
<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186463>

▶ **사회경제적 웰빙:** 바이러스는 노인들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사회 연결망, 의료 서비스에의 접근, 직업, 연금까지 위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았던 노인들(가령 남성보다 혼자 살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80세 이상 여성)은 신체접촉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막대한 영향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격리 상태가 길어지면 디지털 소외 계층인 노인들의 정신 건강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전 세계 노동 인구 중 노인 비율이 지난 30년간 10%가량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소득 감소 및 실업률 증가의 영향도 클 것이다.²⁸⁾ 사회적 보호 제도로 안전망은 제공할 수 있으나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보장 정도의 차이가 커서 은퇴 연령 노인의 20% 미만이 연금을 수령한다.

본 정책 개요는 이러한 영향들을 자세히 파악하고 아래의 4가지 최우선 조치에 필요한 장단기적 정책과 계획적 대응책을 확인해 보겠다.

1.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려운 의료 결정을 할 때 존엄성과 의료권에 충실히 따르도록 보장한다.** 보건 의료는 기본 인권이며,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나이 차별과 같은 보건 의료 제한이나 요양 기관에서의 방치, 학대, 폭력과 같은 문제는 적절히 감시되고 완전히 해결되어야 한다.

2.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사회적 포용과 연대를 강화한다.** 이동 제한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과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매우 중요하긴 하나 디지털 기술 교육 강화와 같은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 조치 및 표적 맞춤형 서비스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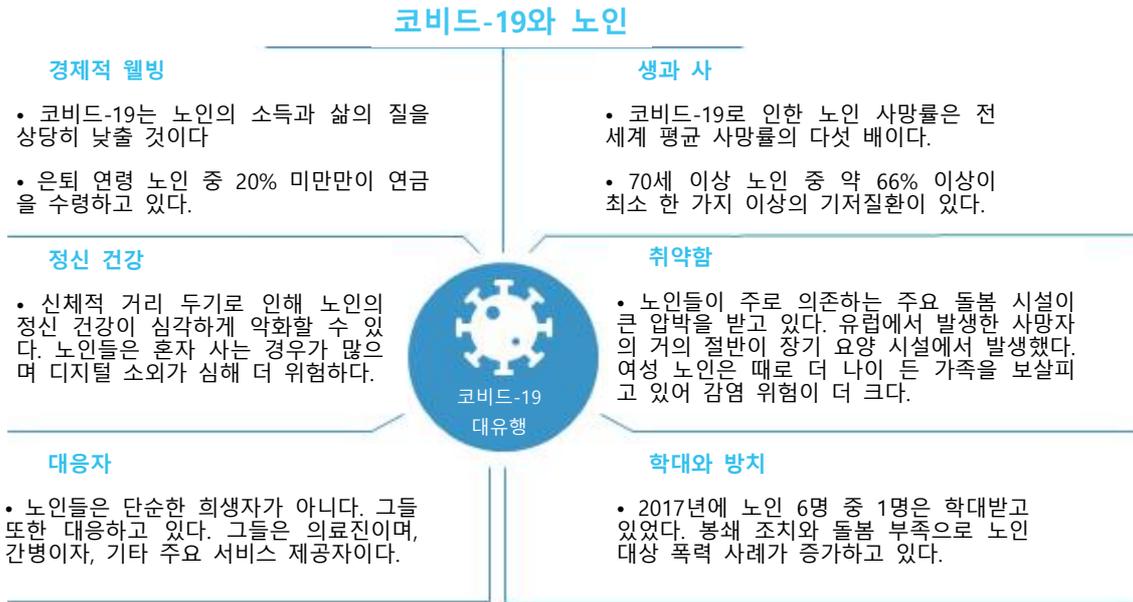
3. **노인 문제에 대한 관점을 사회경제적, 인도적인 코비드-19 대응책과 완전히 통합한다.** 코비드-19가 위기 및 회복 단계 모두에서 노인에게 미치는 참혹한 사회적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 전염병 대유행이 사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한 개발도상국과 인도적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유엔의 지원 요구에 부응하려면 더 긴급하고 야심 찬 대응책이 필요하다. 게다가 만약 우리가 보편적 의료 보장 및 사회적 보호 제도에 투자하고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 및 국제적인 법적 틀을 강화해서 회복력을 증진하고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돌봄, 지원, 기회를 보장하려면 이 위기 상황에서 노인들만 뒤처지고 취약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28) 국제노동기구(ILO) 직업 통계 집중 조명, 2018년 5월
https://www.ilo.org/stat/Publications/WCMS_629567/lang--en/index.htm

4. 정책수립에 노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지식 및 데이터를 활용한다. 민간과 협력한 노인자문회의 등을 통해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기획단계부터 노년 층의 지식을 활용하고 완전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령차별과 오명 등의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해야 한다. 코비드-19가 초래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노인들이 공공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공공 정책 수립에 있어서 연령별, 성별, 사회경제적 특징별로 분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때 노년층 또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코비드-19는 전 세계에서 격변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 공경의 가치가 뿌리 깊은 것은 부모와 멘토를 향한 감사의 마음, 그들이 겪은 경험의 지혜에 두는 가치, 사회에 이바지한 뜻깊은 공헌 때문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으로 적절한 기획과 투자 및 배려하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 노인에게 미치는 코비드-19의 영향



1. 보건의료, 인권,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평균연령은 51세였으나(그림 2) 80세 이상 노인의 치사율은 세계 평균의 다섯 배에 달한다.²⁹⁾ 유럽의 코로나-19 사망자의 95% 이상은 60세 이상이었다.³⁰⁾ 미국에서는 사망자의 80%가 65세 이상이었다.³¹⁾ 중국에서는 사망자의 대략 80%가 60세 이상이었다.³²⁾ 이러한 현실적인 통계는 노인들이 직간접적인 일련의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 의료 접근성: 코로나-19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의 확산으로 노인들은 진료나 치료를 받기 어려워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의료 체계가 취약하거나 의료 비용이 막대하여 수백만 명의 인구, 특히 빈곤층이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봉쇄조치가 시행되고, 모든 의료 자원이 코로나-19에 집중되면서, 노년층은 소외되어 코로나-19 감염 확률을 높이는 기존 기저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기 어렵다. 노동력 부족으로 돌봄 제공에도 지장이 생겨 그에 따른 직접적 영향으로 노인들의 고립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장애 또는 만성 질환이 있는 노인들의 경우 보건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의료 환경의 가장자리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현재 이러한 코로나-19 대유행 중에 관계자들은 병원과 의료 시설이 과부하되어 부족한 의료 관련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권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환자의 나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 평균수명, 생존 가능성, 치매 여부 등 특정 질병의 영향에 관한 일반화된 가정에 따라 산소호흡기와 같은 희소한 의료 자원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부상자 분류 규약에 의료적 결정을 내릴 때는 의료적 필요성, 윤리적 기준,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은 의료적 치료를 동의, 거절, 철회하거나 사전에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노인들은 의료적 치료에 동의할 기회를 못 얻거나, 치료 전 “심폐소생술 거부” 서명 요구를 받는 등 미리 의료적 치료를 거부하도록 압력을 받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29) COVID-19 전략 업데이트, 2020년 4월 14일. 세계보건기구(WHO)
<https://www.who.int/publications-detail/covid-19-strategy-update---14-april-2020>

30) <http://www.euro.who.int/en/health-topics/health-emergencies/coronavirus-covid-19/statements/statement-older-people-are-at-highest-risk-from-covid-19,-but-all-must-act-to-prevent-community-spr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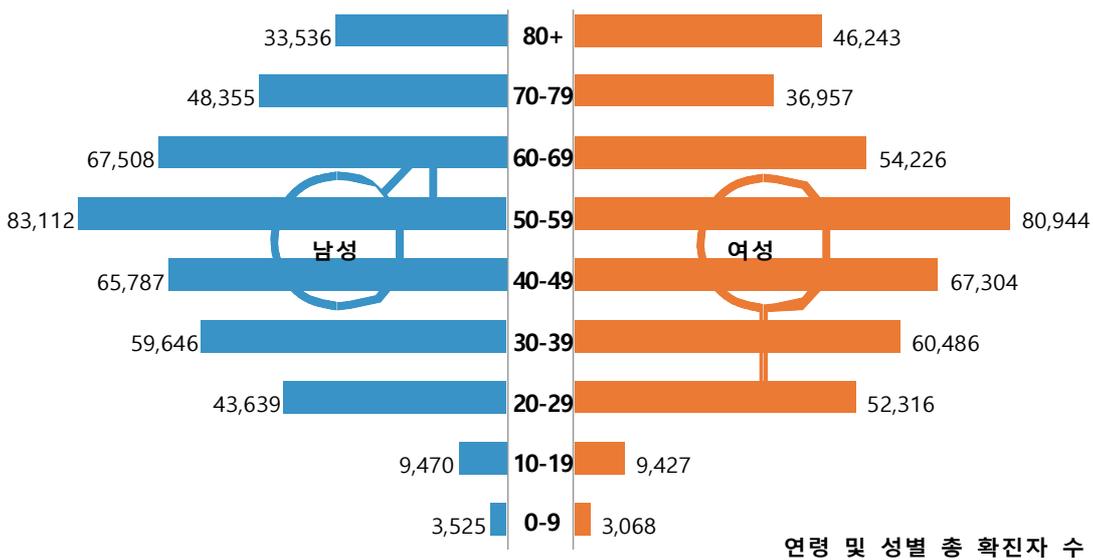
31) https://www.cdc.gov/mmwr/volumes/69/wr/mm6912e2.htm?s_cid=mm6912e2_w

32) <https://www.ncbi.nlm.nih.gov/pubmed/32064853>

더욱이 코비드-19와 무관한 의료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 노인은 완화 치료, 재활, 기타 돌봄과 같은 통합 보건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노인들이 직면한 높은 감염 위험과 의료 자원 부족 현상을 고려할 때 완화 치료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품위 있고 고통 없이 죽을 권리가 있다.

돌봄 및 지원 접근성: 많은 노인들은 주기적으로 약을 처방받아야 하고 활동 보조를 필요로 하는 만성 질환이 있거나 영양사의 정기 자택 방문 및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하다.³³⁾ 코비드-19 확산 이전에도 노인 돌봄 서비스는 구조가 취약했고 사회적인 불평등으로 가득했었다. 그러나 이조차도 코비드-19 확산 제한 조치로 인해 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어 다수의 노인이 필수 돌봄 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 노인층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노인 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장기 돌봄 역시 더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림 2: 연령별, 성별 코비드-19 확진자 분포



1 2020년 4월 20일 기준. 이 데이터는 113개 국가, 영토 및 지역에서 신고된 750,000건의 사례를 기반으로 함.

출처: WHO 현재까지 확진자 기반 감시 시스템

코비드-19 확산 이후 특히 장기 요양 시설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마드리드 당국은 3월 한 달 동안 이 지역에서 코비드-19 확진

33) https://cmmid.github.io/topics/covid19/Global_risk_factors.html;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ageing-and-health>

판정을 받았거나 연관 증상이 있었던 요양 시설 입소자 4,260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³⁴⁾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한 다른 지역에서도 상황은 암울하다. 프랑스에서는 거의 7,500명이 요양원에서 사망하여 전체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의 1/3가량을 차지했고,³⁵⁾ 미국에서도 코비드-19로 인한 사망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7,000명 이상) 요양원에서 사망했다.³⁶⁾ 의료 자원이 더 부족한 환경에 있는 노인의 상황은 달라서, 비좁은 곳에 밀집해 사는 노인들은 위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간병인, 의료인, 자원봉사자: 노인들은 사회에서 간병인, 자원봉사자, 지역 사회 리더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코비드-19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책 지침 보고서에서 기술되었듯이,³⁷⁾ 여성 노인은 나이 든 친척이나 어린이를 돌본다. 코비드-19 위기 와중, 각국은 은퇴한 의료진에게 과부화된 의료 기관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³⁸⁾ 고령 의료진들의 건강이 유지되고, 의료 기관 내 감염 위험이 최소화 되어야 이들의 헌신이 이어질 것이다. 장기 요양 보호 시설에 근무하는 의료 노동자 중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저임금을 받는 노령층의 여성이다. 그들은 보통 이민자로 본인과 돌봄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개인 보호 장비가 미지급 된다면 이들 또한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 있는 것이다.³⁹⁾

폭력, 방치, 학대: 코비드-19 대유행 이전의 데이터에 따르면 노인 학대는 증가 추세로 2017년에는 노인 6명 중 1명이 학대를 당했다.⁴⁰⁾ 코비드-19 발생으로 파트너에 의한 여성 대상 폭력 사례가 늘었다. 이는 봉쇄 조치로 더욱 악화하고 있다. 연령별로 구분된 데이터가 없더라도, 노인, 특히 여성 노인의 요구사항과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 노인들은 매일 생존을 위해 가족에게 기대고 있으며, 학대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⁴¹⁾ 이동 제한 조치 이후

34) https://english.elpais.com/spanish_news/2020-04-08/coronavirus-deaths-in-madrid-could-be-3000-above-official-figures.html

35) <https://dashboard.covid19.data.gouv.fr/>

36) <https://www.nytimes.com/2020/04/17/us/coronavirus-nursing-homes.html>

37) https://www.un.org/sites/un2.un.org/files/policy_brief_on_covid_impact_on_women_9_april_2020.pdf;
<https://www.helpage.org/resources/ageing-in-the-21st-century-a-celebration-and-a-challenge/>

38) Spain, <https://www.nytimes.com/2020/03/24/world/europe/coronavirus-europe-covid-19.html>
 United Kingdom, <https://www.bma.org.uk/advice-and-support/covid-19/practical-guidance/covid-19-retired-doctors-returning-to-work>

39) 세계 여성 발전: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가족
<https://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rogress-of-the-worlds-women>

40) <https://www.who.int/en/news-room/detail/14-06-2017-abuse-of-older-people-on-the-rise-1-in-6-affected>

41) 유엔 여성 2020 개요: 코비드-19와 여성과 여자아이 대상 폭력 종식
<https://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20/04/issue-brief-covid-19-and-ending-violence-against-women-and-girls>

노인 대상 폭력 및 방치, 신체적, 감정적, 재정적, 성적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코비드-19의 확산으로 많은 노령 피해자가 공공 의료서비스와 돌봄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긴급 상황: 인도적 환경에서는 의료 보건, 물, 위생 시설이 제한되며 캠프 및 캠프 유사 환경에서 밀집된 인구가 거주함에 따라 코비드-19 대유행 상황에서 특히 노인들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노인 난민, 이민자, 이재민이 직면한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비상 계획 및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며, 급성 치료 능력이 더 뛰어난 국립 의료원으로 환자 수용을 확대하는 등 치료 및 돌봄의 기회를 제공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구류시설: 교도소나 기타 구류시설에서는 신체적 거리 두기 시행이 어렵다. 의료 서비스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노인들이 코비드-19에 감염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완화하기 위해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수감자들을 석방하거나 대안 교정 시설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해결책/제언

- 코비드-19 감염 위험이 큰 모든 노인,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혼자 거주하는 노인을 가능한 한 빨리 찾아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개별화된 임상 판단, 의료적 필요, 윤리적 기준, 최선의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서 의료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장기 요양 시설이나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포함해 폐쇄된 환경에 있는 취약 계층 검사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⁴²⁾
-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무급 요양 보호사와 재가 및 요양 시설의 유급 요양 보호사를 지원하면서 정신 건강 서비스, 완화 치료, 노인병 치료와 같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해야 한다.
- 요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코비드-19 확진자와 사망자를 알리고 재택 간호 시설에 대한 감독을 개선해야 한다.

42) COVID-19 전략 업데이트, 2020년 4월 14일. 세계보건기구(WHO)
<https://www.who.int/publications-detail/covid-19-strategy-update---14-april-2020>

- 노인, 특히 여성 노인을 가정 폭력과 방치와 같은 어떠한 종류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 재택 간호 시설, 병원, 호스피스의 방문객 정책과 가족과 타인의 보호와 가족과 연계의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 노인 난민, 이민자, 이재민이 직면한 위험을 해결하고 의료적 치료 및 돌봄에 접근할 수 있는 비상 계획 및 전략을 세워야 한다.

2. 신체적 거리두기와 낙인찍기의 영향

신체적 거리두기의 영향: 코비드-19의 감염 위험으로 외출 제한, 격리, 봉쇄 조치처럼 이동 및 접촉을 제한함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적 배제 현상이 심해졌다. 전체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조치이긴 하나,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증대와 건강 악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노인이 처한 현실 요인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만약 거리 두기 조치가 연장되고 대면 사회적 상호작용 또는 기타 완화 조치가 허용되지 않으면 노인이 직면한 위험 요소는 증대될 수 있다. 많은 노인들, 특히 독거 노인들은 재가서비스 및 지역사회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⁴³⁾ 이러한 서비스가 계속 지속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국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지원 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

노인 차별과 낙인찍기: 연대가 더욱 필요한 시대임에도, 코비드-19로 인해 연령차별과 노인 낙인찍기 등 노령층에 대한 차별이 악화하고 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대 간 분노 표출의 한 일환으로 공공장소나 소셜 미디어에서 혐오 발언이 늘고 있다. 노인 인구는 매우 다양한 집단으로 생활 연령과 생물학적 연령의 상관관계가 약하다. 정책, 프로그램, 의사소통을 통해 전염병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왜곡되지 않고,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인들이 낙인찍히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광범위한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세대 간 연대를 촉진하며, 연령차별에 맞서고, 노인을 향한 폭력, 학대, 방치 상황을 감독하고 해결해야 한다.

정신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 많은 나라에서 독거노인이 늘면서⁴⁴⁾ 코비드-19 이후로 사회적 관계망이 상실 및 해체되어 많은 노인들이 필요한 정신 건

43) 유엔 경제사회국 인구부서, 노인 주거 형태: 확대된 국제 데이터세트에 관한 보고서 (2017)

44) 유엔 경제사회국 인구부서, 노인 주거 형태: 확대된 국제 데이터세트에 관한 보고서 (2017)

강 돌봄 서비스와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노인의 입장에서는⁴⁵⁾ 방문객과 단체 활동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때문에 신체적 경제적 건강과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인지 능력 감퇴 또는 치매를 앓고 있거나 돌봄 의존적인 노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진행 중인 연대 및 지역사회 활동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세계 각국에서는 공식 및 비공식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대응 중으로, 사회적 연대감과 노령층 심신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 ▶ 인도 뭄바이에서는 “WE Group – Mission Feed Hungry – Mira Bhayandar”가 상향식 지역사회 지원 접근법을 활용하여 비공식 자원봉사자들이 3월 20일부터 소외 계층에게 15일분의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
- ▶ 호주 퀸즐랜드에서는 100명 이상의 노인 풀뿌리 커뮤니티 그룹인 Seniors Creating Change가 노인 차별과 사회적 고립의 근본 원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공장소와 장기 요양 시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들은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회적 고립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뉴스와 지역사회 정보를 공유하며 신체 건강 및 정신 건강 검진도 진행하고 있다.
- ▶ 르완다에서는 정부와 사회의 의료진이 협력하여 노인의 건강 및 사회적 상태를 점검하고 있고, 감염을 피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와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훈련을 하고 있다.
- ▶ 아일랜드에서는 집배원들이 식료품 쇼핑 지원 등을 통해 자가격리자들의 특정한 요구사항을 들어주도록 교육받고 있다.
- ▶ 칠레에서는 영부인이 “Major Protection” 계획을 발표하여 보호 조치로 자택에 격리된 80세 이상 노인의 돌봄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시행했다.
- ▶ 스페인의 카스테온 데 라 플라나 시의회는 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노인 대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격차)의 영향: 인터넷과 기타 디지털 기술은 봉쇄 기간에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창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45) 유엔 경제사회국 인구부서, 노인 주거 형태: 확대된 국제 데이터세트에 관한 보고서 (2017)

많은 노인에게 디지털은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부족한 상태다.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지만, 상당수의 노인은 여전히 컴퓨터 사용법을 모른다.⁴⁶⁾ 가령 영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중 420만 명에 달하는 수가 인터넷을 이용해본 적이 없다.⁴⁷⁾ 저개발국의 노인들은 디지털 기술 활용 경험이 거의 없을 것이다.⁴⁸⁾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 역시 사랑하는 이와 소통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노인들이 시각 및 청각 장애를 비롯해 문해 능력과 언어 사용에 관련하여 직면한 이러한 장벽은 코비드-19 위기 동안에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디지털 디바이드 때문에 전염병 관련 보건 및 사회경제적 조치에 대한 핵심 정보 역시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대다수의 노령층은 봉쇄 및 신체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원격의료, 온라인 쇼핑과 인터넷 뱅킹 같은 디지털 서비스 활용이 어렵다. 코비드-19 예방 방법이나 관련 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결정적 정보를 받으려면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있거나 라디오방송, 종이 안내문, 문자 같은 다양한 형태를 활용해야만 한다.

해결책/제언

- 신체적 거리 두기 기간에도 사회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포함한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지원은 유지되어야 한다.
- 노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요양시스템을 강화한다.
- 고립되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 기능 저하/치매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관리 및 사회적 지원책을 제공한다.
- 신체적 이동이 제한되었을 때에도 가족과 사회 관계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나 기타 대안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노인들과 간병인을 지원한다.
- 지역사회 기구 및 자원봉사자와 협력하여 노인 대다수에게 접근할 수 있는

46) <https://news.un.org/en/story/2018/12/1027991>; <https://news.itu.int/itu-statistics-leaving-no-one-offline/>
 OECD 국가에서, 16-24세 젊은이 거의 전부 (95.9%)가 인터넷을 사용중인 데 비해 65~74세 노인 중 절반(49.8%)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http://dx.doi.org/10.1787/888933274795>

47) https://www.ageuk.org.uk/globalassets/age-uk/documents/reports-and-publications/reports-and-briefings/active-communities/rb_july16_older_people_and_internet_use_stats.pdf

48)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16/02/22/internet-access-growing-worldwide-but-remains-higher-in-advanced-economies/>

다양한 형태를 활용해서 노인들에게 스스로가 코비드-19를 예방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받을 방법에 관한 정보가 제공한다.

-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해 식료품 및 생필품 구입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확실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이동 서비스를 강화한다.
-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라디오방송, 종이 안내문,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형태를 활용해서 중요한 정보가 노인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한다.
- 노인을 낙인찍거나 정형화하지 않도록 한다. 노인은 모두 연약한 존재라고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함의나 편견이 들어간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3. 노인에 관한 관심을 코비드-19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인도주의적 대응과 통합하라

코비드-19는 세계 경제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특히 여성 노인이나 장애 노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던 기존의 불평등을 더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생필품 구입과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제한된 사회 보호 서비스, 만연한 나이 차별을 포함한다. 전염병 대응과 회복 단계에서 노인들은 뒤처지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유독 크기 때문에 위기에 대응할 때 특히 노인들을 찾아내고 우선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용과 사회적 보호: 전 세계 다수의 노인이 빈곤하게, 사회적으로 배제된 상태에서 살고 있다. 빈곤의 위험은 나이가 들에 따라 증가하며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80%에 달하기도 한다.⁴⁹⁾ 노인들은 유급 노동, 저축, 가족이 주는 재정 지원, 연금과 같은 다양한 소득원에 의존하는데⁵⁰⁾, 이 소득원 모두 코비드-19의 여파로 위협해져서 노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코비드-19에 따른 경기 침체는 여성이 남성보다 (고용, 토지나 재산과 같은 자산이든 연금 수령이든지 간에) 소득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⁵¹⁾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정기적인 정년 퇴직 연금을 받지 않는 퇴직 연령 인구의 거의 65%를 여성이 차지한다.⁵²⁾

49) <https://www.un.org/esa/socdev/ageing/documents/PovertyIssuePaperAgeing.pdf>

50) 국제노동기구(ILO), 노인을 위한 사회적 보호: 2017-19 정책 동향 및 통계 https://www.ilo.org/seccoc/information-resources/publications-and-tools/policy-papers/WCMS_645692/lang-en/index.htm

51) 유엔여성기구, 2019-2020 세계 여성 발전 (뉴욕, 2020)

52) 국제노동기구(ILO), 노인을 위한 사회적 보호: 2017-19 정책 동향 및 통계 https://www.ilo.org/seccoc/information-resources/publications-and-tools/policy-papers/WCMS_645692/lang-en

전염병 기간에 이동 제한이나 사회 관계망 해체의 여파로 노인이 사회 보장 및 기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더욱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 침체와 기타 코비드-19의 광범위한 영향으로 많은 노인, 특히 여성 노인과 장애 노인이 구직에 제한을 받고 적절한 연금 및 사회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고령 근로자가 젊은 근로자들에 비해 근무 시간 감축, 더 높은 실업률과 불안전 고용률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이미 MERS 발생 당시 알게 된 사실이다⁵³⁾. 그러한 위험은 특히 극빈층과 사회적 소외 계층 노인들 사이에서 더 크다.

보편적 의료 보장: 향후 30년간, 전 세계 노인 인구는 두 배 이상 증가하여 15억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적 의료 보장 제도는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는 실행될 수 없다.⁵⁴⁾ 전 세계적인 의료 안보 및 보편적 의료 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공공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전 세계 인구의 더 나은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다.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코비드-19 대유행으로 노인 대상 돌봄 및 지원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게 되었고 예산은 부족해졌다. 많은 노인은 자신이 선택한 환경에서 독립적, 자율적으로 사는 데 필요한 돌봄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 선택,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및 지원 서비스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고소득 노인을 제외한 다수가 이용하기에는 제한적이고 비용 부담이 크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돌봄 및 지원 인력은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별적인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행복을 증진하고 자율성 및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 및 지원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보호: 많은 나라에서 노인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 배제, 소외, 폭력,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적절한 입법 체계가 부족하다.⁵⁵⁾ 국제적으로 합의된 법적 체계의 부재와 더불어,⁵⁶⁾ 이러한 사실은 노인이 사회내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코비드-19 사태에 맞서 부적절한 대처를 받고 있는지 설

53) https://www.ilo.org/global/about-the-ilo/WCMS_738753/lang--en/index.htm

54) <https://www.who.int/ageing/health-systems/uhc-ageing/en/>
[https://www.who.int/en/news-room/fact-sheets/detail/universal-health-coverage-\(uhc\)](https://www.who.int/en/news-room/fact-sheets/detail/universal-health-coverage-(uhc))

55) 노인을 위한 장기 돌봄 보호: 46개국 보장 결핍 사항 검토

56) 2019년 기준 보편적 인권 지수 하에 분류된 차별과 관련된 13,000개 이상의 차별과 관련된 권고안 중, 1% 미만이 노인에 대한 나이 차별에 관한 것이다. (A/HRC/41/32, 제 42항)
<https://www.unocha.org/covid19> 이 계획은 전염병 대유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즉각적인 의료적 요구 상황에 대응하고, 코비드 이전의 필요와 관련한 서비스 지속을 보장하며, 노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인도주의적, 사회경제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을 요구한다.

명해준다. 모든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이러한 격차를 메워야 한다.

해결책/제언

- 코비드-19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응하는 유엔의 틀과 발맞춰, 유엔의 시스템 지원인 “공동 책임, 글로벌 연대(Shared Responsibility, Global Solidarity)”를 활용한다.⁵⁷⁾
- 인도주의적 환경에서 노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위험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유엔의 글로벌 인도주의적 대응 계획에 이바지한다.⁵⁸⁾
- 보편적 연금 지원 및 각 정부의 적절한 재정 지원을 통해 노인, 특히 여성의 소득 안정을 보장한다.
- 경제난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코비드-19 기간 동안 음식, 물, 생필품, 서비스, 기초 건강 관리 보장 등 즉각적인 사회경제적 구제책과 사회 안전망을 적용한다.
- 연금 수표를 우체국이 아닌 가정에 바로 보내는 등 위기상황에서 노인을 위한 연금, 사회 복지 및 안전망을 배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
- 생계 및 직업 재활 프로그램, 기타 소득 창출 활동, 노동을 위한 음식 이니셔티브, 단기 소액대출에 나이 제한 조건을 일시적으로 철폐하여 노인을 경제 회복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노인들을 평생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정보 통신 기술 접근성을 향상한다.
- 위기 상황에 처한 노인들(특히 난민, 이민자, 이재민 등 취약 계층)이 직면한 위험 요소를 국가 대응 계획 및 전략을 이용해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해결한다.
- 노인들과 코비드-19 관련 위험 요소에 대해 상의하여, 그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대응 시 특정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 노인들의 권리와 존엄을 증진하고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법률 기구 제안 개발을 위한 유엔 총회 실무진의 노력을 가속함으로써 국가와 국제적 차원에서 노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법적 틀을 구축한다.⁵⁹⁾

57) <https://unsdg.un.org/resources/secretary-generals-un-covid-19-response-and-recovery-fund>

58) <https://www.unocha.org/sites/unocha/files/Global-Humanitarian-Response-Plan-COVID-19.pdf>

4. 지식과 데이터 활용, 우수 실천 사례 공유, 노인 참여 확대

위기를 겪으며 연령 특화 데이터 가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격차가 드러났다. 연령별로 구분된 노인 관련 데이터와 요양 시설 입소 노인 등 모든 종류의 거주 환경을 포함하는 것은 전염병의 영향의 전체 모습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노인에 대한 자료는 때로 동종 집단만을 묘사한다. 예를 들어, 코비드-19 사망률은 60세 이상으로 묶어 광범위하게 보도되는데, 이러한 보도는 60~69세 사이, 70~79세 사이, 80~89세 사이에 존재하는 연령별로 확인한 차이를 드러내지 못한다. 노인이 처한 위험도를 정확히 세분화하기 위해 나이별, 성별, 장애별, 기저 질환별로 코비드-19 관련 데이터 정리가 필수적이다. 여성 대상으로 만연한 폭력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여 연구 자료를 작성할 때 노인을 배제하거나, 세분화하기에는 너무 적은 수의 노인 표본을 사용하는 등 나이를 임의로 차단할 때도 있다.

유사한 경우로, 특히 현재 논의 중인 결정 때문에 노인이 영향을 받는 경우라도 문제와 해결책을 확인할 때 노인들의 의견, 관점, 전문성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간과 협력을 확대하여 노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지식을 활용하며, 자유롭고 활발한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위기 상황이나 그 이후에도 노인 인권을 보호를 원하는 국가 간 해결책과 우수 사례를 더욱 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해결책/제언

- 노인 배제 현상을 제거하고 주요 데이터의 전 연령 세분화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 복지, 폭력(가정 및 성별 기반 폭력 포함), 공공 참여, 기타 주요 지표에 관한 세분화 규약을 점검한다. 가능한 5세 단위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표를 작성하도록 촉진한다.⁶⁰⁾
-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인식 재고를 위해 연령 외에도 성별, 장애, 혼인 여부, 가정(가족) 구성, 거주 형태를 포함한 기타 결정적 관점에서 더욱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책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도록 촉진한다.
- 거주 시설에서 보고되는 사망자를 재검하고 조정하여 거주민과 시설직원을

59) 총회 결의안 A/RES/67/139

60) 인구 및 주택 조사에 대한 유엔 원칙 및 권고사항, 3차 개정판 (뉴욕, 2015).

더 잘 보호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자원을 집중하여 배치한다.

- 코비드-19와 관련된 사례 보고와 관련된 명확한 감시 기준을 제공하여 나이, 성별, 기저 질환을 포함한 고령층의 위험 공통 인자를 파악한다.
- 노인과 노인 권익 옹호 기구가 의사 결정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국가 및 세계 차원에서 참여 양상을 검토 및 개정한다.
- 노인 인권 증진에 대한 국가들의 경험을 관련 글로벌 포럼에 더 잘 통합한다.

앞으로 가는 길

코비드-19는 인류에 전례 없는 도전과제를 제시했고, 노인의 건강, 생명, 권리, 행복에 불균형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전염병 퇴치를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 과정에서 노인들의 요구사항과 인권 문제도 함께 해결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이러한 위협의 상당수는 새롭지 않다. 노인 인권은 오랫동안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고 노인은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간과됐다. 코비드-19 회복은 포용적이고 평등하며 연령 친화적인 사회의 발판을 마련할 기회다. 이는 인권보장과 “아무도 뒤처지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2030 도전과제에서 제시된 공동의 약속을 바탕으로 한다.

유엔노인인권독립전문가 COVID-19관련 보도자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 2020. 3. 27.>

“용납할 수 없다.” 유엔 독립전문가, COVID-19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노인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

로사 콘펠드매트 노인인권 향유에 대한 유엔 독립전문가 (Rosa Kornfeld-Matte, UN 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는 사회가 연대하여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콘펠드매트는 “돌봄시설에 방치된 노인들이나 요양병원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보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는 연대하여 노인들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노인들은 사망위험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의 필요나 시설과 같은 고위험 환경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COVID-19 발생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콘펠드매트는 말했다.

콘펠드매트는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 사회적으로 이미 배제되어 있거나 빈곤하거나 보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있거나, 교도소와 주거복지시설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해 특히 우려를 표했다.

“주거복지시설의 방문객 제한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적 배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배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라고 콘펠드매트가 말했다.

“물리적 거리는 중요하지만 사회적 연결을 강화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안전

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거복지시설이나 오지에 사는 이들을 포함하여 노인들이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독립전문가는 노인이 이미 고령으로 인한 차별 (노인차별)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별한 권리의 보호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보건서비스의 이용을 포함한 노인의 모든 권리가 동등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인인권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방식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환자실의 호흡기와 같이 부족한 의료물자를 배분하는 결정에서 연령만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노인들이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건강권이나 생명권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라고 말했다.

“감염자 분류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여 연령이나 장애와 같은 비의료적 기준이 아닌 의료적 요구와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OVID-19 발생으로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노인들의 목소리, 의견, 우려사항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에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잡은 노인에 대한 차별이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 이러한 차별은 소셜미디어의 잔인한 비하 발언에서 나타나고, 노인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취약성에만 집중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고 콘펠드매트는 말했다.

독립전문가는 노인과 노인을 돌보는 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제공되는 필수적 지원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사회와 사람들은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 고 끝맺었다.

COVID-19 수용자 인권 지침

<OHCHR-WHO 기관 간 상임위원회, 2020. 3. 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병으로 선언되고 확산되면서, 교도소, 행정교정시설, 이민자 수용소, 마약중독치료센터 등에 수용되어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의 상황과 같이 현재 파악된 취약점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공간에 높은 밀도로 집중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위생과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취약한 처지에 있다. 국제 기준은 국가가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이용 가능한 것과 동일한 기준의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시민권, 국적 또는 이주민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용시설에서의 건강 유지 문제는 시설 직원과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유가 박탈된 사람의 이익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국가는 국제인권법에 의거하여⁶¹⁾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건 서비스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수용시설 내 바이러스 관련 위험들이 관리되지 않으면, 시설 내 발병이 일반 대중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하의 일련의 메시지들은 담당 서비스 기관과 행정 각 부처(법무부/내무부/보건부/이주, 망명 및 재활센터 담당기관 등)와 함께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이 처한 특정 이슈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1) <https://www.ohchr.org/EN/Issues/Health/Pages/InternationalStandards.aspx>

개요

관여(Engagement) 및 분석⁶²⁾

- 소년원과 재활센터를 포함하여 사람들의 자유가 박탈되는 수용소 및 시설의 환경을 분석한다. 이때 특정한 맥락, 비차별에 대한 권리, 의료 및 보건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고려하고,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과 같이 취약 계층이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자유 박탈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폐쇄되거나 제한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위험을 고려할 때 그러한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합법성, 필요성, 비례원칙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개시하고, 가능한 대안을 제안한다.
- 주요 이해관계자의 관여
 - 논의를 개시하고 주요 메시지 문서 사용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상주조정관(Resident Coordinator)/인권조정관(Humanitarian Coordinator) 및 유엔국가팀(UNCT)과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주무관청(법집행 및 교도소 당국, 출입국관리소, 교정 기관, 사회복지 기관, 사법부), 그리고 행정 각 부처(내무부, 법무부, 보건부 등)를 관여시킨다.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에는 모든 종류의 비상사태의 영향과 구금 상황에 대처하는 구체적 조치, 시설 퇴거 기회 및/또는 구금을 대신하는 비구금형 대안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구금하거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과 비례원칙을 충족하는 경우의 사람들에게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 준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인권네트워크, 국가인권기구(NHRIs), 수용시설을 접촉하는 시민사회 조직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건강에 관한 종합평가를 수행하고, 수용장소의 상황에 대한 유용한 감독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권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 국가인권기구와 해당 감독권한이 있는 기타 주체를 포함하여 수용시설 감독기구는 지속적으로 수용장소와 접촉해야 한다.

62) <https://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Chapter31-24pp.pdf>

-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⁶³⁾ 선택의정서에 의거하여 이미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s)⁶⁴⁾를 포함한다.

지원(Advocacy)

- 정부당국은 교도소 과잉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는 세계보건기구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한 조치와 기타 보건 관련 조치들이 포함된다. 아동,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저위험 요인을 가진 경범죄 사범, 시설에서 나올 날짜가 임박한 사람, 국제법 상의 범죄가 아닌 범죄로 구금된 사람들을 시설에서 나오게 하는 일이 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아동의 퇴소는 적절한 보호 방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주체 및 관련 정부당국과의 협의 및 협력 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 정부당국은 국제법에 의거하여 이주민 구금을 대체할 비구금식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어떠한 자유의 박탈이든지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구속된 사람은 법원을 통해 자신의 구속 적부 심사를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당국은 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의적 또는 다른 방식으로 국내 혹은 국제 기준에 합치되지 않게 구금된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풀어주도록 권고 받아야 한다. 강제수용의 자의성을 평가하는 정부당국은 부적절성, 부당함, 예측 가능성의 부재, 정당한 법적 절차뿐 아니라 합리성, 필요성, 비례원칙의 원리들과 같은 이슈들을 고려해야 한다.
-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은 즉시 풀어주어야 한다. 자의적 구금의 금지는 훼손 불가능한 규범인데다, 현재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상황에서 이들을 계속해서 구금하는 일은 이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추방이 연기되어 퇴거 전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는데,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들의 자유를 박탈할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코로나19의 위험을 진행 중인 정부당국의 권고활동에 반영하여, 수용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과잉 수용을 줄이며, 국제 기준 준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63)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at.aspx>

64) <https://www.ohchr.org/EN/HRBodies/OPCAT/Pages/NationalPreventiveMechanisms.aspx>

한다. 권고활동에는 보다 엄격한 경비 조치 대상자들을 포함한 모든 억류자의 차별 없는 처우⁶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현행 법률에 근거해서는, 정부당국이 특히 노년층, 환자, 또는 기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정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비구금형 조치를 적용할 수 있었다.

- 코로나19는 미결구금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하여 경찰, 기타 법집행기관 및 사법부의 관여를 유도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미결구금 사용을 제한하고 비구금형 조치를 시행하면(도쿄 규칙⁶⁶⁾ 참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 될 수 있으며, 구금자와 법집행 공무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퇴거는, 적용 가능한 경우, 재판 전 단계에서 정부당국이 적용하도록 권고되는 가능한 가장 빠른 비구금형 조치이다. 조건부 석방, 벌금, 사회봉사, 보호관찰, 청소년 갱생센터 회부와 같은 그 외의 비구금형 조치들은 선고 단계에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금 보석 제도는 관계자의 연령⁶⁷⁾ 또는 재정 상황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아동의 경우, 정부당국은 각 아동 개인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또한 구금은 최후의 수단일 경우에도 결코 아동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널리 주장되며, 아동 이민자 구금 문제가 특히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그리고 모든 구금자와 담당 인력의 생명권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18세 미만에게는 구금 대신 가족이나 공동체에 기반한 비구금형 대안이 장려되어야 한다.⁶⁸⁾
- 코로나19는 이민자 구금 조치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일을 줄이고, 이민자 구금을 대신할 대안을 마련하며, 우선과제의 일환으로서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 가족, 기타 이주민들에 대한 이민자 구금 조치를 중단하기 위하여 이민, 법집행, 국경 및 기타 관련 기관 또는 공무원과 사법부가 관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민자 구금 조치는 언제나 최후의 수단인 예외적인 것이어야 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종합평가에 기반하여 엄격하게 합법성,

65) 예를 들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0조는 자유가 박탈된 모든 사람들을 인간애와 인류의 타고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이것이 훼손되지 않는 일반 국제법 규범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일반논평 29호, 13단락(a)). 특정한 규정들, 가령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7조(c)는 소년법에 적용된다.

66) <https://www.ohchr.org/Documents/ProfessionalInterest/tokyorules.pdf>

67) <https://www.ohchr.org/Documents/HRBodies/CRC/GC24/GeneralComment24.pdf>

68)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 CRC) 제37조(b)는 아동의 자유의 박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 동안에만 이루어져야 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필요성, 비례 원칙을 충족해야 하며, 자의적 구금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아동 자신 또는 그 부모의 이민자 지위에 근거한 아동의 구금을 포함하여 일부 이민자 구금 조치는 국제인권법 하에서 금지된다. 정부 당국은 아동 이민자 구금 관행을 즉시 중단해야 하고, 인권에 근거를 둔 접근법을 채택하여 모든 이주민에게 구금 대신 적용할 비구금형의, 공동체에 기반한 대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강

- 국제 기준⁶⁹⁾에서는 국가가 구금자가 공동체에서 이용 가능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것이 시민권, 국적 또는 이주민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을 관리할 목적으로 도입된 모든 구금 조치들은 필요성과 비례 원칙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정기적 검토 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면 안되고, 개별적 평가에 근거해야 하며, 적용 가능한 적법절차와 절차적 보호조항에 합치되도록 법적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한시적이어야 하고 주기적 점검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 외에도 국제기준과 합치해야 한다.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해서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체계적 구금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⁷⁰⁾
- 자유가 박탈된 사람은 입소 시 검진을 받아야 하고, 필요할 때마다 건강관리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⁷¹⁾ 건강검진의 목적은 해당 구금자, 구금시설 직원 및 다른 구금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어떠한 질병이든 가능한 빨리 치료하여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⁷²⁾ 모든 구금자는 차별 받지 않고 건강관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⁷³⁾ 자유가 박탈된

69)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표준 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넬슨 만델라 규칙), 규칙 24(1). 총회 결의안 70/175

70) 유엔난민기구(UNHCR),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영토 접근에 관한 주요한 법적 고려사항, 2020년 3월16일: <https://www.refworld.org/docid/5e7132834.html>

71) 어떠한 형태이든 억류나 수감 상태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보호 원칙(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원칙24.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DetentionOrImprisonment.aspx>. See also Rule 30 of the Nelson Mandela Rules. With regard to suspicion of contagious diseases, Rule 30(d) states that they must provide for the clinical isolation and adequate treatment of the prisoner during the infectious period.

7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2005). 인권과 교도소. 교도소 공무원을 위한 인권 교육 매뉴얼. 63쪽: <https://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training11en.pdf>

사람이 마약을 하고 피해억제(harm reduction) 서비스를 받는 경우라면 그러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비누와 소독제 및 여성과 소녀를 위한 생리용품과 같은 개인 필수 위생용품을 초기 배급 시점을 넘어서도 지속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예방적 조치와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모든 자유 박탈자가 응급 및 전문 처치를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지체없이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과 떨어져 존엄성이 보장되는 환경에 격리해야 하며, 의심 환자에 대한 폭력이나 낙인찍기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시행해야 한다. 수용시설의 행정직원들은 공동체의 보건 서비스 주체 및 기타 보건 서비스 제공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사람이 구금에서 풀려 나면, 환자인 경우는 돌봄을 받고 건강 검진을 포함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검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 및 기저질환이 있거나 취약성이 높아진 사람, 구금 아동 및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구금된 아동, 임산부, 장애인의 특수한 보건상 필요사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건 서비스는 항상 성(性)특수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기적인 정신건강 관리 및 심리사회적 지원이 즉시 제공되어야 한다.
-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의 성 및 생식 건강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의료 서비스 대응과 배급 결정은 임상적 상태에 근거한 인권 기준을 따라야 하고, 연령, 젠더, 소속된 사회 계층 또는 인종, 장애와 같은 이외의 어떠한 선택 기준에 근거해서도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7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2.1조는 수감자를 포함한 모든 이의 건강권을 인정한다. 수감자 처우를 위한 기본 원칙(Basic Princip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의 원칙9는 “수감자는 법적 상황에 근거한 차별을 받지 않고 국가 내 이용 가능한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BasicPrinciplesTreatmentOfPrisoners.aspx>. 벨슨 만델라 규칙의 규칙24는 “수감자는 공동체에서 이용 가능한 것과 동일한 기준의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법적 지위에 근거한 차별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필요한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거

■ 구금에서 풀려났을 때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는 적합한 주택과 합당한 거처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유휴 주거와 이용 가능한 단기 임차를 활용하는 등 비상사태의 경우에 필요할 예외적 조치의 이행이 요구될 수도 있다.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이들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

정보

- **코로나19 예방 조치와 관련된 정보는 자유가 박탈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수용시설의 위생 및 청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방 조치는 젠더, 문화, 능력, 연령을 민감하게 고려해 실시해야 한다.
- **자유가 박탈된 사람 및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코로나19 억제 조치 관련 정보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형식으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해당 정보에는 수용소가 자유가 박탈된 사람 및 일반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권리와 자유에 대한 모든 제한은 합법성, 비례원칙, 필요성 및 비차별의 원칙을 포함한 국제인권 규범 및 원칙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수용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⁷⁴⁾

- 수용시설 내에서의 코로나19 감염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당국은 관련한 모든 조치가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인신의 자유를 보호하는 절차적 보장은 결코 훼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생명권 및 고문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훼손 불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구금의 적법성 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⁷⁵⁾
-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교도소 또는 구금 당국은 변호인이 의뢰인과 나눈 대화에 대한 비밀 보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공판 연기는 실

74) <http://www.euro.who.int/en/health-topics/health-emergencies/coronavirus-covid-19/novel-coronavirus-2019-ncov-technical-guidance/coronavirus-disease-covid-19-outbreak-technical-guidance-europe/preparedness,-prevention-and-control-of-covid-19-in-prisons-and-other-places-of-detention-2020>

7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및 일반논평 35호.

제로 수용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다. 공식적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에서도 국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포함한 공정한 재판을 위한 기본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⁷⁶⁾

- 당국은 또한 예방 조치의 채택과 예방 조치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있어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대면 방식의 가족 면회를 화상회의, 전자통신, 전화통신(공중전화 또는 휴대폰)과 같은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기 위해 구금 당국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사생활 또는 가족에 대한 어떠한 개입도 임의적이거나 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⁷⁷⁾
- 구금 중인 모든 아동과 다른 방법으로는 가족과 연락을 유지할 수 없는 장애인을 포함한 기타 취약한 수감자에게 가족 방문 및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수용시설에서의 고립 또는 격리 조치는 합법성, 비례원칙, 필요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시적이며 점점 대상이 되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사실상 독방 수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감자의 소재와 상황에 대한 정보는 가족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격리는 한시적이어야 하며 당국이 감염 확산 예방 또는 대응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보호 조치가 없는 경우에만 실시한다.⁷⁸⁾
-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립 또는 격리 조치가 아동을 포함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또는 더 가혹하거나 부적절한 조건의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가 박탈된 사람의 가족 보호

- 자유가 박탈된 사람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은 그 가족 및 자녀가 특정한 요구를 가진 권리소유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이들의 요구를 반드시 인식하고 고려해야 한다. 가족, 특히 여성과 아동은 필요한 예방조치로 보호 받음과 동시에 영향도 받는다.
- 일부 예방 조치가 교도소 방문을 포함해 수감자 가족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국가는 특히 아동 및 노인이 느낄 수 있는 불안과 스트레스의 불

76)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29호.

77)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78) 국제형법개혁(Penal Reform International), 2020년 3월 16일 브리핑 노트(Briefing Note), 코로나바이러스: 수감자의 보건 및 인권, 8쪽, <https://cdn.penalreform.org/wp-content/uploads/2020/03/FINAL-Briefing-Coronavirus.pdf>.

필요한 증가를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는 대응 계획이 여성이 가장인 가구가 기존에 겪고 있던 경제적 어려움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국가의 대응 계획은 수감자 가족의 권리 및 특정 요구를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남성 수감자 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많은 국가에서 가정을 돌볼 일차적 책임을 지는 여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고 그들이 더 높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용시설 담당자

- 수용소 직원의 권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고위 관리직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동안 직원의 업무를 상황에 앞서서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비상대책계획을 공유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의 가족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필요한 의료 및 위생 규정과 관련한 지식, 기술 및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직원에게 특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⁷⁹⁾. 교도소 및 수용소 직원에게는 비누, 손 소독제 및 개인보호 장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위험 증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

79) 국제형법개혁, 2020년 3월 16일 브리핑 노트, 코로나바이러스: 수감자의 보건 및 인권, 10쪽, <https://cdn.penalreform.org/wp-content/uploads/2020/03/FINAL-Briefing-Coronavirus.pdf>.

COVID-19와 성소수자(LGBTI) 인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 2020. 5. 8.>

COVID-19 성소수자(LGBTI)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성소수자(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LGBTI)은 COVID-19의 세계적 확산 상황에서 특히 취약하다. HIV/AIDS 감염인을 포함하는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COVID-19 보다 큰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 많은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인구집단인 노숙인들은 물리적 거리 두기와 안전한 위생 실천(safe hygiene practices)을 통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여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보건서비스 접근(Access to health services):

성소수자들은 보건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낙인과 차별을 겪어, 건강의료(healthcare)의 질과 이용 정도 및 접근에 있어 불평등을 겪고 있다. 동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거나 성 정체성이나 표현을 이유로 트랜스인(trans persons)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인해, 체포나 폭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건강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소수자의 건강에 대해 부정적 결과를 가속화하게 된다.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나 표현에 바탕을 둔 건강의료 차별 관련 사례들이 많은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COVID-19로 인한 성소수자에 대한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기본적 보건서비스 약화(De-prioritization of required health services):

의료체계의 과부하 상황에서, HIV 치료와 검사, 트랜스인에 대한 호르몬 치료 및 Gender Affirming Treatments를 포함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치료는 지장을 받거나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의료서비스 제공을 줄이는 의사결정은 의료에 바탕을 두고 객관적 데이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낙인, 차별, 혐오표현 및 공격(Stigmatization, discrimination, hate speech and attacks on the LGBTI community):

성소수자들은 이전에도 재해(자연재해 및 인적재해 포함)가 발생하면 희생양이 되었으며, COVID-19의 세계적 확산 상황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일부 보고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반 동성애 표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들도 있다. 또한 경찰이 COVID-19 관련 행정명령을 이용하여 성소수자단체들을 공격하는 보고도 있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방역 관련)비상사태가 트랜스젠더들이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재된 성을 법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령을 제안 하는데 사용되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성 구분을 기준으로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는데, 여성과 남성이 번갈아 집을 떠날 수 있도록 해서는, 양성으로 구분 되지 않는 사람들이나 트랜스인들은 불심검문되는 등 차별의 위험성에 처해졌다.

가정 폭력 및 학대(Domestic violence and abuse):

집안에 머물르도록 하는 조치로 인해, 많은 성소수자 젊은이들은, 우호적이지 않는 가족들이나 동거인이 있는 적대적 환경에 처하게 되어,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증 및 폭력에의 노출이 증가하게 된다.

일 및 생계에의 접근(Access to work and livelihood):

성소수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자리를 잃고 빈곤하게 살 개연성이 크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많은 이들이 비공식 부분에서 일하고 있으며 유급 병가, 실업수당과 보험에의 접근이 미흡하다. 추가로, 모든 성을 동등하게 처우하지 않는 차별적인 유급휴가 정책 때문에, 성소수자들은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국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핵심 조치

국가(당사국)는 성소수자들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특히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COVID-19에 대응함에 있어,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성소수자들이 건강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차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소수자와 관련되는 건강 서비스가 차별적 기준으로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된다.
- 2) COVID-19 상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노인과 노숙인을 포함하는 성소수자들의 특수한 취약성을 감안하고 있어야 하며, 성소수자들이 완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 3) COVID-19 상황의 맥락에서 정치인이나 다른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낙인이나 혐오표현에 대해 큰 목소리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 4) COVID-19 유행병 기간 젠더에 기반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쉼터, 지원 서비스 및 기타 대응조치들은 성소수자 집단을 포함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 5) 국가(당사국)는 비상 상황이나 기타 비상상황에 따른 조치들이 성소수자에 적용되는 기존의 권리사항들과 보장장치들을 없애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안 된다.
- 6) 이동 제한 조치들은 성소수자를 위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원들은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관련 훈련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COVID-19와 인권기구 업무 수행 관련 APF 성명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2020. 4. 14.>

○ COVID-19의 글로벌 영향

- 해당국가의 공중보건을 위한 긴급조치들로 불평등 심화가 노출되는 상황에서 인권기구는 위기 상황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모니터링, 보고 및 관련 임무를 수행해야 함

○ 파리원칙: 긴급상황에서의 인권기구의 역할

- 파리원칙은 긴급 상황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침해에 대해 보고하고,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작위(부작위)에 대해 보고하고 인권증진·보호와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공표할 책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음

○ 인권기구의 기능에 대한 영향

- 이동의 자유 제한
 - 구금장소에의 접근 제한이 공중 보건의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있으나, 팬데믹 (the pandemic)기간에 대안적인 원격모니터링 기제나 공적 접근이 가능해야 할 것임.
- 핵심 정부 서비스의 중지
 - 학교와 고등교육시설의 폐쇄는 인권기구의 인권증진 업무의 핵심요소인 인권교육프로그램의 전달을 지원하는 인권기구의 역량을 줄일 수 있음. 온라인이나 또는 기타 원격학습 방법론을 검토할 때, 프로그램의 설계와 전달에 있어 인권기구 파트너들(NHRI partners)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임.

- 국제인권기준의 훼손(Derogation from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 위기 기간, 이동의 자유, 평화적 집회, 자의적 구금 및 정보 접근 등의 침해발생 사례들이 있음. 그 적합성 및 적법성은 해당 국가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이지만, 국제인권법은 이러한 훼손 행사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 인권기구는 국제인권기준의 훼손 및 준수 사례들을 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수집, 접근, 자원이 제공되어야 함.
- 예산과 재정
 - 각 국 정부의 팬데믹 대응 공중보건조치와 재정확장프로그램이 국가 인권기구의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파리원칙 기준에 의거,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적절한 재정이 지원되어야 할 것임.

○ 인권기구 직원들에 대한 영향

- 채택 근무 또는 원격 근무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사기 및 작동 역량에 영향을 미침. 여성 직원 및 장애인 직원에 가중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인권기구의 지도부는 COVID-19 상황에서 인권기구라는 직장이 변경 운용됨으로 인한 부담들에 대해 세밀하게 잘 관리해야 함.

○ APF의 지원

- 정부의 이동 제한 및 국제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면 활동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APF는 회원기구들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 GANHRI도 COVID-19 상황에서 각 인권기구의 대응방안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음.